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이제 시작

과테말라·도미니카·멕시코·미국·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
우루과이·캐나다·코스타리카·콜롬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발간사

2010 외국의 통상환경 _ 아메리카

우리나라는 작년 4,674억불을 수출하여 세계 7대 수출대국이 되었고, 올해는 1조불 교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GDP 대비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BRICs 등 신흥개도국과의 교역비중이 1990년 35.8%에서 2011년 69.1%로 증가하고 있어, 신흥개도국 시장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외교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주요 교역대상국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동 책자는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으로 구성됩니다. 지역별 통상환경은 올해 벨라루스, 세네갈,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6개국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9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 통상환경 및 제도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은 각국의 통상환경을 관세,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보조금, 기술장벽, 투자환경 등 15개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 책자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부 및 민간의 대외 협력 및 협상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에 대한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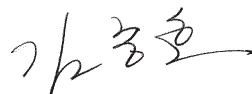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동 책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책자의 개선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책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경제 통상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재외공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목차

2010 외국의 통상환경 _ 아메리카

분야별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

유럽

아프리카중동

과테말라	2
도미니카	21
멕시코	37
미국	52
베네수엘라	90
브라질	109
아르헨티나	127
에콰도르	143
엘살바도르	155
우루과이	165
캐나다	188
코스타리카	212
콜롬비아	229
트리니다드토바고	257
파나마	268
파라과이	293
페루	313

2010 외국의 통상환경

아메리카

과테말라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2.27일부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킴에 따라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 및 역외공동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5%, 중간재 10%, 소비재 15%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과테말라 주요품목별 관세율

품 목	세율(%)
산업기계류	0~15
수송기계류	0~20
화학제품	0~15
광산물	0~15
금속제품	0~15
플라스틱/고무제품	0~15
종이 및 지제품	0~15
음료 및 연초	0~40
식물성 제품	0~30
섬유사	0~10

품 목	세율(%)
섬유직물, 부자재	0~15
산동물 및 동물성 제품	0~15
유지류	0~15
광학제품	0~15
광물제품	0~15

수입부과금 등

수입 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도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a)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는 통관절차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물 일부와 살아있는 동물, 마약류, 화학제조원료, 무기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다. 유기화학품으로 농수산물과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류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

품목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과테말라 농산물 쿼터현황

품목	쿼터량 (Metric Ton)	특별관세율	정상관세율
쌀	12,000	0%	23.7%
옥수수	180,000	0%	15.0%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가는 미국시장내의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중고차 수입 시는 2005년부터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상업송장)에 따라 20%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단,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국으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국 간 역내산업의 보호·육성장치의 하나로 1993년 초 중미공동 반덤핑법을 제정, 1993.4.1일부로 행정절차법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주무기관은 경제부 경제통합국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율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특별한 표준 인증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ISO나 미국, 유럽 등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수입유통 허가를 위한 필수요건은 아니며, 다만, 자사 고객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등록되어야 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과테말라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사전 동식물 검역, 위생검사 또는 소정의 Inspection을 거쳐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등록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며 공급자의 “Certificate of Free Sa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시간은 대략 3~4개월 정도이다.

■ 환경관련 규제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환경위원회(CONAMA)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치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수산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수산부의 식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수산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수산부의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성분 검사 등 sanitary 검사 후 보건부의 약관리청에 품목이 등록되어야 한다.
-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8) 중고 신발 및 의류 등은 수출국 보건당국이 방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57-92)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도

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 1,000,000궼찰
- 지방자치단체(Municipalidad) : 1,000,000궼찰 (1달러 = 7.50궼찰)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Bases de Licitacion), 입찰세부내역(Especificaciones Generales), 세부기술내역(Especificaciones Tecnicas) 및 공사계획서(Planes de Construccion, 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중 입찰기본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Registro de Pre-calificacione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기관은 10일 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Registro de Precalificados)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예상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접수된 입찰서류는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Junta de Licitacion)”에 상정·심의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Legal Representative를 두어야 한다. 국가베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0.9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불법위조·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 께찰에서 최고 50만 께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1998년에 제정된 법령 제33-98호는 저작권의 보호 법적 준거가 되며 상법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1954년 제정된 법령 제1037호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되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2) 상표권

과테말라의 상표등록제도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968.6.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지 않고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에서 수행하고 있다.

상표는 산업상표, 상업상표 및 서비스상표로 구분된다. 산업상표(MARCAS INDUSTRIALES)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MARCAS DE COMERCIO)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비스상표(MARCAS DE SERVICIOS)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에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 자원이 변호사의 조력 하에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국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 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도록 등록을 먼저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미국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류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중미국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 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류의 소지는 남아 있다.

(3) 특허권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의 입증서,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식품, 음료, 의약 및 농화학제품에 대해서는 10년, 기타에 대해서는 15년이다.

■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한 이후 여타 서비스 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허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

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가환경위원회(CONAMA: Comision Nacional del Medio Ambiente)를 통해 환경보호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 내 공장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CONAMA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营业을 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 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2004.1.1일부터 지분소유제한이 철폐되었다.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는 금지된다.

공장설립 시에는 과테말라의 건축법(Reglamento de Construcccion)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담당관청은 해당 건물 신축지가 속하는 지방시도(Municipalidad)의 도시건축실(Oficina de la Construcccion Urbana)이 된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는 담당 관청을 통해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cccion)나 준공허가(Permiso de Uso) 역시 이곳에서 관할하므로 자주 접촉하여야 한다.

건축에는 거주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산업용(공장)을 포함하여 상업용, 교육연구용, 체육 및 레크레이션용 등은 후자인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분류된다.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Licencia de Construcccion)를 얻어야 하는데 과테말라시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통제국(Departamento de Control del Desarrollo Urbano)에서 정한

101호 및 102호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호 서식은 건축건물의 기술적인 정보와 용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유주와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동 서류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Boleto de Ornato), 건축위치도, 부동산세 최종납부영수증과 건축설계도 2부를 유첨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Aeronautica Civil)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Antropologia e Histori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건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 환경위원회(CONAMA)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102호 서식은 101호 서식과 함께 제출되며 건축과 관련된 정보, 건축지에 대한 정보, 건축지에 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관련법상 상·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담당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법상 8일 정도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서류하자의 보완 등으로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공사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하며, 연장 시에는 이의 5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취득 시 공사대금의 0.01%를 예치(deposit)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허가(Permiso de Uso)를 받아야 한다. 준공허가는 건축물이 산업시설물에 관한 법(Reglamento de Localizacion e Instalacion Industrial)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 관청에서 현장실사 후 승인하게 된다. 준공허가

가 나면 건축허가 시 예치했던 예치금(Deposit)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액은 최소 5,000궬찰 이상이면 가능함.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 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여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산업 촉진법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29~89)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뿐 아니라 임시통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의 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내외에서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고 보면 된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이다.

1993년에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LA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를 설치하여 과거 행정상 관료주의, 복잡한 서류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왔던 투자관련 제반절차를 One-stop Service 형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

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을 2010.10.13일 개정. 동 규정이 2011.1.1일부터 발효 예정인바, 이에 따라 2011.1.1일부터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1인당 1일 3천볼 한도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부과된다. 다만 3천볼 이상 송금시에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송금자 거래은행 본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 경우 개설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세제상의 제한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동진흥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는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회사 설립 후 10년이 지나면 회사 신규설립 절차를 거쳐 혜택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같이 소득세 영구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상위법인 상법에 저촉되므로 영구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출기업에 대해 일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2007.7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2007.10.4일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체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Inmigración)의 외국민국(Departamento de Extranjería)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와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Antecedentes Policiacos)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Cédula)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신

청자격은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라야 하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관련 과테말라 정부는 2005.6.6일부터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단, 이는 90일 동안만 가능하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임시운전면허증(1년 유효, 연장 가능)으로 교체하여야 함).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식당이나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빼돌리는 등의 사건도 다발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대외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카리브국들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 2000.5월 중미·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10.1일부터 중미·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이 시행됨에 따라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6년 미국-중미 FTA(CAFTA-DR) 체결로 인해 과테말라 봉재업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 현지 고임금 및 고가 전기료 등으로 인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입지, 노동력, 임금수준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리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맹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도미니카

■ 수입정책상의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대외 수입정책과 관련 교역대상국에 WTO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WTO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하여, CARICOM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특히 중미 CAFTA 5개국과 연계하여 미국과 FTA(DR-CAFTA)를 체결, 2007.3.1일부로 동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유럽연합(EU)과도 EU-CARIFORUM간 경제 제후협정(EPA)을 통해 특혜부역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와도 FTA를 추진하는 등 시장개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관련 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과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로 일부품목에 대해 관세, 비관세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별히 수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2008년 평균 MFN 관세는 7.5%로 주요 수입규제 조치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으며, 원자재 및 자본재에 집중된 무관세 품목이 55%에 달하여 상당한 시장개방도를 보이고 있다.

2003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입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2004년에는 IMF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입세 2%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수입세가 다자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도미니카는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 절차에 3차례 피소되었으며, 타국을 제소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

라스 등 중미국가가 도미니카의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여 WTO에 제소하는 등 심각한 통상마찰을 겪고 있다.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분쟁해결,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교역증진 및 시장개방을 위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장벽

1995.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1.7.1일부로 관세협정에 부합하는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율 체계는 HS 체계(Nomenclature of Design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수입관련 제세는 0~20%의 관세, 알코올제품,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15~80% 특별소비세, 16% 부가가치세(ITBIS), 0.4%의 임시수입세 등 4개 종류가 있다. 관세, 특별소비세 및 임시수입세는 CIF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임시수입, 수출자유공단지대 투자기업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 위해 중고자동차, 가전제품 등 24개 특별 품목에 대해서는 WTO의 양허하에 세관의 최저가격 인정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관리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인정가격 기준은 세관당국의 자료 미비와 절차 비투명성으로 인해 신규 제품 및 모델 수입 시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는 등 관련 품목의 교역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부과금

수입관련 제세이외에 기타 수입부과금은 없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복잡했던 통상 절차 및 관련 비과세 장벽은 통관절차 간소화, 영사 송장 제도 폐지, 통관업무 표준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

다. 특히 한국의 EDCF 자금을 활용한 세관전산화시스템(SIGA)이 2009.12월 구축되어 Haina Oriental 및 Caucedo 등 항만에 적용 중인바, 통관업무의 효율화, 투명화 및 신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통관은 개인, 법인 등이 직접 통관하거나 통관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소정 통관신고서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IGA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며, 아직 SIGA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통관신고서는 수출입 통관 기존 양식(수입 Form 3480, 수출 Form 3256)을 하나로 통합 개선한 “단일통관신고”(DUA: Declaracion Unica Aduanera)라는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통관 시 제출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상기 통관 부대서류들도 스캔 파일로 DUA(단일통관신고서)에 첨부하여 인터넷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1987.9.29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512-87호에 의거 수출상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영사송장을 통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는데, 여러 차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어 오다가 2006.7월부터 완전 폐지되어 외국 수출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외 검역·검사, 통관절차 규정에 따른 장벽은 없으나, 현지 통관업체 및 세관의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과 속도감이 없는 업무 관행으로 인해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SIGA의 도입으로 통관에 걸리는 시일이 3~4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원산지 규정상의 일반적인 제약은 없으나 CARICOM과 중미공동시장(CACM)과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DR-CAFTA)가 2007.3월 발효되어 미국에 대해서도 특혜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2008.4월부터는 EU와의 경제제휴협정(EPA)도 발효되어 EU산 제품도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DR-CAFTA 발효로 원산지 누적 규정의 적용에 따라 NAFTA 및

DR-CAFTA 체결국의 원단 및 원사 등 원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우리 봉제업체들은 10만 입방미터의 원자재를 가공해서 의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카리브-EU EPA 협정은 섬유 의류 제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원산지를 역내국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 소싱해 와도 무방하다는 파격적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을 통한 EU 우회수출이 유리하게 되었다.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난 도미니카공화국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SGP(GSP), Cotonou(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국들과 더불어 EU로부터 받는 특혜관세), TLCentroamerica(CACM), TLCaricom, AAPP(파나마), CBTPA(CBI)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원산지 규정상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HS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며, 비원산지 제품 가격이 전체 가격의 7%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수입규제

안전, 보건, 환경, 국방 등의 이유와 상호주의 및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관련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제147-00에 의거 제조 후 5년 이상 된 중고차와 오토바이 수입,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 가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73.1.3일 법률 제458호를 통해 중고 의류제품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5년 이상 된 중고차들도 수입되어 판매되는 등 시장 현실은 규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8.3.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농산물, 무기, 화약류, 육류, 약품류, 설탕 등 수입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관행 및 긴급수입제한과 관련 2001.12.11일 법규를 제정한 이후 동 법규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 중미산 26개 제품에 대하여 30~4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시 중미산 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도미니카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여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도미니카는 엘살바도르 등 중미국가가 자국의 수출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상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상공부 산하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등 무역 관련 규범을 제정 및 심사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TBT 위원회 및 SPS 위원회 등에 다수의 통보조치를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제1차 TRPM 보고서 제출 이후 2002년 및 2008년에 TRPM에 따라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고 : 수출 관련 정책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48개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2008년 기준 525개사)에 세금 및 관세혜택 등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봉제, 원단, 신발류 생산 기업은 수출품 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도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경제가 침체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자유무역지대 이외 일반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1999년 도입하였으나, 일부 분야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광산물,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다.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1998.5.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에 의거 일반품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차별을 두지는 않고 있다.

식품류와 의약품에 관한한 두가지 라벨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포장과 관련된 표준 및 기술규격은 없다.

2001.2.7일 제정된 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음료, 화장품, 음식물, 의약품, 의료기기, 담배 등 건강과 관련된 제품과 기기는 주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스페인어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체의 품질인증 마크 및 표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인력 부족으로 자체 인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공인 ISO, CE 등의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통용되는 형편이다.

■ 환경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5.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하여 인체, 동물,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5.30일 법률 제50-88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1.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법 준수

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품목별 장벽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되었으나 2000.8.18일 제정된 법률 제 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농산품은 고관세, 가격통제정책 등을 통해 보호받고 있으며 쌀, 닭고기 등의 품목은 WTO 상의 수입쿼터로 보호받고 있고, 설탕 수입량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5년 이상 된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및 중고의류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주 목적 이외의 중고가전제품도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 수입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산 자동차 등 중고차 인지도가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5년 이상된 노후중고차에 대한 수입수요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 제한규정이 완화된다면 한국산 중고차 및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이 매우 유리해질 전망이다.

차량 수입 시 수입관세 20%, 부가가치세 16% 외에 등록세 17%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2001년 WTO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지대(FTZs) 지원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미니카 정부는 지원정책의 불가피성을 보고하고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을 위해 지원제도의 연장시행 승인을 요청하여 2007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2007년 재연장을 요청하여 최장 2015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섬유, 의류, 신발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특혜를 받고 있으며 기타 중소기업 수출진흥책,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보조 및 세제상의 혜택이 존재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재정개혁법(Reforma Fiscal) 초안에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지원혜택을 줄이고 세금징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보 차원에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을 지속 강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자유무역지대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7.3월 발효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에서는 농산물 수출보조금 폐지를 합의했으나 보조금을 받은 제3국 농산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용인키로 하는 한편 동 보조금 폐지를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협력키로 했다.

■ 정부조달관련 장벽

정부조달과 관련 WTO 다자간 협상 가입국이 아니나 2006년 채택된 정부조달법은 상품, 서비스,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적에 따른 차별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정부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공급자와 합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발효 전에 미국측은 정부조달 관련 정부계약법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부입찰 시 외국기업의 단독입찰이 가능토록 하고,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입찰금액 한도를 지정하여 그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조달부문은 58,550달러를 상한으로 해서 그 이상이면 외국기업 참여가 가능한 국제공개입찰을 시행토록 했고 건설공사 분야 조달은 6,725,000달러 이상이면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동 상한액은 인플레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아닌 중앙은행이나 은행감독원, 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재화·서비스 조달 상한액을 높여 25만 달러 이상이어야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도미니카공화국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the Universal Convention on Copyrights),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of Trademark) 등 주요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현행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서 상표 및 상호법(법률 1450), 발명특허법(법률 4994), 외국인 투자법(법률 16-95) 등이 적용되며 상공부에서는 UN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분산된 법률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현대화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발명특허권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법률 제4994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발견, 새로운 물질의 제조방법과 생산 장비, 생산물 등을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으로서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특정 기간(5, 10, 15년) 생산, 사용,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가 보호된다. 단, 완전히 새롭지 않은 경우와 동 발명이 공중질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리고 특허권자가 발명품과 유사한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는 특허권이 상실된다. 외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발명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해외에서의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 및 상호명 등록에 관한 법률 1450호는 상표는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독특한 단어, 조건,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3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현행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마크, 로고, 슬로건 등에 대해서는 판례를 근거로 이를 보호한다.

상표 등록은 상표의 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최초 1년간의 효력을 보호하는 것이나 최초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권리는 무효화된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86호는 모든 형태의 저술, 예술작품

과 모든 창작품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통신부 산하의 통신국(General Telecommunication Office)은 케이블 신호와 비디오의 불법 복사, 판매, 방송에 관한 단속 기구로 위반물의 압수나 영업정지 명령권을 행사한다.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5.10일 법률 제20-0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11.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8.28일의 도하 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측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DR-CAFTA 협정에서 발명특허권은 TRIPs가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현행 20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저작권은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일층 강화를 위해 저작권 사무국(ONDA)을 제도적·경제적으로 확충하여 무단 전송 및 무단 복제 해적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 서비스 장벽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다만, 양허

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2005년까지 21~30%에 이르는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12~20%로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2007년에는 한자릿수인 7%대로 진입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6월까지 13%나 되는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었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외국보험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없으나, 이러한 조치는 CAFTA-DR에 따라 2011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또한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외국에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관광가이드 및 카지노딜러는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이어야 한다.

■ 투자 장벽

1995.11.20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법16-95)은 국내 투자시장 개방 및 외국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FTZs(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수출증진 및 고용확대를 위해 세금 및 관세혜택 등으로 입주기업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Zs에서의 수출은 1990년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출의 52%에서 2005년에는 75%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2.27일 대통령령 제109-97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OPI-RD(투자진흥청)가

설립되면서 제도적인 기반도 완비하였다. 현재 OPI-RD는 수출진흥청인 CEDO PEX와 합쳐져 수출투자진흥청인 CEI-RD로 변화하였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현행 외국인투자법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선 등의 처리, 공공의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광산, 원유탐사 및 정유,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사전 승인받도록 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농업 및 가금류, 광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 주식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법률상 외국인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정책상 기술이전과 고용효과가 큰 첨단 산업 분야인 IT, BT 산업을 장려하고 있고,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기 위해 운송, 해상보험 분야도 장려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한 및 투자절차상 제한

현행 외국인 투자법은 과거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고 통계유지 차원에서 사전 등록제를 채택,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이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본 도입 후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된다.

즉,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실제 투자자본이 유입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수출자유공단지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유공단관리청(CNZF)에 대한 입주심사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 신고를 행하면 동 위원회에서 이를 중앙은행에 통보한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절차를 준용하되, 외국기업의 현지지점(사무소)으로 소재지 등록이 필요하다.

참고로, 도미니카공화국 대리점법(법률 제173호)은 국내외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대리점을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대리점 계약은 계약사항의 구체적인 위반이나 공급자에 대한 불이익 야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별도 명기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및 갱신이 불가능하다. 만일 공급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대리점에 대해서 투자자금 및 지출비용 외에 5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고 5년 이상 대리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의 10분의 1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의무 부과

국산화의무 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기업이 생산품을 국외로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지대 관리위원회(CNZFE)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품의 20%까지는 관련 제세 납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화의무를 충족시키거나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이 도미니카공화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2,000 S/F 이하의 토지구입, 국내영업이 허가된 외국금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는 사전승인이 면제된다.

임대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단 내 투자기업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중 중앙은행에 투자자본으로 등록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 납부여부 및 순이익의 정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세제상의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고 내국기업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득세는 물론 제세 일체가 15년간 면제된다. 또한 아이티 국경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투자기업은 20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조세법에 규정된 국세는 소득세, 공산품과 서비스 유통세(ITBIS),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건축세, 회사설립 및 증자세, 수출세, 특허세, 영사확인 수수료 등이 있다. 단,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는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조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때 도미니카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대 투자업체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했었으나 외국인 투자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유무역지대 투자진출업체들의 철수 및 폐업이 나타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는바, 도미니카공화국의 독과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

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4. 27일 제정한 법 제13호는 기본생활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11.1일 제정된 법 제112-00호는 상공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 통제 품목중의 하나이다.

1998년 소비자보호 및 경쟁정책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가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제화(Ley 358-05)되어 2005년부터 Proconsumidor(소비자보호원)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입국비자 및 운전면허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취업목적 체류는 체류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장기체류비자 취득의 애로 및 이로 인한 투자기업의 영업활동상 제약사항을 주재국 유관 기관 및 OPI-RD(투자진흥청)에 건의한 결과 2001.9.20일 대통령령 제950-01호로 외국인투자기업체 임직원에 대해 45일 내외의 간소한 차로 특별 영주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국내 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기반을 구축하였다.

■ 운전면허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주재국 운전면허로 갱신해 오던 절차를 개선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간소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주재국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기업 임직원의 현지 활동 여건을 개선하였다.

■ 개선실적

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구함에 따라 도미니카공화국은 대외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통상환경의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9년 IMF 대기성 차관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강력한 감시하에 방만한 재정의 긴축, 거시 경제정책의 건전화, 각종 보조금 혁파, 세제 개혁 등 경제통상분야의 국제표준화가 제고될 전망이다.

멕시코

■ 수입정책상의 장벽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4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견지하여 왔으나, 1986.9월 GATT 가입과 동시에 자유무역주의로 전환하여 수입관세 인하, 공정가격제도의 폐지, 수입허가품목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1991년 이후에는 수입개방의 여파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1993.7월 신대외무역법을 공포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쿼터, 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바 있다.

관세장벽

멕시코는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한다.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7자리와 8자리는 멕시코 내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2007.6월 이후 11,948개의 HS Code를 운영하다가 2009.1.1일부로 1,057개를 줄여 10,891개로 단순화하였다.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 2010년 5.2%로 낮아지고 있으며,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크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멕시코 정부는 2008.12.24일에 관세인하령을 공포했는데 이는 칼데론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2007-2012)의 세부계획인 '통상 간소화: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에 의한 것이다. 관세 인하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개의 표와 같다.

2010.1.1일 관세 인하된 주요 제품(총 2,884개)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0%	황(2503), 티타늄광(2614), 석유(2710), 수산화나트륨(2815), 산화철(2821), 비환식탄화수소(2901), 환식탄화수소(2902), 이염화에틸렌(2903), 니트로(2904.90), 비환식알코올 만니톨(2905.43), 페놀 나프톨(2907.15),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3203.00), 황아연을 기제로 한 리도폰(3206.42), 필름 폭 610mm 초과하고 길이 200mm 초과(3702.42), 사진인화지 롤상의 것 폭 610mm초과(3703.10), 합성스테이플섬유 폴리에스테르의 것(5503.20), 철 또는 비합금강 횡단면 직사각형(7207.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 7209, 7210, 7211,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7212, 7213, 7214,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7217),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7219, 7220),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25, 7226), 기타합금강의 봉(7227), 철강제 관과 중공 프로파일(7304), 철강제 기타 관(7305), 철강제 연선, 로프, 케이블(7312) 등
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2915), 산소관능의 카르복시산(2918), 질소해테로고리 화합물(2933), 호르몬(2937), 동물 피 및 기타 혈액(3002), 기타 의약품(3004), 일부 롤상 사진 필름(3702), 안티녹제 등(3811), 조제점결제(3824), 섬유판(4411),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4802), 도포하지 아니한 크라프트지와 판지(4804), 판지 및 셀룰로오스 워딩(4811), 유리제의 구, 봉 또는 관(7002), 일부 이화학용, 위생용 또는 액제용 유리제품(7017), 일부 철강제와 관과 중공프로파일(7304), 동제의 관(7411), 알루미늄의 선(7605), 담배의 조제 또는 제조기(8478), 파이프 또는 보일러의 동체(8481), 일부 전동기와 발전기(8501), 일부 변압기 및 정지형 변압기(8504), 일부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8536), 절연전선 및 케이블(8544), 일부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8708), 일부 순항선 및 유람선(8901)
10%	인술린 류 의약품(3004.31), 알칼로이드 의약품(3004.40), 페인트와 바니시(3208), 미용 및 메이크업 제품류 및 기초화장품류(3304), 공기펌프(8414.20)
15%	직사각형 모양 대리석(2515.12), 면역철청(3002.10), 페나실린(3003.10), 기타항생물질(3003.20), 비타민(3004.50), 구급상자(3006.5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3926.10), 의류 및 의류부속품(3926.20), 타이어(4011), 중고타이어(4012), 목재류(4409), 파티클보드(4410), 건축용 목제공구와 목공품(4418), 플레이트 및 매트류(4601), 농세공품(4602), 기타 인쇄물(4911), 양탄자류(5702, 5703), 포장용의 빈포대(6305), 타포린, 천막, 차양, 텐트 돛 및 캠프용품(6306), 모자의 레이스와 각종 재료제의 헤어네트(6505), 우산류(6601), 가발류(6704),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6802),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 제품(6810),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류(6907, 6908), 자기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6911), 도자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6912), 주입법 및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7003), 플로트 유리 및 표면을 연마한 유리(7005), 안전유리 또는 강화유리(7007),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7008), 유리거울(7009), 유리제품(70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7113),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7114), 모조신변장식용품(7117), 철강제의 스톱브, 레인지(7321), 철강제의 방열기(7322), 스테인레스강 식탁용품(7323.93), 철강제 설거지와 세면대(7324.10), 비금속제의 절단용 공구(8201), 수동식 톱(8202), 줄 또는 플라이어(8203),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8204), 수공구(8205), 칼(8211), 칼날의 기타제품과 매니큐어(8214), 비금속제의 자물쇠(8301), 비금속제의 장착구(8302), 비금속제의 금고(8303), 비금속제의 서류정리함(8304), 비금속제의 서류철용 피팅(8305), 비금속제의 벨 및 징(8306), 액체펌프(8413), 기계 또는 진공펌프, 기계 압축기와 팬(8414),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8417), 냉장고(8418), 즉식 가열기(8419), 불도저류(8429),

적용 관세	주요 제품 (HS Code)
15%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또는 제조용의 공업용 기계(8438), 단조 또는 해머링 금속가공기계(8462), 수직식 공구(8467),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8468), 기타 사무용기기(8472), 선별기, 세척기, 파쇄기 등(8474), 금속주조용 주형틀(8480), 전동기와 발전기(8501),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8502), 커피분쇄기 등(8509.80), 면도기 및 이발기(851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8527), 모니터(8528), 도난경보기 등(8531),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와 광섬유 (8536), 삼륜오토바이(8703.2101), 전기자동차(8703.9001), 오토바이(8711), 유모차(8715),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8716), 오토(8903), 제도용구 및 설계용구(9017), 손목시계 및 휴대용시계(9101, 9102, 9103), 기타시계(9105), 기타가구류(9403), 매트리스 침구류(9404), 램프와 조명기구(9405), 비 및 브러시(9603), 볼펜류(9608), 라이터(9614)
30%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8701.20.01),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8702.10), 승용차(8703), 화물차(8704), 콘크리트믹서운반차(8705.40), 엔진을 갖춘 새시(8706.00)

2009~2013년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내 용
1조	1,058개 제품에 대해 2009.1.2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함.
2조	3,841개 제품에 대해 2009.1.1일부터 일괄하여 5%의 관세를 적용 후 2010.1월 2일부터 0%(무관세)를 적용.
3조	666개 제품에 대해 2009.1.2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하며, 2011.1.1일부터 일괄하여 5% 추가 인하함.
4조	2,884개 제품에 대해 2010.1.1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
5조	55개 제품에 대해 2011.1.1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
6조	479개 제품에 대해 2012.1.1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
7조	165개 제품에 대해 2013.1.1일부터 인화된 관세를 적용

동 스케줄에 따라 최혜국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을 계산했을 때, 2010년 5.2%, 2011년 4.6%, 2012년 4.4%, 2013년 4.3%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2013년이 되면, 전체 품목의 63%인 6,867개 품목은 무관세, 972개 품목은 5%, 142개 품목은 7%, 1,049개 품목은 10%, 1,308개 품목은 15%, 518개 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17개 품목)는 50%, 타이어(1개 품목)은 개당 2달러, 설탕함유제품(2개 품목)은 설탕함유량에 따라 혼합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2008.12.24일에 국경지역에 대해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칼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레온(NuevoLeon), 와하카(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코(Tabasco), 따마울리파스(Tamaulipas), 킨따나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아래의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 1) 0% : 서적 등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추가됨으로서 가치를 갖는 품목
-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3)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 4) 15~18%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품목
- 5) 23% 이상 : 일반 소비재
- 6) 35% 이상 : 의류, 신발, 유리 및 가죽제품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소비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40%까지 다양하다.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 수준은 0%에서 260%에 이른다.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의 경우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되었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12월부로 종료되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WTO 가입 시 부과되었던 대중국반덤핑관세도 2011.12.11일까지 전 품목에 대해 철폐되고 정상화될 예정이다.

멕시코의회는 2008.6.20일 멕시코에서 부과하는 대중 반덤핑관세 중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대상 관세를 즉각 철폐

하고 나머지 204개 민감품목 대상 관세는 2011년 말까지 점차 인하하기로 한 관세철폐안을 통과시켰다. 멕시코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2007.12월까지 대중 반덤핑관세를 폐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었으나, 2007년 말 이후에도 멕시코 업계 요청에 따라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으며,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2007.12월 이후 6개월간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對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10.15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섬유, 신발, 장난감, 기계, 전기장비 등 749개 품목이고, 2011.12.11일까지 반덤핑관세 철폐 품목은 안정기, 양초, 연필, 점화기 등 204개 품목이다.

HS Code 2단위 기준으로 중국의 對멕시코 수출품중 상위 10위를 점하는 품목이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카테고리에는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치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는 2012년 이후에는, 한국제품의 對멕시코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사전 신고제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이후 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급증과 동구산 물품의 저가수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1998.8월부터 철강, 섬유, 신발, 비료 등 HS 8단위 74개 품목에 대하여 아시아 및 동구로부터 수입 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시행하였으나, 2005.11.9일 폐지하였다.

(2) 최저수입가격 고시제

멕시코는 1993.8.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

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규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수입금지품목이 없다. 다만,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경제부의 수입허가(padron de importacion)를 얻어야 하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업 및 수자원부, 사회개발부 등의 허가(Permiso) 또는 등록(Aviso)을 요한다.

(1) 완성차 수입제한 철폐와 고관세 유지

멕시코는 1990.1.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ó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 왔다.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 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FTA체결국산에 대해 40%라는 비현실적인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자동차업체는 2000.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OS, 1톤 픽업 트럭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GM을 통해 대우자동차의 MATIZ를 수출하고 있다.

(2) 중고차 수입의 원칙적 금지

멕시코 내에서는 중고차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994.2월에 제정된 『중고차 수입조건에 관한 법령』에 의거하여 중고차 수입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경지대만 제외하고는 멕시코시티 등 주요도시에서는 중고 수입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미·멕시코 국경지대 및 일부주 등지 소재 중고차 거래상들은 동 지역 내 운행용으로 중고 승용차 및 트럭, 버스 등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 협정 체결 시 자동차 시장에 대하여 단계적(5년씩)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개방 절차를 밟아왔다. 체결 5년 후인 1999년부터 미국-캐나다산 신차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0년 후인 2004년부터는 8년 이하의 개인 용도의 중고차 수입이 허가되었고, 15년 후인 2009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중고 트럭 및 버스 수입이 전면 개방되었다. 트럭 및 버스의 경우 계속하여 2년마다 8년, 6년으로 수입 차량 연수를 낮출 예정이다. 이처럼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 보다는 멕시코 내 자동차산업 보호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원산지증명서제도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1.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III)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3.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동 조치로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상품과 같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통한 가능하게 되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멕시코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는 1993.7.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국내생산의 25% 이상을 점하는 업체 또는 단

체에 의한 제소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며 경제부(UPCI: Unidad de Prac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의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제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일로부터 13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26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최종판정의 효력은 5년간 지속되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매년 재심이 가능하다.

1992년 이후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10월 부과중인 반덤핑 건수는 48건이다. 반덤핑관세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 12건, 중국 10건, 러시아 5건, 우크라이나 4건, 루마니아 2건, 대만 1건, 덴마크 1건, 불가리아 1건, 칠레 1건, 프랑스 1건, 홍콩 1건, 일본 1건, 카자흐스탄 1건, 네덜란드 1건, 베네수엘라 1건, 한국 1건 등이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서만 덤핑이 확정(3.74~32%)되었으며, 현재 일몰재심을 거쳐 5년간 반덤핑규제가 연장된 상태이다. 한편, 2000년 LG를 비롯한 한국산 중소형 냉장고가 반덤핑으로 제소된 이후 2001.6월 예비판정(35.3%의 잠정관세)이 내려졌으나 그 이후 2002.3.8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 바 있다. 2001.6.22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에 대해서는 16.3%의 반덤핑판정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오다가 2007.5.5일 종료되었다.

멕시코 경제부 UPCI는 1993.8.19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FC, Poliester Fibra Corta)에 대해 최초로 반덤핑 관세 부과 후, 1998.8.20일 및 2003.8.20일에 각각 5년씩 동 조치를 연장하였다. UPCI는 주재국 이해관계사(Akra Polyester, 마길라도라 지역 생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동 품목을 멕시코 국내에 공급함)의 요청에 따라 2008.8.19일 동 조치 연장 여부를 재조사기로 결정하고 2008.8.23일 한국의 생산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생산기업(웅진(구제일), 휴비스(구삼양))은 2008.9월 및 2008.11월에 생산가격, 수출가격, 생산시설 규모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009.5.25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2009.6.2일 공청회(원고측: Akra Polyester, 피고측: 대사관 및 KOTRA)가 열렸다(한국 생산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도 지명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측에서 참석). 공청회에서 Akra Polyester측은 과거 동

품목수입에 의해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으며, 한국의 동 품목 생산능력과 재고는 많은데 비해 수출할 곳이 많지 않아 반덤핑 규제가 풀릴 경우 멕시코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측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15년이라는 기간은 멕시코 국내 산업이 입었던 피해를 회복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며, 추가적인 반덤핑 조치의 연장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동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종판결 결과 2013.8.19일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이 결정되었다.

서비스 교역

해운, 유통,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는 편이나,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국제입찰에는 일반 적으로 FTA 체결국가의 기업이라는 조건이 부과된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NOM) 제도

멕시코의 표준규격제도(NOM: Norma Oficial Mexicana)는 1992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묵시적인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 표준규격제도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강제검사 제도이다. 멕시코 정부는 1994.3월부터 대상품목을 91개에서 424개로 확대하여 규격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NOM규정의 개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개정할 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런 관보 공고를 통해 공고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업계의 애로가 크다.

2009.10.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멕시코 국가인증기관인 멕시코표준인증협회(ANCE)와도 상호 시험성적서 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특정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성적서만으로 멕시코 강제인증인 NOM마크 취득이 가능하게 된 바, 동 협약으로 시험인증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표준인증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Normalización y Certificación)는 전기, 가스, 가정용 기기 등 분야의 대표적 기업 32개사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협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 85개의 멕시코 표준규정(NOM, NMX)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표준규격(NOM)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 총 23개이며, 금번 협약에 서명한 ANCE는 이중 가전기기, 오디오 비디오 제품, 정보 사무기기, 전력관련 제품의 NOM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멕시코는 한국처럼 제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 해놓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의 수입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너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후 인증서가 발급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인증비용 평균 250달러, 시험소 검사비용 평균 325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NOM 미취득시 국내 생산제품은 제조사가, 수입품은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으며, 통관보류, 물품 압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벌금부과의 제재가 가해진다. 현재 ANCE는 8개국(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노

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과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 NOM의 경우 1993년부터 NOM의 권리양을 허용치 않고 있다. 종전에는 타이어 수출업체가 NOM을 획득한 후 수입업체에 NOM의 권리양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수입상마다 NOM을 획득하게 함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타이어의 NOM을 패턴별로 획득하도록 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상이 10개 패턴 제품을 수입할 경우 1개 패턴 검사비용이 3,000달러이므로 총 30,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1994.10월에는 타이어 NOM 규정을 또 다시 바꾸어 모든 사이즈에 NOM을 얻도록 하고 NOM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허가받도록 하였다.

신발류 라벨링 기준 강화

멕시코 정부는 신발의 불공정거래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8.17일 신발류 라벨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1998.10.25일부터 발효하였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신발 라벨링(브랜드, 원산지 기재)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고정 부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Prefeco)이 공동으로 신발업체가 라벨링을 철저히 부착토록 감시하며, 라벨링이 부착되지 않은 신발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언더밸류, 덤핑수입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환경 관련 규제

멕시코 정부는 1988.1월 종전의 『1982년 연방환경보호법』을 폐기하고 미국의 『환경보전 및 회복법(RCRA)』을 모델로 『생태계 균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1988.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마킬라도라 기업에게 제조 또는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물질의 처분 또는 정화활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환경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1988.6월 위해물질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제품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멕시코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 관한 기본정책은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자국산업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 오직 국내공급자와 국내상품(국내부품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함)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국인 입찰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즉, 외국인의 입찰참여가 가능한 경우는 ① 국제조약(FTA 등) 하에서 국제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계약이 특정적으로 국제조약의 대상이 될 때, ② 적절한 국내공급자가 없을 때, ③ 응찰자가 없을 경우 ④ 국제금융기구(IMF 등) 차관자금에 의해 국제입찰이 규정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단지 몇 개의 국내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기관에 의한 검토과정에서 국내입찰자의 제시가격이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 외국인에게도 입찰참가를 공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멕시코는 PEMEX(멕시코국영석유회사)를 중심으로 각종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대해서 FTA 회원국 기업에게만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지식재산권 보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타결 및 미국측의 압력에 따라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규는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도 철저하지 않아 불법복제 복사물품의 시장유통이 많은 편이다. 특히, 외국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의 불법복제물과 유명상표의 가짜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및 구주기업으로부터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 투자 장벽

투자제한 분야

멕시코는 과거에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제한이 심했으나 1984년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3.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

법(LIE)』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 등)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투자위원회(CNIE: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은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출자지분을 10%, 25%, 또는 49%(특히, 장거리 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그밖에 외국인출자지분이 49%를 초과할 때와 총 투자가치가 매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는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7.12월 출범한 칼데론 정권은 에너지 및 세계 개혁안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에너지 개혁안은 에너지 부문에 대해 외국인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 허용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2008.10월 의회를 통과한 에너지개혁안은 석유 채굴·생산 부문에서 민간기업이 투자형태가 아닌 서비스계약 형태로만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출의무비율 및 현지부품사용비율상의 제한

내수판매의 수출의무비율 연계는 보세가공무역방식으로 투자하는 마길라도라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수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길라도라 기업의 내수판매 허용비율은 1998년 75%, 1999년 80%, 2000년 85%, 2001년 100%였으나, 2001년부터 철폐된 바 있다.

현지부품사용비율 제한은 특별한 것이 없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원산지규정을 충족치 못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NAFTA산 원산지규정 강화로 현지투자자출 가전기업들이 원부자재 수입 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문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0.10월 기준 최소 자본금 90백만 UDIS(약 20백만 불),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백만 UDIS(약 8백만 불)이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 하며,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내 금융기관은 상업은행(모든 기능 및 일부기능 포함) 41개, 연락사무소 76개가 있다.

한편, 연락사무소 설립조건은 일반법인 설립조건에 더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부와 재무부의 요구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허가기관은 은행 증권위원회(CNBV)이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최저 자본금 조항이 없다.

멕시코는 외환거래 자유국으로서 과실송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재투자, 과실송금 등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출대금 회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환보유에 제한이 없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장이자율은 2010.10.29일 3.84%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세제상의 제한

멕시코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특별히 우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보세가공 무역인 마킬라도라 기업에 대해서는 도입 원자재 및 시설재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내국기업도 보세가공수출을 할 경우 마킬라도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멕시코 10대 수출 및 진출 유망품목

대항목	세부품목	선정사유
컴퓨터/정보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위성방송 수신기, 게임기, 네트워크 장비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제고되고 있음
전기/전자	가전제품, 전자전기 부품, 측정기계, 절전형 가전제품	멕시코 주요 국내 브랜드가 없으며, 대부분은 현지에서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품이나 수입산임
기계/장비	금형, 소형발전기, 건설 장비 및 부품, 주차장용 엘리베이터	국내에서 기계장비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 중장비 및 부품 수요가 큼.
문화 콘텐츠	아케이드게임기기, 콘솔게임 소프트웨어	아케이드게임센터가 많으며, 멕시코로 아케이드 게임기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국산의 경쟁력 확보 가능. 콘솔게임 인구가 많아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성 유망
의료/건강	가정용 소형의료장비, 미용기기	전자의료기기의 경우 수요는 많으나 수입절차가 까다로워 성악시까지 장시간 소요. 체지방분석기 같은 가정용 의료장비나 마사지기 같은 미용기기 유망
스포츠/레저	스포츠웨어, 스포츠 레저용품	건강에 대한 의식 강화로 스포츠 용품, 헬스용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문구/선물	장난감, 선물용품, 팬시용품	국내산은 품질이 떨어져, 수입품이 호응을 받고 있음. 저가제품에서는 중국산이 대세이므로 디자인, 기능면에서 차별화 필요
미용/생활용품	욕실용품, 미용, 모조 보석, 악세서리, 주방용품	국내산은 품질이 떨어져, 기능, 기술, 디자인 면에서 우수한 수입품이 인기가 있음. 주방용품의 경우 기능성이나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성 큼

미국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은 2009년 HTSUS(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8단위 기준 10,449개의 세번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실행세율 4.8%로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 관세율의 3배를 넘는 관세를 지닌 품목이 전체 품목의 6.7%이며,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도 유사한 5.3%에 이른다. 담배, 낙농제품, 설탕류, 섬유, 신발, 가죽제품, 보석 및 인조장신구, 도자기, 유리, 트럭 및 철도차량 등이 평균관세율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류 및 의류에 고관세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인 섬유류 및 의류는 미국 시장 진출이 그만큼 불리하다.

미국은 또한 농산물 분야에서 196개의 관세할당을 통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며, 약 10% 이상(10.7%)의 품목에 대해 비종가세(non-advaleorem)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무관세로 수입되는 품목이 36.6%인 점을 감안할 때, 종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52.8% 수준이다.

미국은 제조업의 부품 및 재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한 일시적으로 관세를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법안을 늘 통과시켜왔으나, 2006년에 도입된 동 법이 2009년 말 만료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의회에서의 논란 끝에 2010.7.27일 미국 상원이 기타관세법안(MTB : Miscellaneous Tariff Bill)을 다시 통과시키고, 동 법안이 2010.8.11일 발효됨으로써 일부 자동차 부품, 디지털 카메라 렌즈, 일부 직물 및 섬유류, 화학용품, 전자렌지, 제초제 및 기타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

2012.12.31일까지 다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한·미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수입액 기준 94% 내외 조기(3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섬유류 분야에서도 미측은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의 품목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면사, 타이어 코드, 스웨터, 면직물, 여성의류 등 우리 측 주요관심 품목의 시장접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관심품목(여성 재킷, 남성 셔츠, 레이온, 리오셀, 린넨 등) 중심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적용의 예외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의류, 직물에 총 2억m²의 TPL(관세특혜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對미국 고관세 수출품목의 예

품 목	HS code	관 세 율
〈편직물 및 의류〉		
인조섬유 파일 편물	6001.92.00	17.2%
남성용 면셔츠	6105.10.00	19.7%
남성용 인조섬유 셔츠	6105.20.20	32%
여성용 브라우스 및 셔츠		
- 인조 섬유	6106.20.20	32%
- 양모 등	6106.90.10	13.6%
인조섬유 스웨터 등	6110.30.30	32%
남성용 정장 자켓	6203.33.10,	22%
	6203.33.20	27.3%
여성용 혼방 정장 자켓	6204.33.40	₩46.3/kg+21%
남성용 혼방 셔츠	6205.30.15,	₩49.6/kg+19.7%~
	6205.30.20	₩29.1/kg+25.9%
폴리에스테일 합성직물	540761.99	14.9%
나일론 합성 직물	5407.42.00	14.9%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5407.82.00	14.9%
	5407.52.05	₩18.9/kg+17.6%
〈산발류〉		
스포츠화	6404.11.40,	37.5%
	6404.11.50	48%
〈케이스류〉		
트렁크, 슈트, 케이스 등	4202.12.20	20%
	4202.92.90	17.6%

※ 출처 : 미국관세율표

수입부과금 등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Customs User Fees) 중 하나인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품취급수수료는 종합예산 및 조정법률(Omnibus Budget & Reconciliation Act of 1986: Public Law 99-509)에 근거하여 1986.12월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속령의 제품(Products of Insular Possessions), 최빈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rovided For In Title V of The Trade Act, As Amended(19 VSC 2462), 카리브연안 특별제도(CBI) 대상국가의 제품(Products of Countries Designated As Beneficiary Countries For Purposes of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 등의 제품을 제외한 수입품에 대해서 최저 25달러부터 최고 485달러까지 종가세로 0.21%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물품취급수수료는 2003.9.30일에 만료되었으나 미국 의회가 연장법률을 통과시켜서 2014.9월까지 연장조치 되었다(Public Law 108-89). 이 물품취급수수료의 경우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물품취급수수료가 수입액에 대한 종가세(ad-valorem) 형태로 부과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세관수속 비용과는 무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상품에 대한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4,700만 달러(기재부 추산)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유지비는 수자원개발법(Water Resource Development Act of 1986) (Public Law 99-662)에 근거하여 1987.4월부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상업용 화물에 0.04%의 종가세로 부과되었으며 1991.1월부터 0.125%로 상향조정되었다. 항만유지비에 대해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미국이 실제 항만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항만유지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품에 대하여 항만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수출품에 대하여는 항만유지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만 항만유지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명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유류, 원유 및 석유류 제품, 오존층 파괴 물질, 스포츠용 낚시 용구, 활, 유류과다 소비 자동차 제품,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백신, 주류, 담배, 충기류 등에 대해서 연방차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맥주도 연방 소비세 부과대상인데, 국내 소규모 맥주 생산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초 6만 배럴에 대해서는 7불을 부과하나, 수입산 맥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특례 없이 대규모 국내 생산자와 같이 무조건 18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내 소규모 와인 생산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혜가 부여되고 있다.

통관

(1) 일반적 통관 절차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세관 관련 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완벽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수입을 위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속한다. 수입제품의 반출은 은 관세 등의 납입을 포함한 수입관련 형식적

절차의 완료 여부에 달려 있지 않지만 수입자는 관련 서류(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3161)를 해당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동 서류 접수 이후 5근무일 이내에 반출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납부 추정치를 포함한 별도 서식(세관 및 국경보호국 서식 7501)을 미국 반입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관세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일부 상이한 세부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세관에서 위조 및 유사 상품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거나, 신선 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 절차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 안보통관절차 시행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선박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전자적 전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국토안보부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그리고 무역법(Trade Act of 2002) 및 해당 집행규정 등에 근거하여 통관/국경보호국이 출발지국에서 화물을 사전스캐닝하는 시범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Program,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Program을 비롯하여 Fast(Free and Secure Trade) Program과 CEAR(Commercial Enforcement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등 다양한 안보통관 절차를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의 검사 즉 Manifest Hold Exam/VACIS Exam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해상 화물에 대한 위협예방을 위해 수입자는 제조 및 상품관련 정보 10가지, 선사는 화물탑재계획 등 2가지 정보를 선적 및 출항 전에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10+2 보안신고제도(Security Filing)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수입업자는 검사비용, 보관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통관수속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입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

은 동 제도의 이행으로 약 8억 9천만 불에서 70억 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1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외국항구에서의 100% 검사조치(CSI 프로그램의 일환)를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2014년까지 2년간 연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 견본(Sample)에 대한 통관절차 복잡

견본이 국제무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은 섬유류 및 의류제품의 상업용 견본통관 시 천공, 견본표시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견본의 가치를 손상시켜 사실상 견본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4) 한·미 FTA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교역원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물품 반출에 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토록 규정하고 있다(도착 후 최대한 48시간 내 화물반출, 수입 전 사전신고, 부두 직통관 및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등). 또한 특급 탁송화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 반출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화물 반출 절차 도입, 화물 위험도에 따른 차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관절차 개선 및 무역 원활화 효과가 기대된다.

수입규제

(1) 수입금지

관세법(Tariff Act of 1930)에 의거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물품이나,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에 의거 비위생적인 공정을 거쳐 제조된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과 동물위생방역법(Animal Health Protection Act)에 의거하여 동물의 질병 및 식물 병충해 발생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방육류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및 연방가금육검사법(Federal Poultry Inspection Act)에 의거 수출국가의 수의공중

보건 위생 통제와 작업장 위생관리 상황이 미국의 제도와 실행사항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은 국가와 작업장으로부터는 축산물의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94)의 돌고래 보호규정과 국제 돌고래 보존프로그램 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거북보호법(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거하여 바다거북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Lacey Act는 불법적으로 수확한 식물 및 동 식물로 제조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식물 및 식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량제한

현행 미국법상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s)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취해 왔던 수량제한의 전형적인 형태인 섬유류 수입쿼터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의해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미국 내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중국산 섬유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2005년 중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2005.11월 미-중 섬유쿼터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중국산 섬유류 수출품 34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영하였던 바 있다.

(3)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농무부로부터 수입업자별로 제품별로 1년 단위로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더욱이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이 승인된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방사선 분출 전자제품 등의 수입 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관련법규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데,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물품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시정·파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동물에 사용하는 생물학적 약품(가축치료용 바이러스, 혈청, 독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기체, 보균생물 등)의 수입에 있어 그 특정한 물품은 농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상표부착요건을 적용받는다.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수입 통제제도가 존재한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 차원에서 수입이 통제된다. 철강 관련 기초 재료는 자동 수입허가 발급제 대상이다. 동 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2005년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동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에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축수산물 식품의 수입통관 관련 규제

한국산 농축수산물 식품의 미국시장 개척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첫째로, 실제적 과제인 판매개척 활동을 적극적,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절차적 과제로서 관계 연방기관들의 수입통관 절차를 파악하여 수입 시 받게 될 불이익의 사전예방과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식품 통관, 관련 연방기관이 집행하는 법규와 임무, 활동 그리고 수입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역할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의 본부 조직과 국내 기능은 여전히 농무부 산하에 편성되어 있지만 국경 검사 기능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으로 통합 이전되었다. 외국 농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그리고 동물 질병으로부터 미국의 농업과 천연자원, 특히 식물

자원과 동물자원의 건강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철저한 수입검사 기능을 수행하여 식물 병충해나 동물 질병 등이 발견되면 특정의 검역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를 위하여 규정된 생물화약품 및 독소제품의 점유, 사용 그리고 이전을 통제, 검사하고 있다.

② 농무부 산하 동식물위생검사처/식물방역부

관련 근거 법규는 Plant Protection Act Replac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Noxious Weed Act(Title IV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PPQ Regulation,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Regulation 등으로서 외국산 농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식물 병충해와 잡초(예를 들면 Mediterranean Fruit Fly, Oriental Fruit Fly, Citrus Canker, Asian Longhorned Beetle, Noxious Weed 등)를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보존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국가별로 허용된 농산물 식품(예를 들면 List of Approved Fruits & Vegetables from Each Country)의 수입 시 동식물위생검사처는 대체로 수입허가(PPQ Form 587)를 통한 수입프로그램과 CBP의 농업검사관을 통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 구제조치와 폐기처분을 하고 기타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최근에 California주와 Florida주에 Mediterranean Fruit Fly의 전파, Florida주에 Citrus Canker의 반입, New York주와 Illinois주에 Asian Long-horned Beetle의 유입 등 각종 병충해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동식물위생검사처는 기존의 병충해 차단장치를 재점검하는 등 수입프로그램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 식품 중 동식물위생검사처가 수입허용 조치한 품목만 수입될 수 있으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려는 품목이 허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품목일지라도 병충해가 없는 제품을 선별하여 수출해야 한다. 최근에 껌잎과 팽이버섯의 미국 내 수입검사 시 병충해가 발견되어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다.

③ 농무부 산하의 동물위생검사처/수의업무부

관련 근거는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등으로서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 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예 :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구제역(Foot & Mouth Disease), Rinderpest, Exotic Newcastle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등) 등을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에 대한 보호, 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 임무로 한다. 동물위생검사는 동물질병의 종류별로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검역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입허가(VS Form 16-3)와 철저한 수입검사를 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국가로부터 동물이나 축산물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허가와 함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철저한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질병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한다. Canada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미국 내에서 Exotic Newcastle병, 구제역, 탄저병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위생검사는 기존의 동물 자원 보호 장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④ 농무부 산하의 식품안전검사처(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관련 근거 법규는 Federal Meat Inspection Act,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Egg Products Inspection Act, FSIS Regulation, HACCP Program 등으로서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과정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각 단계마다 식품안전 위험을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하여 불량식품과 불법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을 퇴치시키고 이들 불량식품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 E.Coli O157:H7, Salmonella, Campylobacter & Listeria 등)으로부터 소비

자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미 농무부는 현재 한국산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기류 및 가금류를 소량으로 포함하는 식품, 즉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은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이 허용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육류는 미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미국은 최근 수입식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육류 소량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2009.6.22일부터 강화하였다. 즉, 수입허가 시 종전보다 많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허가 시 종전에는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에서만 검토하였으나, 2009.6.22일부터는 APHIS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검토도 함께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가금류를 소량으로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국내 수입업체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카레 식품과 고기만두 식품 등이 식품안전검사처에 의하여 압수,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수입업자별·제품별로 매 1년 단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불케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소량 함유 제품의 경우, 라면 스프 등으로 완전히 가공되어 식품안전에 위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⑤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

관련 근거법규는 Food, Drug & Cosmetic Act, Bioterrorism Act, FDA Regulation, Bioterrorism Regulation 등으로서 식품공급, 의약품 및 동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구, 그리고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자제품 등의 안전과 효능을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품과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식품에 국한하여 요약하면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그리고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Contamination) 등으로 인하여 식품의 안전을 해치는 불량 식품과 착오표시 식품(Adulterated Food & Misbranded Food)

을 퇴치시켜 국민건강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FDA는 더욱 강화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산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문제로 수입검사와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열처리 가공과 진공 포장된, 저산성식품과 산성화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FDA에 시설등록과 제조과정을 신청하여 FDA로부터 FCE No.(Food Containing Establishment Registration No.)와 SID No.(Submission Identification No.)를 획득·유지하고 Botulism 이라는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산 깻잎 통조림, 장아찌 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 등이 FCE No.와 SID No.의 미등록으로 말미암아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다.

한편, 건조 농산물 식품(Dried Fruits & Vegetables)의 경우 건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물질적 오염(예 : 흙, 곤충벌레, 쥐털, 새털)에 감염되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으며,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Seafood)의 경우 수산물 식품의 수입 공급선상에 있는 관련업자들(제조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도매업자 등)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System)를 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식품의 제조 과정부터 최종 판매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오염(Physical, Chemical & Biological Contamination)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조치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한다. FDA는 최근에 HACCP Program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가는 경향이다. 즉, HACCP Program을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칙과 수산물 식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1) 제수산 감귤

미국 정부는 1995.8월 한·미 간 식물검역요령(Work Plan)에 의해 금지병해충(감귤괘양병)에 대한 검역 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제수산 감귤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감귤 주생산지역인 미국내 5개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텍사스)는 제외되었다. 2000.6월 한·미 간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 제수산 감귤의 반입을 미국 내 전지

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미국 정부는 2002.10.5일 관련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02.12월 우리나라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하여 반입이 중지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본토와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로 제주감귤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합의한 결과, 2007.11.26일부터 알래스카주로 수출이 허용된 바 있고, 2010.11.12일부터는 미국 본토로의 제주 감귤 수출이 허용되었다. 다만, 미국내 감귤에 살포하는 농약관련 규정이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2010년 수확물량은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 농산물 병해충 위험 평가(PRA) 지연 문제

미 농무부 동식물위생검사처(APHIS)는 2005.12월 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한국산 파프리카(Bell Pepper)에 대한 병해충 위험평가(PRA: Pest Risk Analysis)를 종결하고, 2006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2005년부터는 한국산 박과작물(호박, 수박, 오이, 참외) 및 포도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1999.4월 미나리 수출을 요청한 이후 9년만에 미국 정부는 한국산 미나리에 대해 2008.3.20일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아직 달래, 냉이, 분재 등의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병해충 위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언제 종료될지 구체적인 일자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삼계탕 수입금지

우리나라는 2004.4월 미국에 삼계탕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미국은 5년 이상 동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삼계탕은 멸균(121℃에서 60분간 멸균 압착)된 것이므로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캐슬병의 비발생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위생체계가 미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삼계탕 원료인 닭의 도축, 위생처리, 가공을 하는 국내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미국의 위생 관련 규정(HACCP)과 합치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이 제출한 작업장 현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하고, 2008.10.6~17일간 한국 작업장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였다. 현지 실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양국의 관계당국 간 자료 제출 및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 제출 및 검토가 완료되면, 미국 측이 추가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 2008.4월 타결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약”에도 미국은 삼계탕의 수출이 현실화되도록 미국 행정절차법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와 그 이후 작업 및 법규 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삼계탕이 언제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한국 구제역(FMD) 청정국지위 인정

한우 고기는 가격이 비싸 수출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한국산 쇠고기가 들어가는 각종 제품(쇠고기 만두, 쇠고기라면, 카레 등)은 미국에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 쇠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對미국 수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쇠고기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청정국(Free Country)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2008.3.17~21일간 미국 측의 조사단이 방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안에 대한 2달간(2009.3~5월)의 의견 수렴을 종료하였다. 의견 수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10월 말 미국 농무부 내부 절차가 진행되어 2009.12.23일 미국 농무부 동식물 보건검역청(APHIS)은 우리나라를 구제역 및 무역 청정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동 지위 인정 절차가 무기 연기되었다. 2010.9.28일 세계동물위생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2010.10.30일 미측에 무기 연기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5)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른 식품수입규제 강화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 and Response Act of 2002) 세부규칙이 2003.12.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관광객들이 개인용으로 소지한

식품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입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의 수입자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항공·철도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수입되는 식품 관련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FDA는 식품관련업체의 기록유지 및 억류조치에 대한 세부규칙을 제정하였다. 상기 세부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6)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시책 강화

미국 정부는 2007.11월부터 국내 생산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식품안전(Food Safety)과 식품안보(Food Defense - 인위적인 위해를 가할 목적의 계획적인 오염 방지)의 개념을 망라하는 식품보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식품의 안전 관리방식을 reactive에서 proac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2007.7.18일,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수입제품 안전작업반(Interagency Working Group on Import Safety, 작업반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수입제품의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Action Plan for Import Safety)의 일부로서 마련된 것이다.

동 계획은 수입식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안전 문제,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및 행태 변화는 물론 인구변화(demographic change)까지 반영한 것이며, 특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 등에 대한 안전 및 recall 문제 등 아시아지역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다.

※ 미국 정부는 2007.12월, 중국정부와 “식품 및 동물사료의 안전(the Safety of Food and Feed)”과 “의약품, 부형제 및 의료기기의 안전(the Safety of Drugs, Excipients and Medical Devices)” 등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협약(MOA)도 체결

— 미국에는 연간 150여개국 30만개의 회사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13만여 수입자를 통해 연간 소비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상당의 각종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

주요 내용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요인에 대한 예방, 둘째, 위

험에 기초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개입, 셋째, 위해 요인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다.

또한, 각국의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위험식품군(high risk foods)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적 통제권(additional preventive controls) 부여
- 고위험식품(designated high-risk products) 수입 시 전자수입증명(electronic import certificates) 요구
- 기 실시중인 식품공장등록제도를 2년마다 새로이 갱신
- 우수제조수입품질관리기준(cGMPs) 기준을 부합시키지 못하는 생산시설에 대한 재조사 비용(new reinspection fee) 부과
- 기업의 자발적 recall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의 강제 recall 실시권 부여 등

(7) 식품안전 강화법 의회논의 동향

2007년~2008년 중국산 식품에서의 공업용 제제 발견과 2008년 미국 내 살모넬라균 오염 땅콩버터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하원은 2009.6월 식품안전 강화법이라는 이름의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동 법안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회사 식품시설의 매년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 조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 법이 마련되는 경우 미 식약청(FDA) 수입검사 대상 식품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의료보험개혁 관련

2010.3월 미국 하원이 상원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포괄적인 보건의료개혁법(Healthcare law)이 통과되었다. 이 개혁 입법으로 미국 경제의 약 1/6의 비중(2009년 국민의료비지출(NHE)이 2.5조불)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 및 그 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법 규정의

대부분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나 기존 건강상태(pre-existing conditions)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가입거절 관행의 금지, Medicare 처방의약품의 개인 부담분의 완화와 폐지는 2010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특히, 제약업체는 향후 10년(2010~2019)간 생산자 부담금(fees) 및 의약품 할인 등을 통해 약 850억불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약 32백만명에 달하는 의료보장 수혜계층의 확대와 이로 인한 처방의약품의 매출 증가, 생물의약품의 특허보호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약업체의 10년간 수익 증가는 부담규모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Medicare 처방의약품(Part D)에 대한 가격 할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2020년까지 Medicare 중 처방의약품(Part D)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간의 완전 폐지는 노인계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 계층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약품의 사용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개혁 입법에 포함된 “생물의약품의 가격경쟁 및 혁신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은 ① original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는 혁신 및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② 생물의약품의 generic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bio-similar 또는 FOB(follow-on biologics))에 대한 허가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가격 경쟁 유도 및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양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법은 생물의약품(Biologics)의 generic에 해당하는 동등생물의약품(bio-similar 또는 FOB(follow-on biologics))의 허가 관리(approval pathway)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original 생물의약품 허가 보유자에 대해 12년 이상의 시장 독점권(market exclusivity)을 부여하는 등 original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 법에 따르면 ①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신청자는 original 생물의약품과의 생물학적 유사성(bio-similarity) 및 대체성(inter-changeability)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②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신청자는 동 의약품에 대한 analytical study,

animal test, clinical study data 등의 시험 자료 등의 제출해야 하며, ③ Original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12년 이상의 시장독점(market exclusivity)이 부여되고, 첫 번째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해 허가 승인 후 18개월 또는 시장 출시 후 12개월의 시장독점이 부여되고, ④ 동등 생물의약품의 허가 신청자가 제조 방법 등 신청관련 정보를 original 허가 보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향후 신성장 동력산업의 한 분야로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우리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 법령정비 작업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규정

(1) 미국 원산지규정 개관

원산지는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율, 수입쿼터, 원산지의 정확한 표시 등의 집행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은 특정품목이 해당국가에서 가장 최근에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여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명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성격 또는 용도의 변화가 주요 판정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실질적인 변형원칙은 공정의 형태(가공 또는 조립)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쿼터품목,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 정부조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변형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쿼터품목인 경우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제3국을 통한 對미국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의 조립과정이 부가가치가 적고, 가공품 또는 조립품이 특별관세대상이 되는 상품군에 속할 경우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

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7.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 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하였으며, 1999.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정부는 동 합의의 이행을 위해 『Trade and Development Act of 2000』의 405조를 통해 직물 일부 품목에 대해 종전기준으로 환원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2000.5.18일부터 동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재개정후(2000.5.18일)
직물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염색 및 프린팅 공정을 거쳐 가공한 국가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만을 원산지로 인정	직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되, 직물을 수입하여 염색 및 프린팅하고 2개 이상의 사후처리공정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의류	재단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봉제조립국가 기준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WTO 섬유 및 의류협정에 따라 2005.1.1일부터 WTO 회원국에 대한 섬유류 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2005.10월 개정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과거 섬유 및 의류 수입 시 제출되던 섬유신고서(textile declaration)가 폐지되고, 대신 수입업자는 원산지 및 제조업체명, 주소 등이 기록된 ‘제조업체 증명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2008.7월 통일된 원산지 규칙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 동 건이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완전 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에 관해 합의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해서 양국은 미국과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과정을 거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 번 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을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는 약 5,000여 개(HS 6단위 기준)에 달하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환경을 반영한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업계의 글로벌 아웃소싱의 활성화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미국의 무역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관련 제품의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덤핑·보조금 판정이나 산업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여지가 커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재라는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미국으로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시행으로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타격은 물론, 최종판정 지연에 따른 고액관세의 예치, 연례재심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 및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도의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부과중인 품목에 대해서도 일몰재심과정을 통해 규제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0.10월 말 철강, 섬유, 화학제품 등 15개 품목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10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으로 반덤핑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철강 10개, 화학 2개, 전기·전자 1개, 섬유 1개, 기타 1개 품목으로 철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상무부는 조사대상기업의 랜덤 샘플링을 확대하고, 덤핑 긍정판정을 받았을 때 현금예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반덤핑/상계 관세 제도를 변경하는 작업 중에 있는 바, 이는 주로 비시장경제(NME)로부터의 부당한 덤핑 수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나,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제도변경 내용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우리 수출품은 적용대상에서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이유로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 시 우리 수출상품이 동시에 발동 대상이 되는 위험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 많아 對미국 수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 존재하며(연방정부 80, 민간부문 620), 이들의 규격 수는 93,000개(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또한, 이들 기관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달라 모호한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관할 시정부는 최초 기계설비 및 시공시 UL마크 획득 의무 및 현지업체 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현지진출상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UL마크는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과하는 품질인증 마크중의 하나이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가 시행하는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여를 받는다(소형 냉장고의 경우 비용이 6천~1만 달러 소요). 물론 UL마크 획득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몇 개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소비자들은 구매 시 UL마크를 확인하며, K-Mart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UL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형냉장고와 같은 소비용 전기제품이나 간단한 기계류 등의 경우 UL규격의 획득은 이해가 되나, 대규모 공장설비의 경우 한국에서 각종 안전규격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고 새로운 현지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현지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중에는 범용성이 있는 일반기계라 아니라 주문에 의해 생산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경우에는 UL 규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아울러, 생산설비의 시공업체도 미국 내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시공해야만 시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계의 특성상 한국의 시공업체 기술자가 현지출장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 업체에게 맡김으로써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출업체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안전공업규격, KS 등의 규격을 획득하였다면 현지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2) 자동차 라벨링제도

미국정부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 절감법』(1992.10월) 제201조 및 『미국 라벨링법(American Labelling Act)』(1994.10월)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 및 輕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산 부품 사용비율)과 연비, 안전도에 관한 정보가 표기된 라벨(Maloney label)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부품의 차종별 사용비율, 2) 최종 조립 국가, 주(state), 도시명, 3)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에서 15%이상의 부품을 조달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2개국의 국명과 그 조달비율, 4) 엔진 및 변속기의 원산지(부가가치비율 50%이상 또는 최대부가가치를 점유하는 국가)를 라벨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연비표시 라벨링과 관련해서, 2010.8월 교통부와 환경청(EPA)은 현재 평균연비와 연간유류비용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교통부와 환경청은 이에 대해 2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이를 강조하는 안이고, 2안은 A~D 등급표시는 없으나, 해당차량이 전체 차종 및 동일 차종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지를 표기하는 안이다(상세내용 www.epa.gov/fueleconomy 참조). 1안의 경우 A~D 등급이 부각이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다소 논쟁적인 안이며, 2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이하야 도입과정에서 업계의 반대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안이다. 교통부와 환경청은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2012년 모델 차량부터 변경되는 라벨링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도와 관련해서는 2007.9.1일 이후 생산되는 차량의 라벨부터 충돌 안전도 정보가 포함되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전면 및 측면 충돌, 전복 사고에 대한 안전도가 별 5개 만점으로 표기될 계획이다. 픽업트럭은 라벨 표기 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었지만, 자발적인 표기는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3)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강화안

2010.1월 미국 교통부 산하 위험물안전청(PHMSA :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리튬배터리 운송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입안 예고하였다. 동 안은 기존 소형리튬전지에 대한 위험물 규정 적용 제외를 없애고, 일부 극소형 리튬전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항공기내 선적하는 위치 제한이나 한 비행기내에 선적 가능한 리튬배터리 양 제한 등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리튬배터리를 포함한 제품이나 리튬배터리 수출업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교통부는 이 안의 시행을 2011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강제 인증제도

2010.4월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청은 에너지스타 제품 인증 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자기인증제 대신에 사전에 승인된 기관에서 시험, 검토 및 인증을 하는 제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2010년 말까지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너지스타 표시가 판매를 위한 강제제품규격은 아니지만 소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외국 인증자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포함한 실제 시행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전자제품 생산자들도 제도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5) 외국 수출기업의 법적책무 강화 법안

2010.7월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의 제조업체에 대해 미국내에서 법적 소송이 가능한 현지 대리인을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대상품목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물학적 제제, 소비재, 특정 화학물질, 살충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다. 동 법에 따르면 만약 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나, 통과될 경우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 관심이 필요하며, 수출업체로서도 필요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소비재 안전 개선법(CPSIA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2008년 도입된 소비재 안전 개선법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해서 라벨링 요건, 시험인증요건, 중금속 함유 상한 요건 등의 강화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2009.2월 이후 새로이 정해진 납 성분 상한이 도입되었으며, 어린이 용품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영구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7) 한·미 FTA

한·미 FTA는 기술규정 등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TBT 협정문의 범위에 사실상 미국 주정부를 포함시켰으며,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적 논의와 해결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 환경관련 규제

미국 의회는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바, 2009.6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에는 미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국경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9.11월 상원에서도 국경조치가 포함된 “미국청정에너지일자리 법안”(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이 상원 환경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법안에 국경조치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07.5월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신통상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환경과 관련해서는 △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법령 및 조치의 채택·유지 및 집행을 약속하고 △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의 보호수준을 약화·저하하는 방식으로 환경법을 면제·손상할 수 없으며 △환경 분야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1) 미국 기후변화법안의 국경조치

2009.6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은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제도 시행 시 미국 내 에너지다소비 기업, 무역중심적 기업들이 미국과 상응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들의 기업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국경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은 다자 온실가스감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동 협정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경쟁불균형을 해소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목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협상목표에 합치되는 다자 온실가스감축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 수입의 85% 이하가 1) 구속력 있는 감축약속을 포함한 국제협정의 당사국, 2) 분야별 다자/양자 온실가스 감축협정의 당사국 또는 3) 미국의 해당 산업섹터에서의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감축도와 동등하거나 낮은 연간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집약도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을 경우 2020년부터 국경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경조치는 동 조치의 적용을 받는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업자가 수입 시 배출권(international allowance)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동 국경조치 도입에 대해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2009.9.30일 상원 환경위원회에서 발의되어 11.5일 동 위원회를 통과한 “미국청정에너지일자리법안”(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도 하원법안과 유사한 국경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보다는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2)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동향

EPA는 2009.9.30일 연간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동 시설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관행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를 획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입법 예고하였다. EPA는 금번 온실가스 규제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연간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시 미국 전체적으로 약 14,000개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시설들이 허가를 획득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자동차의 기업평균연비(CAFE: Th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및 온실가스 규제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보다 적은 양의 가솔린을 소비하는 자동차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출가스의 감소를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자동차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 내 판매 시 자사 자동차 평균연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 자동차 생산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않는다. 이 규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별하여 각각 별개로 평균연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라는 점에서 GATT 제3조 4항 위반으로 평가되며, 동 규제는 GATT 제20조(g)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CAFE 규제는 개별차량모델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한 자동차업체의 전 차량모델에 대한 가중평균 연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EU에 의해 GATT에 제소되었다. 패널은 1994.5월 미국의 동 규정이 GATT원칙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으나, GATT 이사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제고를 위해 미국 의회는 기업평균연비를 2020년까지 현행 갤런당 27.5마일보다 40% 증가한 갤런당 35마일로 상향조정하는 “2007년 에너지 독립 안보

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2020년 가구당 연간 700~1000 달러, 소비자 전체로는 연간 22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또한, 자동차 생산기업이 연비제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관련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인 2010.5월에는 환경청과 교통부가 2012~2016년 자동차 생산모델에 대한 온실가스배출(GHG) 및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안을 발표하여 종전 연비만 규제하던 것을 온실가스도 병행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마일당 평균 250g/mi, 기업평균연비는 35.5mpg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생산모델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연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환경청과 교통부는 2010.10.1일에 2017~2025년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0.10.25일에는 2014~2018년간 중대형 트럭, 버스 등에 대한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안하였는바, 동 기준들의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기정화법

대기정화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0년, 1977년, 1990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90년 개정법은 자동차 배기가스중의 탄화수소(HC) 배출량을 종전의 1마일당 0.41g에서 0.25g으로, 질소산화물(NOx)도 1.0g에서 0.4g으로 감축하여, 이 기준을 1994년형부터 신차의 40%에 적용개시하고 1996년형부터는 신차 전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미국은 1962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세계최초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국가환경정책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있다. 이들 법규들도 인간환경의 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제출 및 그 이외 주요한 연방정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활동,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각 연방기관이 정하고 있다. 평가서에 환경에 대한 영향 및 대체안 등이 들

어 있어야 하며, 평가항목을 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의 선정(scoping)이 개별안전마다 행해져야 한다.

평가실시주체는 연방정부기관이나, 신청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간이환경영향평가서(EA)를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작성(screening)하며 평가서안은 법적 권한 및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청(EPA)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미 FTA

한·미 양국은 FTA 체결을 통해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참여를 증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 정책을 지향하는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환경위원회를 설치, 환경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2007.6월 한·미 FTA 추가 협의를 통해 7개 다자환경협약(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 해양오염 협약, ④ 미국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 습지보존협약, ⑥ 국제포경규제협약, ⑦ 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 및 조치를 채택, 유지 및 집행 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환경 chapter상 의무 위반 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미국 정부조달 환경 개관

미국 정부의 총 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2.9조 달러이며 이중 연방정부가 1.2조 달러이다. 미 연방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2009년 약 5천3백억 달러이며 주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약 8천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연방 구매를 총괄하는 법령은 『연방구매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며, 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종 분야별 법

규와 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구매규정』에는 외국상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Buy American) 관련 규정이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국제수지 운용을 위한 외국산 구매제한 규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은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한 규정인데 비해, 국제수지운용정책관련 구매제한은 미국 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 규정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미국산 재료가 50% 이상 사용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에 의해 외국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동 협약은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하기로 양허한 기관이 일정 규모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한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더욱이, WTO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는 州는 총 50개 중 37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3개의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13개) : 앨라배마, 알래스카,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한편, 동 Buy American 조항은 2009.2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기부양법에도 포함되었다. 즉, 공공사업 프로젝트의 미국제품 구매 의무화 대상에 철강과 함께 공산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동 조항을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미 연방조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 국방부 조달의 경우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 비양허 품목의 입찰가격에 50%의 가격상향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 WTO 정부조달 협정 비양허 품목(22개 품목군)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90 개 품목군중 22개 품목군, 무기, 미사일, 선박, 엔진, 비행기, 베어링, 손도구, 계측기,

통신·탐자·레이더 기기, 전기·전자 부품, 섬유·가죽·의류 제품, 철제 봉·판·구조물 등

그러나 미국과 상호 국방조달 MOU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이라도 모든 조달 기회에 있어 미국 기업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미 국방부의 식품, 의류, 특수철강 조달을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Berry 수정법 적용품목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급업체에게만 조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직접 구매가 아닌 Prime Contractor에 대해서도 조달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제조업체의 제조물 보증서 및 공급업체의 보증서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구매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과거 실적 요구, 미국 시민권자가 주요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금 거래 요건 및 미국산 부품 사용 요구 등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중앙정부의 상품·서비스 개방 하한 금액을 미국측은 현행 약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우리측은 약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폭이 6조원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가 신기술 개발 분야이며, 이러한 장점이 실제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자국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교역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337조 조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337조 조사(Section 337 investigation)”를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 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되면 ITC는 세관 당국에 대하여 동 침해 물품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국경에서 차단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릴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통상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이 절차는 1년 내외에 신속히 완료될 뿐만 아니라 구제방법도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등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타국의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일반법정을 통한 법적 분쟁에 대신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빈번히 사용하는 절차이므로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선발명주의 및 선사용주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특허 및 상표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취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 및 선사용주의(first-to-su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출원하였는지 보다는 누가 먼저 그 발명을 했는지 또는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이나 상표법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이다. 즉,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의 원리에 따르면 누가 먼저 출원이라는 형식적인 행위를 하였는지 하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누가 먼저 발명하였는지를 따져서 진정한 발명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식재산권법의 원리에 충실한 장점이 있으나 선발명이

나 선사용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자체적인 문제점과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미국도 지식재산권의 상호보호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교역대상국의 요구 등으로 서서히 선출원주의적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은 선발명주의 및 선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선출원주의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손쉽게 단기간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미 특허청간 구축된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양국 특허청은 2009.1.29일부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공통으로 신청한 특허출원건에 대해 제1출원국인 우리나라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으면 제2출원국인 미국에서는 해당 출원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특허의 내용, 심사관련 통지서, 영어번역문 등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9.1.28일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1.29일부터는 영구프로그램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 특허청의 중복심사를 생략하고 출원인들에게는 미국에서 다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절차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할 계획이 있거나, 특허의 전략적인 활용과 특허분쟁 등에 대비하여 개발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신속히 특허등록을 받기 원하는 기업체나 연구소, 발명가에게는 유익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2010.10월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보기까지는 평균 25.7개월이 소요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하이웨이이용신청을 승인받는 날로부터 1~3개월 전후면 최초 심사의견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양국 특허를 모두 확보하는 시간은 더욱 줄일 수 있다.

■ 투자장벽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예외적인 규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對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중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인수 및 합병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그 거래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07.9월에는 미국 안보 및 기간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심사 및 집행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Regulation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사대상을 외국인에 의한 투자로서 미국의 사업을 운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covered transaction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고, 검토기간은 30일 조사기간은 45일로 제한함으로써 심의절차를 효율화하였다.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절차는 없다.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州法에 의해 설립된다. 州法의 내용은 州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州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허가증을 받으면 법인이 설립된다. 미국의 경우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절차는 지극히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 경쟁정책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여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은 물론 외국시장에서 행한 경쟁제한행위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국 내 소비자에게 미칠 경우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원

칙을 말한다.

미국 경쟁당국(법무부 독점금지국)이 역외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시·처벌하는 것은 국제 카르텔이며, 감시·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주로 외국기업 간 담합을 통한 가격을 인상·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할당, 담합 이행 상황의 점검 등 경쟁제한 행위들이다.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6월부터 개정 셔만법(Sherman Act)인 『반독점 형사사건처벌 강화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forcement & Reform Act of 2004)을 시행, 형사벌금을 법인 1억 달러(중전의 10배), 개인 백만 달러(중전 35만 달러)로 증액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상 한도 10년(중전 3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카르텔 벌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개정 셔만법 이외에 별개 법률인 『벌금증강법』(Alternative Fine Statute: 18 USC Section 3571)에 의해 카르텔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의 2배 혹은 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손해액의 2배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 벌금을 증액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평소에 경쟁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의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 법무성의 독점금지국은 카르텔 처벌 시 『벌금증강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06.3월에 테러 방지법(Patriot Act 113조)을 개정하여 반독점법 위반사건 조사 시 경쟁당국이 비밀리에 기업과 임직원의 유선통화, 구두대화 및 전자통신 등에 관한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기업이 처벌받는 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6년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약 1백5십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고, 2001년에는 핵산 조미료 가격 담합으로 2개 기업이 3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미 법무부는 1999.4월부터 2002.6.15일 기간 중 국제반도체 DRAM 가격담합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3억 달러, 하이닉스에 1억 8천5백만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두 회사간부(삼성전자 6명,

하이닉스 4명) 10명에 대해 5개월에서 14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007.8월에는 2001.1월부터 2006.7월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제선 승객 및 화물 항공요금 담합과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3억 달러의 형사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연루되어 우리나라의 LG Display 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금액은 미국 법무부가 카르텔로 인해 부과한 금액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9.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의 제재를 받은 바도 있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 상향 및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신체형제재도 자주 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 및 개인에 대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무부와 차별되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조직역량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품에 대한 허위, 사기행위 등 전통적인 소비자 보호업무이외에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피해, 예컨대 신분도용, Spyware 메일, 크레딧 거래 사기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도 넓은 의미의 소비자 보호업무로 보고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또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2010.8월 기업결합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기업결합 심사지침은 1992년 이후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경제적·법적 환경 변화 및 경쟁당국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지침에 반영토록 하여 기업결합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중 검토대상이 되는 시장집중도 수준을 HHI 기준으로 종전의 1800에서 2500으로 상향시킨 것은 실제 기업결합 심사업무를 반영시킨 것이다. 기업결합 검토시 잠재적 경쟁자 범위의 사업자를 단기간에 실제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로 국한시켜 관련시장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Hart-Scott-Rodino 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개시 이전에 반드시 미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라 함은 자산 혹은 의결권 있는 주식 규모기준으로 2억 불 이상의 큰 거래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대상이 되고, 이보다 작은 거래이더라도 기업결합 취득자 및 피취득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대상 기업결합규모는 미국의 GDP 에 연동되어 매년 고시되므로 대형 기업결합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미경쟁당국에 사전에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기기간동안 기업결합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일일 최고 16천 불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업결합 시에는 심사료를 미경쟁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심사료 수준은 기업결합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45천 불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전임 Bush 정부에 비해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분위기이므로 미국시장에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 경쟁법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독일,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EU,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 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3.11월 제7차 한미 경쟁당국 간 협의회(워싱턴 D.C. 개최)에서 한미 경쟁당국 간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협정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미 FTA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경쟁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으며, 경쟁법 관련 집행 과정에서 양국 기업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

■ 해운서비스 시장에 대한 제한

『1904년 군사화물 우선적취법(Military Transportation Act, 1904)』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수송되는 모든 군수품을 포함한 물자는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4년 공식결의 제17호(Public Resolution No. 17)는 미국의 정부기관(수출입은행 포함)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상청이 미국 상선대가 충분한 선박 및 적재능력, 적당한 운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 차관 수혜국에게 50%까지 적재를 허용하고 있다.

『1936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 of 1936)』에 따르면, 정부공무원 이사화물은 미국 국적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61년 공법』 제664호(Public Law 664, 1961)에는 미국 국적선이 적정한 운임을 제공할 경우 적어도 정부관련 화물의 50%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5년 식품안전법(Food Security Act of 1985)』상에는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물자의 최소한 75%는 미국 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20년 미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27장은 미국 내 화물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적선(U.S. built, U.S. owned, U.S. flag vessel)”에 의해서만 수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소위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36의 Section 901을 개정한 화물우선적취법(Cargo Preference Act of 1954)은 미국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재정지원하는 화물의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선박의 운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외국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유효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선박에 선적이 가능하다. 그 밖에 『1995년 알라스카산 석유 금수해제법』은 알라스카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해외 수출할 경우 미국 국적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 총론

베네수엘라 경제통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 선행 이해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적 이데올로기 및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정치특징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베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국가로 1999년 집권 이후 차베스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권 3권을 모든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는바, 현재 입법부는 여당인 사회통합당(PSUV)이 95%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법부, 행정부의 국가권력을 통제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 대통령 3선 출마 관련,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2009.2.15일 과반수로 통과되어 차베스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예견되고 있다.

둘째, 21세기 사회주의(socialism)를 표방하는 통제경제(고정 환율, 가격통제 등)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바, 기초 생필품 가격통제 및 수입허가제 실시 등 자유 시장경제 활동 제한 및 외환운영위원회(Cadivi)를 통한 외환배분을 통해서 외환거래 통제 및 국내 달러화 거래제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셋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윤 지상주의식 자본주의와 약소국에 대한 자원수탈형 19세기 제국주의 경제정책에 반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주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전화, 시멘트, 철강, 석유, 가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도한 국유화로 인하여 정부 고용 인력이 점차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9월부터 2009.9월의 1년 기간 중 각종 국유화조치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서 정부인력으로 흡수된 인력은 약 26만 명에 달했다. 베네수엘라 통계원(INE)에 따르면 2009.9월 정부고용인력은 총 약 230만 명으로 전체 고용인력의 19.2%(2008년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고용인력은 960만 명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석유의존형(Petro-economy) 및 농산물수입 경제구조로 주재국은 100달러의 외화 가득액 중 94달러가 석유수출에서 발생하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로 석유수입금으로 식료품, 의약품 등 기초 생필품을 수입하는 수입형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베네수엘라는 2008년부터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귀금속이나 차량 등 고가의 사치성 완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수입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25~35%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35%에서 40%로 인상하였다.

- 0% :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5% : 원자재 및 자본재
- 10% : 역내에서 일정수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15% : 각종 공산품
- 20% : 농수산물, 식품, 의류 등 최종 소비재
- 25~35% : 귀금속류 등 사치품, 제지 및 인쇄품목
- 40% : 자동차

관세는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가세(CIF 가격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CIF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Reference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9%, 특별소비세 10%, 통관 수수료 2%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수입부과금은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적용되며 CIF가격+수입관세에 대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9.1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9.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이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3.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7.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3.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8.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차베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확대 창출 등을 위한 일환으로 2006.10월부터 수입 자본재 부품 및 설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치에는 712개 품목이 포함되며, 주요 품목으로는 발전기, 압축기, 섬유기계, 제빵기기, 승강기 및 동 부속품 등이 해당된다. 한편, 2009.10.23일 차베스 정부는 국내경기 진작을 위해서 관보 39,291호를 통해서 제조업, 건설 분야 등 715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단행하였는바, 효력은 3년간으로 한정하였다.

통관 절차상의 장벽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

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 재검사를 실시하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관 수수료, 창고사용료 등이 비싸고 보세창고 내에서의 잦은 도난사고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통관 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첫째, 관세법상 특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로 이는 관세율표상 구속요건란에 5번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는 G-3 협정 국가 및 안데안 국가 간 교역 시 관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다. 셋째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원산지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국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반덤핑 관세부와 품목의 원산지를 속여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 업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요구하거나 국제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입 규제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

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 제출, 자동차에 대한 수입 쿼터 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2003.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구입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DIVI 제도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수입대금은 CADIVI 신청절차 종료 시 수출업자 계좌로 자동 송금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절차 종료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12월 베네수엘라 경공업무역부는 수입업자가 CADIVI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 개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국내 미제조 확인서” 및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각각 1년, 3개월에 불과하여 수입 시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동 확인서 발급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등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무역부는 2008.1월부터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산 차량에 대해 115,500대만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3,000cc 이상 대형 고급차량 수입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수입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말 금융위기 여파로 유가하락이 심화되자 국내 조립판매자동차 회사에게 시행하던 완성차 수입쿼터를 전면 금지시켜 완성차 수입은 정부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

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1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의류·플라스틱·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03년 들어 외환통제정책에 따라 각종 수출입이 감소하게 되자 그 동안 수입제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던 철강 및 신발류 등에 대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인정되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법령(Ley Sobre Normas Técnicas y Control De Calidad, 1979.12)에 의해 300여개 공산품에 대해 표준규격을 정해놓고 동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관(SENORCA)에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업용 기계부품 등은 수입 전에 사전 검사 및 인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새로운 부품에 대해서는 공업규격위원회(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국내 생산품과 유사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품질증명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업시험검사소 등의 검사내용을 상공회의소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 규격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 확인서 유효기간이 1개월~1년 정도로 자의적으로 발급되어

제품의 생산과 운송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 확인서를 받은 후 주문을 할 경우 통관시점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발급이 안 될 경우 통관을 못하고 물품이 세관에 방치하는 일이 발생, 기업들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환경관련 규제

베네수엘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을 이유로 한 특별한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배기가스 관련 규제 수준이 Tier 0(Tier는 미국의 차량 배기가스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의미)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환경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소비량 감축 및 천연가스 사용 장려를 위하여 2008.1월부터 모든 수입차량 및 국내 조립차량에 대해 천연가스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세부 규정 미비 및 천연가스 Kit 공급 지연으로 인해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한 바 있고, 이를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하였으나 2010.10월 현재까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천연가스 Kit의 안전성 문제 및 소형차량에의 탑재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품목별 장벽

경공업무역부(MILCO)는 국내 조립산 차량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2008.1월 외국산 차량의 수입을 전년 대비 62.2% 축소한 115,500대로 제한키로 결정하는 한편, 3,000cc 이상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23,000대가 수입 판매된 한국 차량의 경우 2008년도 수입허가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정도에 불과한 9,000여대로 축

소되었으며, 3,000cc 이상 차량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간 주재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국산 인기 차종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완성차량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베네수엘라는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의 소형 차량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5.6월부터 VeneMovil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08.6월까지 1,600cc 이하 1만 달러 미만의 소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최근 동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T 제품 수입에 따른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성 안테나, 셋톱 박스, 휴대폰, 광케이블 등의 제품 신규 생산 및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3년, 연 2~4%의 저리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정보통신부 구상대로 향후 5~7년 내 주요 IT제품의 국내 자급자족이 실현되면 한국산 IT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및 기타 과일류의 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소규모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으며,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추진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 충족을 위한 제조업 육성에 치중하고 있어 수출 보조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베네수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조달전담기구는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조달업자 공급업체 등록 및 정부조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을 위해 조달청(SNC)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물품 조달업무는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정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석유산업, 알루미늄산업, 철강산업

등 각종 기간산업이 국영화되어 있어 입찰에 의한 정부 및 국영기업의 구매가 많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에 주재하는 기업으로서 SNC에 조달업자 공급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 업체들은 SNC에 등록된 베네수엘라업체를 에이전트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입찰절차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상품의 구매에 있어 국산품 가격이 경쟁 수입품보다 5%이상 비싸지 않은 경우 국산품 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국내 부가가치가 20%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에는 추가로 각각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제품은 외국산 제품 대비 최대 15%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부조달은 대부분 공개입찰의 형태로 입찰이 이루어지지만, 차베스 정부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정 또는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공개입찰은 매우 제한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실제로는 인맥 및 자금을 통한 대정부 사전 로비활동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의 경우에 공고 기간이 통상 2주일 이내로 짧아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베네수엘라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서 파리협약, 베른협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제반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1997.4월 SAPI(Servicio Autonom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를 설치하여 상표, 발명, 신기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고, 사회주의 국가 이념을 내세워 규제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적이나 CD, 음반 등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바지, 의류, 모자 등의 상표 도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후 외국산 의약품 관련 특허를 한건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특허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2007년 중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개선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2008년에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계속 지정되었다.

■ 서비스 장벽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통신회사 CANTV의 독점이 폐지된 이후 국내외 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공급회사가 크게 증가 하였다. 공중파 방송의 영업 허가기간은 25년으로서 2007.5월 반정부 보도를 사유로 차베스 정부가 RCTV에 대한 방송 허가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선박의 자국 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안 무역이나 운송은 자국 내 등록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 운송의 경우, 민간항공 감독기구인 INAC는 2008.9월 미국-베네수엘라 간 항공운송 불평등을 이유로 미국 국적 항공기의 운항 편수를 2008.9.28일부터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

■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분야

1999.10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의 외국인투자는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금융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베스 정부에서 2006년 이후 석유산업 국유화에 이어 시멘트,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점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약

TV, 라디오 방송 및 현지어 신문, 국가자격이 요구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전문가, 엔지니어,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기자 등 전문 직종에는 외국인 투자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동 제한 분야는 국내 투자 지분이 80% 이상인 국내기업에만 허용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동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기업의 지분을 19.9% 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항공 운송의 경우 베네수엘라 국적기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석유 등 국유자원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는 자원개발에 외국인투자를 대폭 완화하여 13개에 달하는 한계유전의 개발권을 외국기업들에게 양허한 바 있으나 차베스 정부는 1999.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석유 등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05.7월부터 석유 개발은 국영석유회사인 PDVSA와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기존 외국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06.3월 제정된 에너지석유부의 합작회사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지분의 6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현지 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 주재국 상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법상 회사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산화의무 부과

원칙적으로 현지 부품 사용의무는 없다. 석유 및 광물자원을 제외한 베네수엘라의 국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산부품 사용을 강제할 상황에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생산 부족 증명서 등을 경공업무역부(Milco)에서 획득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 정책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광물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 들어서는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 제조업 육성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제조 상품, 특히 음식료품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를 특별히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08-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141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134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투자진흥청인 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베네수엘라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은 카

라카스 시내 및 카라카스 외곽 고속도로 부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된 환경보호지역 등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 또는 시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 별 문제가 없다.

내국인 채용 의무

외국 법인의 지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국적이나 주재 장소 등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노동담당 직원(labor relations manager)은 반드시 베네수엘라 국적을 보유한 자로 임명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항공의 Captain 또한 베네수엘라인이어야 한다.

피고용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피고용자의 9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급여총액의 80% 이상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 국내에 부족한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상기 90% 고용에 대해서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노무관리상의 제약

베네수엘라인의 생산성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지각하는 사례가 많고 공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직률이 높아 전문가 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풍부한 인력에 비해 숙련 노동자나 전문경영인 영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한 파업이 빈발하는 등 노무관리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아 내국인들조차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단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종료하거나 해고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투자 시 다른 기업의 채용 조건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당 노동시간은 주간 근무자의 경우 최대 44시간, 야간 근무자는 최대 40시간, 주야간 혼합 근무자는 최대 42시간이다. 2008.9월 의회에서 일일 근로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 최저임금은 2006.9월 512,325 Bs,(238달러 수준)로 책정하였다가 2007.5월 614,790 Bs,(286달러 수준)로 인상한 후 2008.5월 다시 799,23 Bs,F(372달러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중남미지역에서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9.5.1일에 10%를 인상하여 879.15 Bs,F가 되었으며 다시 2009.9.1일 기준으로 10% 인상되어 967,50Bs,F(440달러 수준)로 남미에서 최고의 임금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상기 최저임금은 주재국의 공식환율인 1\$=2,15Bs,F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행환시장(암시장) 환율인 1\$=5~6Bs,F로 환산 시 실질임금은 2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2010.1.8일 기준 1\$=2,15Bs,F를 1\$=2,6Bs,F와 1\$=4,3Bs,F의 이중환율제도를 도입하고 동년 3월에 최저임금을 10% 인상하였으며 하반기 9.1일에 15% 추가인상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급속한 물가상승율을 감안, 추가 인상시기를 5.1일로 당겨 잔여분도 인상한 결과, 현재 최저임금은 1,223,89BS,F이다.

▣ 2004~2010년 기간중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률

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상승률	누적물가상승률
2004	Bs. 321,235	30%	19.2%
2005	Bs. 405,000	26.07%	14.4%
2006	Bs. 512,325	26.5%	17%
2007	Bs. 614,790	20%	22%
2008	Bsf. 799,23	30%	30.9%
2009	Bsf. 967,50	20%	25.1%
2010	Bsf. 1,223,89	25%	-

고용주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 순이익금의 15%를 근로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휴가 보너스 1개월분 지급, 중식 제공, 주택자금 적립 지원, 사회보장세 및 고용보험 지급, 교통비 및 식사 보조비 지급, 직업교육 실시 등 임금 외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매우 많다.

금융상의 제한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외환배분위원회(CADIVI)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며 공식 환율(1\$=2.15 Bs.F)로 외환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시 금액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CADIVI에서 승인에 6~12개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기업들이 채권시장(Parallel Market)에서 비공식환율로 환전, 송금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0년 6월 채권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채권시장을 폐쇄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은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외환 규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모든 외환통제 법규를 관장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외환은 중앙은행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자신이 구득하는 모든 외환을 사전 지정된 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내에서 기업들은 외환구좌를 보유할 수가 없고, 은행의 현지화 대출금리가 30% 이상인데다가 연간 인플레이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현지 금융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현 정부가 물품 수입으로 인한 외화 낭비를 막기 위하여 2008.7월부터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투자나 확장에 대해서는 2~5%의 저리 융자를 실시해 주고 있다.

모든 수입상은 상품 수입용 외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외환관리위원회(CADIVI)의 까다로운 사전 외환 획득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 회수에 대부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출 유망 분야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내 미 생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재국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하여 TV, 냉장고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현지 판매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립 라인을 설치토록 하여 일정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경쟁정책

1992.1월에 제정된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법’에 따라 자유경쟁 촉진 및 보호 감독위원회(일명 Pro-competencia)를 설치하여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가격 담합, 독과점 등의 문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Pro-competencia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차베스 정부가 에너지, 철강,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은행, 식품 유통, 주유소 운영, 민간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등 사실상 모든 경제활동에의 정부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활동 영역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 기타 장벽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개입 과도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환통제, 가격통제 등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보조로 운영되는 대규모 국영기업의 활동증대로 민간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예컨대, 최대 식품도매업체로 등장한 농산물공급공사(CASA)는 2004년의 경우 4.31억 달러의 식품을 수입, 이를 국내에 2.23억 달러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으로 매월 2,400만 달러를 정부에서 보조받았는데, 이는 식품품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국내 민간기업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정부의 각종 경제 수치고 통계에도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안 불안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100명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는 등 신변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8.9.29일자 정치평론지 Foreign Policy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살인률이 67% 증가하였으며, 인구 320만 명의 수도 카라카스는 정부의 공식적 통계로만 연간 10만 명당 살인 사건 건수가 130명(전문가들은 160명 주장)에 달해 악명 높던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제치고 남미의 어느 도시보다도 위험한 도시가 되었다.

국민성

베네수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그란 콜롬비아’의 변방에 위치한 비교적 소외된 지역으로 하층민들이 거주해온 지역이며, 석유개발이후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집단이 많아 온건한 기질보다는 반항적이고 타산적인 기질이 강하다. 특히, 과거 석유개발로 인해 한

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수출입업자나 지상사 직원들의 현지 거래 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부의 부패

부패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나, 특히 사법부의 부패가 심하여 이른바 Judicial Terrorism으로 기업의 명예훼손과 함께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담보물이 압류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1998.8월 차베스 대통령 정부 이후 부패판사 대량퇴출 등 사법부의 일대 개혁이 단행된 바 있으나, 오래된 사법 행태의 개선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 면허증

통상 한국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제출하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등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류 비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관광사증 면제각서가 2007.12.23일부터 발효하여 양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사증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는 신청서류가 복잡할 뿐 아니라 발급기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베네수엘라 금융시장은 2007년 전체 GDP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연 13%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재국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권은 은행금융기구감독원(SUDEBAN)이 갖고 있으며,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전체 대출금의 40%를 농

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고, 총 예금의 3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7월 차베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3위 민간은행인 스페인계 Banco de Venezuela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두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2007년 하반기 민간은행에 예치된 공공자금의 국영은행으로의 이관 조치와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표면화된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마침내 베네수엘라는 정부는 2009.5월에 Banco de Venezuela를 10억 5천만 달러에 스페인계 Santander 그룹에 지불하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9.11월에 민간계 은행인 (Banpro, Confederado, Canarias, Bolívar Banco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출처분명의 자금을 활용했다는 명분으로 국유화를 단행하였으며 2010.6월에는 Banco Federal을 국유화 조치하였다.

■ 개선 실적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 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브라질

2009년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한 53억 1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한 37억 4천만 달러로서, 우리나라는 브라질에 대해 15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1995년부터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동관세(TEC: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 Mercosur의 TEC는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9,783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 품목에 따라 0~35%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TEC 예외 품목으로 93개 품목을 2011.12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Mercosur에서 허용되어 있다.

브라질의 평균관세율은 1990년 43%에서 1997년 12%로 하락한 이래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브라질의 평균 적용관세율은 11.5%이다. 2009.12월 브라질은 여타 Mercosur 회원국과 함께 낙농, 섬유, 가방 등 수백 개 품목에 대해 TEC 관세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품목들이 WTO 양허관세율 수준까지 인상되었다.

브라질은 품목분류로서 남미공동시장의 공통 품목분류인 NCM(Mercosur Common Nomenclature)을 사용하고 있다. NCM에 의한 코드

의 여덟 자리 숫자 중 처음 여섯 자리는 HS(Harmonized System)코드와 동일하다.

복잡한 세금체계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II) 외에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공산품세(IPI)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인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 지불한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60%까지 적용한다.

상품유통·서비스세(ICMS)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국산제품과 수입제품 모두에 적용된다. 수입제품의 경우 CIF+관세+공산품세가 적용된 가격에 부과된다. ICMS는 공산품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ICMS 세율은 주별로 12~18%이다. 주 경계 밖으로 상품이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 주정부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상품이나 건설 서비스, 광업, 전기에너지, 액체 및 가스연료, 국내생산기계와 장비제품에는 ICMS가 면제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 세율은 9.25%로 CIF+관세+공산품세+상품유통서비스세를 합산한 가격에 부과된다.

이렇게 복잡한 세금체계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증방식의 세금 계산과 맞물려 수입가격이 거의 배로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 브라질 관세 체계(예)

세금명	세금산출방식	세액
수입관세(II)	제품가격 CIF X 관세율14%=\$100 X 0.14=\$14	\$14
공산품세(PI)	(CIF+II) X 공산품세율15%=(100+14) X 0.15=\$17.1	\$17.1
상품유통·서비스세 (ICMS)	$[(CIF+II+PI)/(1-ICMS세율18\%)] \times ICMS \text{ 세율 } 18\%$ $= [(\$100+\$14+\$17.1)/(1-0.18)] \times 0.18=\28.78	\$28.78
사회보장세 (Pis/Cofins)	(CIF+II+PI+ICMS) X 사회보장세율 9.25% $= (\$100+\$14+\$17.1+\$28.78) \times 0.0925$	\$14.79
	세액 합계	\$74.67

※ 제품 가격(CIF기준)을 100달러로, 관세(II)율을 14%로, 공산품세(PI)율을 15%, 상품유통 서비스세(ICMS)율을 18%로 각각 가정하고, 사회보장세(Pis/Cofins)율 9.25%를 적용하여 산출

통관절차상의 장벽

(1) 수입절차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개발상공부의 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에 등록을 해야만,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국 등록은 최소자본금 구비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수입업자에게 다소 번거로운 절차이다. 다만, 2007년부터 SISCOMEX가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감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SISCOMEX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Invoice 발송
- 2) 수입업자가 남미공동시장 공동상품코드(NCM: Common Mercosur Nomenclature)에 맞춰 수입상품 분류
- 3) 무역자동화 시스템(SISCOMEX)을 통해 수입라이선스 신청
- 4)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와 상업송장을 발송(수입허가가 요구될 경우 수입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 선적할 수 없음)
- 5)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통관업자는 SISCOMEX를 통해 수입신고를 이행하고,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내국세와 통관비용을 지불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들이 모든 통관절차와 세금 납부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브라질 세관은 수입되는 많은 제품에 대해 under-valued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입규제 품목

대부분의 상품은 자동 수입 허가규정에 해당하지만 농산물, 의료 및 군수물자 등 일부 품목은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기류나 방사선 장비의 수입은 국방부, 의약품 및 화장품, 식품 등은 보건부, 일부 음료수는 농업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보건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ANVISA)의 의약품 수입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새로운 제품이 등록을 마치는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또한, 외국 혈액제제와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헌옷, 중고 타이어 등 중고 소비재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고용창출, 수출증대와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외로부터의 플랜트 이전의 경우와 동종의 기계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대체될 수 없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관련 중고기계 및 설비의 수입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허가 절차나 입증서류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다.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중고기계와 장비수입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재생중고기계에 대한관세율은 신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수입제품의 관세, 환율, 영사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벌칙과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 자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품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쿼터 대상 품목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생산제품 및 FTA 체결지역 상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요구되는 품목(중고기계 및 장비)
- 모든 중고 상품
- 관세감면 혜택 대상 품목
- UN이 규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 해당 관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제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브라질은 GATT 및 WTO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1994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피해 규제조치증가는 WTO 체제 발족 이후 브라질도 전통적인 수입규제수단에 의한 국내 산업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의식, WTO가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브라질은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9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중 92%인 182건이 반덤핑, 5%인 10건이 상계관세, 3%인 5건이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조치였다.

최근 5년간 수입규제 조치 신규 건수를 보면, 2005년 11건, 2006년 8건, 2007년 20건, 2008년 18건, 2009년 19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47건으로 제일 많고, 미국 20건, 인도 14건, 멕시코 7건, 러시아 7건, EU 7건 등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반덤핑으로서 6건을 조사하여, 그중 2건에 대해 규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이 3건이나 이루어져, 최근 우리의 對브라질 수출 급증 추세와 맞물려 우려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구분		업종	품 목	조사착수	결 과
2009년 까지	1	섬유	인조합성사	1993.11월	1994.12월, 무혐의 판정
	2	섬유	나일론6번사	2000.1월	2001.6월, 5.2%덤핑판정, 2006.6월 종료
	3	철강	스테인리스강관	2000.6월	2001.5월, 무혐의 판정
	4	화학	PVC	2001.11월	2002.11월, 무혐의 판정
	5	섬유	폴리에스테레진	2004.3월	2004.7월, 무혐의 판정
	6	화학	PVC	2007.9월	2008.8월, 1개 업체는 무혐의 판정, 1개 업체는 2.7% 덤핑판정
2010년	7	화학	SBR합성고무	2010.6월	조사 중
	8	철강	평판압연	2010.8월	조사 중
	9	화학	NBR합성고무	2010.10월	조사 중

■ 표준 및 검역 등 기술적 장벽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한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아직 INMETRO가 우리나라 인증기관과는 MRA를 체결한 사례는 없다. INMETRO는 장난감에 대해서 2009.7월부터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RA에 의해 인정된 실험기관이 실시한 인증 내용도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종전에는 브라질 내의 실험만을 인정해 왔다.

강제인증은 제작과정이나, 사용·유통과정에서 개인안전이나, 공중위생,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81개 품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강제인증 요구 품목 (2010.7월 기준)

강철봉 및 강철사	교류 형 안전장치(stabilizer) - 250V, 3KVA 이하
전기 음수기	소화기 -제조 및 수입 과정
아동용 자전거 안전 여부 검사	디젤 오일용 필터
장난감 안전 여부검사	안전생량
PVC 케이블 (0.6 /1kV)	퓨즈
PVC 케이블 (750V 이하)	가정용 아날로그 방식 전류 차단기 (440V 이하)
모토 사이클 용 헬멧	우유 (이유식) 병
버스 차체 규격 검사	가정용 LPG 가스용 PVC 호스
차량용 메탄가스 저장용 철제실린더 (봉합하지 않은 모델)	가정용 아날로그 식 플러그 및 콘센트
차량용 고압 메탄가스 저장용 실린더	승용차, 트럭, 버스용 타이어 신제품
주유소용 연료 주입 시스템 부속품	모토 사이클용 타이어 신제품
차량용 천연가스 주입 시스템 부속품	식수 품질 개선 장비
PVC로 감싼 컨덕터 (conductor) (전압: 450/750V)	남성용 콘돔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형광등용 전자 스타터(Starter)-교류식
컨테이너 고정 장치 설치 서비스	튜브 형광등용 스타터(Starter)
차축(Vehicular axle) 제조과정 검사	철제 LPG 가스통
알코올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LPG 가스 압력 조절기(4 kg/h 이하)
안전생량 육로 수송용 포장 용기	주유소용 지하 연료 저장 탱크
위험물 육로 수송용 포장용기	비금속 소재 차량 연료 지하 수송용 튜브
폭발 위험 환경용 전기 기기	컨테이너 수송용 차량 제작 및 설치
전기의료기기	차량용 안전유리
위험 물질 육로 수송용 컨테이너	차량용 아동안전 장비
PROVEM 자동차 강제인증 프로그램	철제 튜브 (액체 전도(傳導)시 사용되는 탄소)
플라스틱 의자	플렉시블(Flexible) 철제 연결 부품 -액체 전도(傳導)시 사용
전자제품용 고무(EPR) 피복 케이블- 500V 이하	전자제품용 PVC 피복 케이블 - 500V 이하
컨테이너 고정 장치제조과정	CSP 피복 전선 - 300V 까지
플러그용 어댑터	산업용 헬멧
위험물 및 일반화물 수송 차량용 부속(king pin)	일반용 케이블
공갈 젓꼭지(노리게 젓꼭지)	천연고무/합성고무 소재 수술용 장갑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장갑
Fifth Wheel(위험물 수송 차량용)	

한편, 브라질은 1998년부터 특정 수입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생관리청(ANVISA)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동식물, 육류, 어류, 낙농품, 가공식품 및 음료수 등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용도 밀, 토마토 씨앗 등 일부 식물류에 대하여는 수입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다.

■ 환경관련 규제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 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12월 통과되어 2005.1월 공포된 법률(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에는 환경부 및 CETESB(환경부산하 환경위생기술청)가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품목별 장벽

정보화제품

브라질통신규제청(ANATEL)은 부피가 크거나 운반비용이 엄청난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화 제품에 대해 브라질 내 시험소의 인증을 거쳐야만 브라질 내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 내” 인증 절차는 브라질로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 구매 시 브라질 기업 생산제품에는 세금 감면 등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에 유사상품이 존재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NATEL이 강제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 ① 일반전화 단말기, 케이블, 휴대 전화기 단말기 등
- ② 통신용장비의 일부로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 ③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 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석유제품

석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광물에너지부 및 국가에너지국의 통제와 석유공사(PETROBRAS)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용구 및 가공식품 등

수입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조용구, 화장품, 가공식품은 브라질 정부로부터 제품 등록을 승인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의약품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허가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보건부 산하기관인 ANVISA(위생관리국)이며, 허가서 취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 對브라질 시장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VISA는 연방법(법률10,742/2003)에 따라, 의료용구를 등록하려는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시장 출시 예정가격 등 제품경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수입규제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청량음료, 가연물질, 항공기, 위험물질, 살충제 기타농약, 애완동물용 식품도 관계부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 농림식품부(MAPA)는 “포도주 또는 포도주 파생제품” 및 “음료 또는 식초류”의 수입에 대해 “원산지 및 시험 증명서”의 신규 제출 제도를 2010.5월 도입하고, 2010.11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 (Korea Advanced Food Research Institute Busan Branch), 한국식품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주)한국분석

기술연구원(Korea Analytical Technique Research Institute Co. Ltd),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Korea Health Supplements Institute) 5개 기관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브라질 농림식품부에 통보하였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브라질은 수출보조금, 수출금융 및 조세감면을 통해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FINAME 프로그램의 경우, 브라질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자본재 금융지원(capital financing)을 실시하고 있다. 그 주목적은 수입 장비대신 국산장비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2007.10월, 브라질 정부는 법률 11,529호에 의해, 해알화 강세로 타격 받는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 조치를 부활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특정 산업(섬유, 가구, 장식용 석재, 목재, 가죽, 중장비·농업기계,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세(PIS/COFINS)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동 법률은 이러한 조치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전 수출업체로 확대하였다. 9.25%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 수입의 70% 이상이 수출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된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동 의무 수출비율이 60%로 낮아졌다.

2005년 도입된 IT수출지원프로그램(REPES)에 의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을 수출하는 브라질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연간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때에는 수입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수출기업 자본재 지원 프로그램(RECAP)에 의해서, 3년 이상의 기간 중 수출비중이 총소득의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입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역시 감면받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브라질은 베른협약, 워싱턴협약(Washington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등에 서명한 바 있다. 2001년 공포된 법률10,196호는 의약품의 특허 신청에 앞서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공포된 법률 제10603호는 수의약품, 비료, 농약 및 관련 특허 상품이 등록 후 2년 내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등록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브라질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취약한 측면이 있다.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5월에 발효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브라질은 아직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 (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브라질 기업과 밀접한 연계를 맺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는 IT제품 이외 정부조달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무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의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Buy National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 (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 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웠다면,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도로 및 철로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지난 2004.12월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나, PPP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은 늘어나고 있다.

■ 서비스 장벽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음향 및 영상서비스

브라질 정부는 2002년 영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진흥위원회(Ancine)를 설립하여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영화와 외국인에 의한 제작물 및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는 한편, 브라질 내 배급자에 대해서는 동 원천 징수액의 11%를 영화산업발전기금(CONDECINE)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국내 영화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산자의 소득세액 중 70%가 브라질 영화사와의 공동 제작에 사용된다면 해당 배급자의 영화산업발전기금 납부는 면제된다.

브라질에서는 모든 영화 및 TV 프로그램 필름이 국내에서 인쇄되어야 한다. 또한, 영화 및 텔레비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컬러 프린터 수입은 금지되고 있다. 국내 영화의 스크린 쿼터도 유지되고 있다.

방송

외국인의 브라질 유선사업 참여시 49% 이내로 지분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회사는 브라질 내에 본부를 갖고 과거 10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한다. 브라질은 텔레비전(non-cable) 분야 등에 외국인 투자 참여를 금지하여 왔으나 2002년에 법률 제10,610호를 제정,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TV 방송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브라질의 통신 분야는 외국인 참여 지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이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1998.7월에는 국영전화회사(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일반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조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조만간 큰 개

선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아울러 고정회선 분야 등에 있어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의 경우 브라질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청(ANATEL)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전화 접속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96년에 브라질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였다.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의 합작형태로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하였다.

재보험은 1939년 이래 브라질 정부 소유의 재보험공사(IRB)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2007.1월, 보완법률(Complementary Law 126)의해 재보험에 대한 정부 독점을 해제하였다. 동 법률은 브라질 내 재보험회사의 종류를 ① 브라질 내에 등록사무소가 있는 국내(local)사업자, ② 해외에 등록사무소가 있고 브라질 내에 대리사무소가 있는 인정(admitted)사업자, ③ 브라질 내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eventual)사업자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재보험에 대한 정부독점이 해제됨에 따라, IRB는 국내사업자의 하나로서 남게 되었으며, 관련 행정 규제사항은 국가사보험협의회(National Private Insurance Council)가 담당하게 되었다.

브라질은 은행, 증권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1997년에 WTO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헌법은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비보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사안별로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에 8개 지방정부 소유은행의 민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는 기존 은행의 확장이나 지분매입을 통해서만 허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한 후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 투자 장벽

1995년 개정 헌법은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시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운송업, 공공유틸리티, 미디어 및 기타 전략 산업분야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는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근로자 권익 보호에 편중된 노동 관련 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내용 등을 일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

분 야	내 용	기 타
지하자원, 광산, 광물자원 및 수력 에너지의 개발·이용	투자를 위해서는 광업에너지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브라질 기업은 외국인의 통제 하에 있다 하더라도 광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광산업은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허용됨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와 개발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 분야임.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양허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허용
항공·우주산업	헌법상 외국인투자 금지	

분 야	내 용	기 타
핵에너지 개발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권 조항(제21조 23항)에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투자 금지
연안 수상 운송업	브라질에서 건조되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이상을 브라질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함	해당기업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항만 관리청의 사전허가 필요
TV, 라디오 방송, 신문사, 잡지 또는 기타 발행물 등 언론 분야	소유나 경영에 대한 헌법(제222조 1항)상의 제약이 있음. (신문, 잡지 등) 언론사와 라디오방송사 자본과 의결주식의 최소 70%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브라질 출생자 또는 10년 이상된 브라질 귀화인에 속해야 함.	즉 외국인투자는 총자본과 총 의결주의 30%까지만 가능하되, 브라질 현지 법인을 통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사의 경영과 출판물 제작에 대한 경영관리직은 브라질인 또는 귀화한지 10년 이상 된 사람만 맡을 수 있음
케이블 TV		외자는 의결권의 49%까지만 허용
농목업, 삼림 소유 및 국경지대	외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님. 그러나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여 관련 토지를 소유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련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음. 법률 제 5709호(1971.10.7일)	이 규정은 외국인, 외국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데 기업 간 합병이나 투자자의 변동 및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
국내 항공운송업	제한규정	국내 항공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의결권주식의 25% 이상을 넘어서는 안됨. 임원의 3분의2 이상이 브라질 국민이어야 함
육상 화물 운송	육상화물운송회사에 대한 외자참여는 투표권 있는 자본의 1/5을 넘어서는 안 됨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함
금융업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함.	브라질 은행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은 브라질 은행과 금융기관의 의결주(voting shares)의 30%까지만 소유가 가능함(법률 제4131호/1962, 제 51조)
우편·전보서비스	헌법에 연방정부의 독점 사업으로 규정 (헌법 제21조)	
보험	보험분야는 투자금지 분야였으나 1996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가됨.	보험감독원(SUSEPE)의 사전허가 필요. 주요 미국보험회사들이 J/V형태로 브라질의 보험업계에 진출함
보건서비스 분야	헌법에서 외국자본 이나 외국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제99조 3항)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투자실행상의 제약 요인

(1)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제한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 및 국경지역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지역 토지 취득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의무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져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 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금융 및 외환

과실송금은 실질적으로 무제한적이고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브라질 국가통화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사치 및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연 8%까지 대외이익금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브라질은 외국자본의 대외과실 송금 시 당해 이익금에 대해 기지급한 법인세 이외에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 추가소득세는 최근 3년간의 대외 과실 송금액(소득세 및 송금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송금액 기준)이 브라질 중앙은행에 등록된 투자금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소정의 가산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현지 외환 구좌개설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환은 90일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하여야 한다.

세제상의 제한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사회투자기금(FINSOCIAL), 순이윤에 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 기타 장벽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지사 설립대신에 현지법인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는 지사 설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점자 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보통 3~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등 지점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점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장기체류를 위한 상사 주재원의 비자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즉, 상사주재원의 경우 일단 임시 체류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브라질 노동부의 체류허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 허가서를 첨부하여 주한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통상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2008년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5억 8천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9억 1천만 달러이었다. 2002년 경제위기로 침체에 빠졌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3년부터 급속히 회복되어 2003~2008년간 연속 7~9%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 2009년도에는 -4.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교역은 수출이 14.5% 감소한 4.95억 불, 수입이 26.5% 감소한 6.72억 불을 기록하였다. 2010년도 들어서는 국제 곡물가 상승, 밀접한 관계에 있는 브라질 경제 호황 등의 영향으로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 외에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창설된 MERCOSUR는 회원국들(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2009.11월 역내 교역의 99%가 무관세로 이뤄지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1.1일부터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율은 0~20%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MERCOSUR 회원국 간 의견조율이 어려워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최대 3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995.1.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

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9.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MERCOSUR는 2009.12월에 낙농 제품 28%, 의류 18%, 가죽 가방에 35%의 관세율 인상을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주로 원자재, 중간자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일수록 관세가 증가하도록 이루어져 있으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상 주요 품목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동물 및 관련 제품 : 2.5%
- 비료 제품 : 3%
- 무기 화학약품 : 5%
- 기타 화학약품 : 10.2%
- 종이 및 종이제품 : 14%
- 플라스틱 : 15%
- 서적 및 인쇄물 : 6%
- 의류 및 액세서리 : 20%
- 가구, 매트리스, 쿠션 : 18%
- 장난감 : 20%

※ 일부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6%, 신발류에 대한 관세율은 35%로 상향 조정 (경제생산부 Resolution 476/2008)

※ 2009년도 관세율 평균은 16%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CT)제품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의 적용이 면제되며,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의 적용이 면제되는 민감 품목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10.12.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MERCOSUR 공동시장위원회는 아르헨티나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본재 및 신기술 제품 710개 품목에 대

해 2010.12.31일까지 수입 관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중고 자본재의 수입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2008.1.1일부로 금지되었다.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2010.12.31일까지 별도의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대외공동관세의 예외품목 리스트에는 우리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류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20%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칠레,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회원국 등에게 양자적 또는 MERCOSUR 차원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 정책

아르헨티나의 수입관리 제도는 수입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및 규제)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등 자격제한 없이 수출입업자 등록소에 등록된 납세자면 누구든지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22415/81(관세법)에 따르고 있으며 수입 관련 주무부처는 산업·관광부 산업·통상·중소기업 차관실이다. 실무 담당기관은 관세청이며 행정시행령 599/76과 695/77에 의거 정책결정을 제외한 관세법의 적용과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1.10월 법령 제2248/91을 통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수입금지, 수입제한, 수입할당 등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대폭 철폐하였으나, 2001.12월 디폴트 발생 이후 재정 균형, 무역 수지 강화 및 외환보유고 확보 등을 위해 수입규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수입승인 제도를 도입(MEOSP 17/99)하여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수입인가장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수입승인 제도의 목적은 세관이 언더 인보이싱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판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승인의 주체는 산업·관광부 산업·통상·중소기업 차관실 산하 무역정책차관보이다. 수입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보통 48시간이며, 특별조사가 필요한 민감품목의 경우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 측에서 10일 이내에 아무런 통

보가 없을 경우, 자동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동 인가장은 승인일자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자동수입승인 제도의 예외는 FOB 800 미 달러 이하 수입거래, 우편수입, 샘플수입, 자동차산업체제하의 수입, “Science, Art, Technical and Human Health”(법률 23,871호 제17 조)상의 수입 등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월 무역정책차관보실 규정 16/2008을 통해 자동수입승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1,20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소비재의 50%에 해당된다.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수입승인 제도보다 더 강력한 규제 방법인 사전수입허가제도(산업담당차관실 Resolution 653/99를 통해 1999년부터 운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4.7월에 세탁기(8450.11.00), 2004.3월에 카페트(5703.30.00), 2005.8월에 비스포츠용 신발 및 장난감, 2006.8월에 모터사이클(경제부 Resolution 689), 2007.4월에 축구공(경제부 Resolution 217), 2007.8월에 핸드백 등가죽 제품 및 신발 재료(경제부 Resolution 47/2007 및 61/2007)를 사전수입승인 대상 품목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적용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하여 2009.3월에 침구류, 농기계, 목재가구 및 냉방장치(생산부 Resolution 61), 2009.4월에는 금속제품, 저가 섬유제품 등(생산부 Resolution 123)을 포함시켰다. 2009.5월 생산부 고시 165로 나사 등 제품, 2009.8월 생산부 고시 339로 자동차 부품이 허가 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현재 약 360종의 관세율표상 품목에 수입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허가에 평균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 시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제세공과금으로는 관세 외에도 통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국세 등이 있으며, 수입차량의 경우 판매가의 7%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기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CIF 가격기준으로 0.5%의 통계세가 부과되나 남미공동시장 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계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부과되며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통계세(0.5%)]에 대해 21% 또는 10.5% 및 추가 부가가치세 10% 또는 5.5%를 부과한다.

소비재 수입에 대해서는 3%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류, 담배, 음료수 등 대부분의 소비재에 대해서는 최대 60%에 이르는 내국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2009.11.5일에 가전제품세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주요 가전제품에 부여되던 내국세 면제 혜택이 일부 품목(에어컨, 휴대전화, 컴퓨터, TV, 홈시어터 세트, 내비게이션 장치, 자동응답기, 음향장치, 카메라, 영상재생장치, 라디오, 전기스토브, 헤어 드라이어, 다리미 및 여타 가정용 전열기)에 대해 폐지되고 20.48%의 내국세가 부과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되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성격에 따라 Canal Verde(녹색 채널 : 즉시통과), Canal Naranja(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1~2일 소요), Canal Rojo(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의 3가지 과정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녹색 채널 및 주황색 채널의 경우, 수입 물품은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게 되지만 필요한 경우 아르헨티나 세관은 이러한 물품이 수입업자의 창고로 운송된 후에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적색 채널에는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과 공탁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예치금을 공탁하는 방식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어 있을 때 적용되며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방지를 위한 특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치금의 규모는 세관당국이 설정한 최저수입가격과 신고가격간의 차액 만큼이며, 현금 예치 또는 은행 보증서 공탁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

연방세입청(AFIP)은 송장조작을 통한 관세 등 세금포탈 행위 근절을 위해, 1996년 수입자유화의 일환으로 폐지했던 최저 수입가격 제도를

2001.5월부터 재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된 수입가격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한 최저 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토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7.7일 AFIP General Resolution 1907/2005 및 1908/2005를 통해 최저수입가격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입물품의 FOB 가격이 최저수입가격의 80% 이하인 경우 과세 조건을 보다 엄격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대 21%까지, 소득세는 최대 11%까지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유예 및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도 현금, 은행 담보 및 공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수입규제강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2008.10.17일 관세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가전제품 20개, 섬유류 50개, 타이어, 모터사이클 부품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가격을 현 국제시세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다양한 범주의 수입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유제품, 가전제품, 신발류, 장난감 등 종류별로 통관 포인트를 지정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 신고 심사 강화

아르헨티나 관세청은 2007.8.24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의 허위가격 신고(under-billing) 등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정한 그룹 4에 속하는 국가들(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인도, 북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제품이 아르헨티나 세관이 정한 기준가격 또는 동종 수입품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관은 추가 증빙서류 접수, 원산지 관련기관 접촉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 기간 동안 통관이 보류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아르헨티나 관세법은 모든 수입물품의 원산지 명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1개국이어야 하고, 2~3개국 개입으로 변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는 對아르헨티나 수출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 L/C상에 첨부조건이 명시된 경우 또는 섬유제품, 신발류 등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인증 및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들 간에 거래되는 자동차, 버스,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이 MERCOSUR 협정에 따라 역내제품으로 간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60% 이상이 역내산 부품으로 충당되었다는 원산지 규정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 규제

현행 수입금지 품목에는 중고 자동차 (Decree 110/1999), 중고 모터사이클(경제부 Resolution 790/1992), 중고 장비 및 부품(Resolution 89/2003), 타이어, 의류 및 액세서리(MERCOSUR Tariff Codes 4012, 20.00), 유해 잔여물(Law 24051), 위험물질(Resolution 750/2000, 845/2000, 182/1999 등), 1880-1900 Mhz 대역의 전화 단말기(Resolution SC 1994/1999), 비가공 목화(Resolution 208/2003)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 및 보건제품 수입 시는 수입업자 상품등록 및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제품 수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취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선진국 제품의 경우 1년 미만이지만, 한국 등 여타국가 제품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농수산물, 식품, 화장품 및 무기류 등 몇몇 품목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나 수출국의 품질, 규격 및 위생수준이 아르헨티나보다 높거나 엄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며 자동으로 승인이 부여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증가 억제를 위해 2001.1월 도입된 최저수입가격 제도의 적용 품목 및 대상 국가를 2007.8월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직후인 2008.10월에는 관세청 고시 90/2008 및 91/2008을 통해 최저수입가격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140개 수입물품을 포함시키는 한편, 적용 품목 및 국가 목록을 확대 수정함으로써 수입규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국업체의 보호를 위해 뚜렷한 덤핑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입물량이 증대된 경우 일단 조사에 착수하여 수입을 규제시키는 경우가 많다. 2004년도에 개시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PET chip에 대한 조사의 경우,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한 결과, 가격인상 및 무혐의 판정이라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2009.11월 냉연강판(규제기간: 2008.1.10~2012.1.10일)과 아연철판(2008.5.25일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는 2008.8.22일에 종료되었다. 2010.2.16일에는 국산 에어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결 사례

- 1994.8.11일 한국산 컬러 TV(14인치, 20인치) 반덤핑 판정, 관세 부과
- 1996.9.3일 한국 가전 3사의 전자레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
- 1998.1.20일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 조사 실시
- 2000.6.22일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에 대해 향후 3년간(2000.6.23~2003.6.22일) FOB 기준으로 kg당 최저가격을 9.5달러로 정하고 이하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덤핑세율(나일론: 97.78%, 폴리에스타: 46.075%) 적용
- 2001.5.31일 재생식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고 향후 5년간 U\$8.73/kg의 최저 수입가격 적용
- 2001.6.02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직물에 향후 5년간 최저가격 U\$8.73/kg 판정
- 2001.6.21일 1,000cc 소형오토바이 및 스쿠터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 향후 3년간 최저 수입 관세 부과기로 최종 결정
- 2002.12.5일 일화용 주사기 덤핑 무혐의 판정

- 2003.11.11일 냉연강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60.46%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현재 적용 중)
- 2003.5.28일 아연철판제품 반덤핑 관세 결정(CIF가격 기준 49.67%의 고율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현재 적용 중)
- 2002.11.15일 폴리에스터 화이버에 대한 반덤핑 판정(3년간 U\$1.85/kg의 최저수입가격 부과)
- 2005.8.22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판정하였으나, 한국의 주요 5개 업체와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가격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가격인상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들에게 특혜 부여
- 2005.9.28일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무혐의 판정
- 2008.1.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2008.1.10일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연장 (2012.1.12일까지)
- 2008.4.2일 한국철강협회로부터 냉연강판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측의 반덤핑 조치 관련 대응 불요 입장 접수
- 2008.5.29일 아연철판제품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2008.5.25일 재심 개시, 재심기간 종료 시까지 규제 유효)
- 2008.8.22일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규제기간 종료

■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11275호(Merchandise Marketing Act), 법률 제22802호(Commercial Loyalty Act)에 의거하여 검사, 라벨링 및 인증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관광부, 산업·통상·중소기업차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RAM(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on)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표준화 담당 기관이고, OOA(Organismo Argentino de Acreditacion)는 인증기관이다. 표준규격 관련 모든 제품은 IRAM 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각 제품별 규격 인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표준규격을 비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안전·인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승인된 연구기관에서의 규격 및 안전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정 지침이 수시로 변하므로 규격 및

안전 검사 대상 품목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사기관은 INTI(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Industrial)로서, 표준/규격의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라벨 명시내용은 원산지, 수량, 질, 혼합율(필요시), 규격 및 중량(미터법) 등이며 제품에 따라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제품은 사용전력표시(Ac, 1. 3 Phase, 2, 4wires, 50 Cycle, 220/380Volt)가 요구되며, 기계류는 금속라벨판을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볼트를 사용하여 영구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관련, 1993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Ley 24240)은 섬유, 가전제품 대해 라벨부착, 품질표시, 안전표시, 보증서의 첨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내 소비자 보호정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 환경관련 규제

환경에 유해한 품목 등(예: 독극물, 폭발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품목 내지 허가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부처의 수입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식품 내지 약품수입 시 환경관련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식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유해폐기물의 생산, 처리 수입 등에 관한 법률(Ley 24051) 등 환경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전무했으나, 최근에 환경관련 인식이 제고되면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입할당제가 가장 큰 비관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양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 시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양자 협약을 통해 MERCOSUR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당초 MERCOSUR 회원국들은 2000년까지 역내 통합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자동차시장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회원국간 이해가 상충(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갈등)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되고, 회원국 간 양자 간 합의에 의해 교역을 규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2.11월 및 2003.5월에 자동차산업 공동 정책에 합의, 대외공동관세를 완제품에 대해 35%, 자동차 부품에 대해 14%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경우, 2005년부터 수입과 수출의 비율이 2.6: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관세로 교역되나, 동 범위를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브라질의 對아르헨티나 자동차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2006.6월 수입과 수출 비율을 기존의 2.61에서 2006.7~2007.6월간에는 2.1:1로 2007.7~2008.6월까지 1.95:1로 축소기로 합의하였다. 1.95:1 비율에 대한 유효기간은 2013.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2013년 이후에는 양국 간 교역이 자유화될 예정이다.

섬유, 신발 및 장난감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섬유, 장난감, 운동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여, 섬유 및 의류, 고내구성 운동화, 장난감에 대해 최고 35%까지의 종량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2010.12.31일까지 유효하다.

전기·전자제품

전기공업제품 표준규격제도(IRAM)를 강화시켜 모든 수입 전기, 전자제품들은 공업규격마크를 획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물·식품·의료품

농산물 및 보건 관련 제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품 코드(CAA: Codigo Alimentario Argentino)에 따라 위생, 품질, 포장, 운송 등에 관한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방농식품품질관리원(SENASA), 연방식품관리원(INVAL), 연방포도주관리원(INV) 등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아르헨티나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주장하는 케인즈 그룹의 회원으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보조금 지원 제도는 없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대부분 미주개발은행(IDB)의 회원국 기업에게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봉쇄되어 있었으나, 2005년 우리나라의 IDB가입으로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어져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국산품이 수입제품과 가격 및 품질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경쟁 시, 아르헨티나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사업권 제도”가 2001년 법률 제25,551호로 법제화(실업률 축소 및 내국기업 활동 촉진이 주목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품의 조달 가격이 동종 수입물품의 입찰가격보다 5~7%이상 높지 않을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긴급경제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 시 공개입찰 대신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긴급경제조치법의 시효를 매년 연장해 왔으며 현 시효는 2009.12.31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및 특허권 보호는 미약한 수준이며, 2004년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저작권 및 특허권 관련 요주의국가 목록에 아르헨티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특허권 및 제조공정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약하여, 1997.4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로열티 관련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품 중 113개 품목에 대해 GSP 혜택을 중지하였다가 2002.8월에 이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저작권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1999년에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저작권 협약과 WIPO 공연 및 음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관련 법규를 구비하였으나 집행이 미약한 실정이다.

■ 서비스 장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경제개혁을 통해 서비스 시장장벽을 대부분 해소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비보험 금융서비스 업체에게 내국인 대우 및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WTO에 공약하였다. 단, 외국인 소유 은행지점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에 제약을 두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상황 이래, 해외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건설의 경우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까지 BOT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다. 즉, 20~30년간 통행료 징수권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아르헨티나 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 공사수주 가능성이 저조해 관련 장비의 계속적인 활용이 곤란한 점 및 건설장비 투입, 전문인력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수주 받을 필요가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아르헨티나 건설진출을 위해서는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회사와 합작 또는 국제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장벽

투자진출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1989.11월)하여 외국인 투자등록소(Registro de Inversiones de Capitales Extranjeros)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제한 또는 금지부문으로 핵에너지 개발, 우주산업, 방위산업, TV방송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이윤 재투자 의무, 내

국 기업화 등의 기업형태의 전환 의무도 없다. 내국기업의 주식 취득도 100%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 진출 시에는 현행법에 의해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나, 주식투자에는 사전허가가 필요 없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투자절차상의 제약은 없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본사의 재무제표 및 타국 지사보유 여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국산의무화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는 국산화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자동차공업법에 의무비율 규정이 있다.

- A TYPE(승용차) : 40%까지
- B TYPE(픽업) : 42%까지
- C TYPE(트럭) : 규정 없음

2000.8월부터 시행 중인 MERCOSUR 공동자동차정책에 의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입대상 차량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은 자동차 30%, 트럭 25%이며, 제3국산 부품은 자동차 40%, 트럭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업진흥법에 의한 각종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업진흥지역내의 생산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슈퍼마켓을 개점할 경우 규제를 받는다. 상점규모가 2,500㎡ 이상일 경우 사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요구되던 정부의 사전허가제는 폐지되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취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상의 제한

아르헨티나 통화 당국은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를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해지했으며, 수출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대금 선납을 허용하고 있다.

2005.7.11일 발표된 중앙은행 규칙(A4385)에 따라 소비재 및 완제품 수입대금 지불을 위한 달러화 매입은 수입품의 국내 도착 이전 또는 도착 이후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상들은 잠정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외환을 구입,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환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다.

고금리를 노린 해외자본의 초단기 일회성투기를 막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유입되는 해외펀드는 180일간의 최소투자기간 후에야 해외반출이 가능해진다.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도입, 금융소득이 아닌 모든 당좌계좌(Cuenta Corriente)의 입출금액에 대해 0.6%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거래세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며,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가 금융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2004년부터 입금시 금융거래세는 0.4%로 하향 조정(출금 시는 0.6% 유지) 되었으며, 축소 및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제상의 제한

아르헨티나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므로 우리 진출기업의 지상사 직원 및 수산화사 선원의 경우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수산화사 선원의 경우 본봉의 50%(본인+회사부담)를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사 및 선원들은 1~2년간 단기 체류하고 있으므로 기 납부한 국민연

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아르헨티나와 체결 추진 중이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수감소 및 아르헨티나의 對한 투자가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경쟁정책

아르헨티나의 주요 공산품의 경우 독과점이 많으며, 특히 유통망의 경우 외국대형 유통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나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으로는 법률 제25,156호와 대통령령Decreto 1019/1999가 있다.

■ 기타 장벽

2003.11.28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내무부 행정령 제362호(2003.11.26일)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지사원 등이 발급 받는 거주비자가 있으며 통상 비자 신청시 아르헨티나 기업의 초청장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주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은 1년이며, 1년 이후는 매년 이민청으로부터 DNI(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신분증명서)의 갱신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신청시에는 제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나 1년 단위의 연장 절차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 개선실적

아르헨티나의 통상장벽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에콰도르

2009년 한국의 對에콰도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438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1% 감소한 10백만 달러로서 428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542백만 달러, 수입은 27% 증가한 8.7백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감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오고 있다.

2009년도 한국의 에콰도르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은 주재국 정부가 2009.1.21일 국제수지 개선을 명분으로 수입제재(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여 600여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제 적용 또는 수입관세를 인상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10.7.23일 에콰도르 대외통상위원회(COMEXI)는 2009.1.21일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입규제(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한 바, 수입규제조치 종료로 우리나라의 대에콰도르 주요 수출상품인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핸드폰 등은 수입규제조치 이전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섬유, 의류 및 신발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규제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혼합관세를 부과기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2010.7.30일 에콰도르 정부는 추가로 일부 가전제품(TV 및 LCD), 핸드폰, 여행객화물에 대해 혼합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수입규제조치 해제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일반적으로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최고기구는 관련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대외통상위원회(COMEXI)로서 FTA,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Safeguard 등 무역전반에 걸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안데스 공동체는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회원국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4월 탈퇴하였으며, 칠레는 2006. 9월 준회원국으로 가입)로 회원국 상호간의 무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안데스 공동체의 대외단일관세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안데스 공동체는 2004.10월 메르코수르(MERCOSUR)와 상호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59)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EU와도 FTA협상이 진행 중이나 CAN 회원국 간 정치, 이념적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국 중 페루, 콜롬비아는 독자적으로 EU와의 FTA를 추진하여 2010.5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반면 볼리비아는 EU와의 FTA 체결 추진을 거부하였으며, 에콰도르는 EU 수출 자국산 바나나 관세인하 등을 선행 조건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에콰도르는 그 외에도 중남미통합연합(ALADI)의 회원국으로서 무역특혜 및 미국의 안데안 무역특혜 및 마약퇴치법(ATPDEA)에 따라 대미 무역에서 관세특혜를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과거 추진했던 대미 FTA 체결 협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다만 역내국가인 칠레와는 1994.12월 상호 경제보완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No. 32)을 체결하였다. 기본적으로 주재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FTA 체결보다는 개발을 위한 통상협정(Trade Agreements for Develment)을 체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1995년 WTO 가입 시 에콰도르는 양허각서목록을 채택, 발효시켰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30% 내외의 관세 상한선을 수정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안데스 공동체의 무역규범의 적용으로 물품별로 0%, 5%, 10%, 15%, 20%의 관세를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35%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자동차 및 의류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 에어컨, CD, 오디오, 휴대폰 : 15%
- 컴퓨터(완제품), PC모니터등 컴퓨터부품 : 12%
- DVD Player : 25%
-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 30%
- 자동차 : FOB가격 30,000~40,000달러 사이는 5~25%, 40,000달러 이상은 35%이상
- 자동차 부품 : 3%
- TV : 14인치 미만 20%, 14~20인치 5%+대당 39.97달러 혼합관세, 21~32인치 5%+대당 73.11달러 혼합관세, 33~41인치 5%+대당 140.32달러 혼합관세, 42인치 이상 5%+대당 158.14달러 혼합관세
- 세탁기 : 10Kg미만 30%, 10Kg이상 15%
- 의류 : 10%

관세 산출에 있어 참조가격(reference prices)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상의 신고가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또한 에콰도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일부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은 있으며, 1999.2월 행정명령 제609호의 발동으로 Safeguard 조항 설치, 추가 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 이외 수입부과금은 아동발전 기금이 CIF가격의 0.5%, 수출 및 투자육성기관(CORPEI, 우리의 KOTRA상당) 기여금이 FOB 가격의 0.0025%이며 수입물품 통관시 전품목에 대하여 12%의 부가가치세(VAT)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부과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7일이 소요되고, 수입업자의 수입액이 2,000달러가 넘는 경우 통관사(Agente de Aduanas)의 관여가 의무적이며, 통관비용은 평균 수입품 가격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납세자 번호(RUC)를 교부 받는다.
- (2) 자신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 수입업자로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관련 사무를 위임한 은행들에서 교부하는 신상카드에 관련기록을 기입하고 자신이 계좌를 갖고 있는 위탁은행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은행들은 각자의 내부 정책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 (3)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금지 품목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2003.4월 대외무역 및 투자위원회(COMEXI)의 결의 제182호를 참조해야 하며 이는 상품분류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분류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 전 허가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선적전에 상기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품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식약청이 발급하는 증명서(Registro Sanitario) 없이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 (4) 수입품이 FOB 기준으로 4,000달러 이상인 경우 중앙은행에서 수입신고서(DUI)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중앙은행 웹사이트인 www.bce.fin.ec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증명번호(RUC) 및 비밀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비밀인증번호는 키토, 과야킬, 쿠엔카 소재 중앙은행의 수출입 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에콰도르는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협정(CITES)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바젤 협정에 의거 멸종위기의 동·식물 및 유해 화학물질, 중고 타이어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데스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중고차 수입 역시 금지되어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에콰도르는 WTO 규정과 안데스 공동체(CAN)의 무역 규범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들을 준수한다.

표준, 검사 및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에콰도르는 기술 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ISO 표준, 기타(reputable)표준을 다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표준의 경우 자의적 소지가 있으며,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 Instituto Ecuatoriano de Normalizacio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기술 표준 등을 관장하고 있다.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소속 연구소(Instituto Izquieta Perez)에서 분석 후 유통허가(Registro Sanitario)를 받아야 한다. 발급기간은 품목에 따라 약 3개월에서 3년간 지연되기도 한다.

에콰도르 기술 표준원은 최근 우리 기업의 냉장고에 대하여 제품 Test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그때마다 냉장고 Test를 다시 해서 INEN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입 허가를 약 2년간 지연시켜오다 2005년에 와서야 수입허가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들은 Local 업체의 Lobby, INEN의 업무형태 및 담당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관련 규제

에콰도르는 환경부의 규정에 의거 2002.7.7일 체결한 안데스 공동체 생물다양성 보존 전략(Estrategia Regional de Biodiversidad para los Paises del Trópico Andino)을 엄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자력 관련 재료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물품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 품목별 장벽

중고 자동차, 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FOB가격 30,000달러에서 40,000달러사이의 자동차는 5~25%, 40,000달러가 넘는 자가용 자동차들은 3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공공운수업자, 가정용가스 및 전기 요금에 일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차원의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에콰도르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완제품의 재수출 시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각종 입찰에 외국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 내에서 회사법인감독위원회(Superintendencia de Companias)의 허가를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번호사를 통해 현지법인 설립정관을 작성하여 회사법인감독위원회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후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에 등록하여 회사등기(Registro Mercantil)를 마치고 신문에 이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법적 대표는 에콰도르에 사업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등록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내·외국인, 국영·민영을 막론하고 공공입찰 과정 및 사후 계약과정에서 검찰(Procuraduria General) 및 감사원(Contraloria General)의 사전승인과 사후허가가 필요하다.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청(IEPI)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하여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 재산권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허는 등록 후 20년 실용신안은 10년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CD/DVD 불법복제 판매가 난무하고 있으며 2008년 초부터 정부는 불법복제 판매원들에 대해 현재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 서비스 장벽

서비스 분야는 에콰도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외국기업이 에콰도르 원유 해상수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주재국내 라디오, TV 방송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25%로 제한되어 있다.

■ 투자 장벽

개관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법(LEXI), 투자보장 및 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 경제활동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분제한 등 일정부분의 제한이 따른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상기 국가안보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

2007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Correa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특별한 혜택은 없다. 특히 2008.9월 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후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들어 그간 외국정부와 체결한 13개 투자보장협정의 폐지 추진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으로 부터의 일방적 탈퇴(2009.6.12) 등으로 투자 외국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 장치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0년 후반에 들어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키토와 과야킬이외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법인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생산활동 활성화법'을 10.21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세제상의 제한

일반적으로 25%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재투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에콰도르 정부는 해외도피 자금방지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기존에 1% 부과하던 해외 송금에 대한 송금세를 2009.11월 2%로 인상하였다.

■ 기타 장벽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업 애로사항 관련 공관 해결 사항

우리기업의 에콰도르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주한에콰도르대사관은 에콰도르 정·재·관계인사와 수시 접촉, 우리 기업인과의 만남을 주선함은 물론 소송 등 상거래상 분쟁발생 시 분쟁해소 지원, 신용 있는 국·내외 변호사 알선 등 제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에콰도르 국영석유공사(PETROECUADOR)는 Esmeraldas정유공장 개보수 프로젝트(2.9억 달러 상당) 2차 사업공고를 2009.10월 발표함에 따라 공관은 SK건설에 동 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공관의 관계기관 주요인사 방한 초청 주선 및 관계자 수시 접촉 등을 통하여 공개입찰 대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의계약 추진을 유도하고, 2010.2월 SK건설이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2차 사업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다.

2010.3월 공관은 에콰도르 전력부의 380MW 화력발전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유관기업이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발주처인 에콰도르 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핵심인사를 수시 접촉하여 우리기업의 화력발전 설비 우수성을 홍보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2010.5월 현대중공업이 상기 380MW 긴급 발전 프로젝트 중 1차분인 190MW 프로젝트(1.1억달러) 수주 및 계약체결을 측면 지원하였다.

2010.1월 공관은 갈라파고스 풍력발전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계약협상을 마무리한 유니스-레오콘코리아 컨소시엄 측으로부터 최종 사업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에콰도르 전력부장관등 핵심인사를 면담하여 조속히 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인사 방한 초청 및 유니스 공장 시찰을 주선하는 등 계약 서명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0.7월 유니스의 최종 계약서명을 도출하였다.

2010.8월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개보수사업 1차 공사를 수주한 SK건설이 동 공사 건설기자재의 통상적 통관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통관이 지연될 경우 공기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공관의 지원을 요청해 온 바, 공관의 관계기관장 접촉 및 신속한 통관 협조 요청으로 기자재가 항구에 도착한 지 1주일 만에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으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였다.

2009.10월 에콰도르 한국타이어 수입업체가 에콰도르 표준원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6백만 달러 규모의 한국타이어 수입의 어려움을 대사관에 알려움에 따라, 주에콰도르대사관 관계자의 에콰도르 표준원 관계자 접촉 및 협조요청 등을 통한 지원활동으로 수입허가서가 조기에 발급되었다.

■ 에콰도르의 최근 5년간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십억 달러)	37.1	41.4	44.4	52.2	55.6
실질GDP 성장률(%)	3.9	3.4	2.6	5.32	-1.00
인플레이션(%)	3.1	2.8	3.32	8.83	4.3
인구(백만 명)	13.2	13.4	13.6	13.8	14.6
수출(백만 달러)	10,100	12,728	13,800	18,489	13,800
수입(백만 달러)	9,549	11,266	12,592	17,424	14,100
무역수지(백만 달러)	551	1,462	1,208	880	-300
외환보유(백만 달러)	1,714.2	2,097.2	3,396.7	4,473	4,600
외채(십억 달러)	17.6	18.1	19.5	13.7	13.3
1인당 GDP(달러)	3,088	3,263	3,270	3,808	4,014
실업률(%)	9.3	9.0	9.8	7.5	7.9

※ 출처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 산업별 경제구조

2009년 기준 1차 산업 6%, 제조업 32.5%, 3차 산업 61.5%이며 2000. 9월 미국 달러가 공식화폐로 도입·채택되었다.

원유 생산과 농산물 수출이 에콰도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출품이 대부분 1차 상품이므로 이는 국제 가격 상승 및 하락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적다.

에콰도르는 50억 배럴 규모의 원유매장량을 보유,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음으로 3위이며 실제생산량은 4위이다.

- 주요 광구는 동부 아마존(Napo, Pastaza, Sucumbios)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서부 해안지방에서 소량 시추 중
- 생산 : 일일 평균 508,000배럴
- 수출 : 일일 평균 387,000배럴

농업은 GDP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나나, 커피, 코코아, 과일의 현대적 대규모 농업이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장미 화훼는 중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였고 최근 커피와 코코아 수출액을 초과하였다.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으로 1997년 13억 달러에 달했으며 바나나 농장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2009년 수출액은 19억 달러에 달하며,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 수출국이며 새우는 석유, 바나나에 이어 세번째 외화 소득원이기도 하다.

에콰도르는 개방적인 경제이나, 2008.9월 신헌법에 따라 에너지·자원, 전력, 환경 등 전략분야에서 국가의 간여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출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 경제부문이 여타 경제부문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 수출 : 137억 달러(2009년 기준)
- 주요 수출품 : 원유, 바나나, 수산물, 화훼
- 수출 상대국 : 미국 33.218%, 파나마 14.26%, 페루 6.8%, 칠레 6.5%

- 수입 : 150억 달러(2009년 기준)

주요 수입품 : 경유, 석유, 천연가스, 의약품, 자동차

수입 상대국 : 미국 25.6%, 콜롬비아 10.2%, 중국 7.3%, 베네수엘라 6.84%

엘살바도르

2009년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한 40.7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9% 감소한 4.2백만 달러로서 36.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8.3% 증가한 44백만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65.6% 증가한 14백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엘살바도르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의 회원국으로 중미공동관세제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관세로 일치시켰으며 일부 민감품목(유제품, 쌀, 육류 등)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 및 대외적으로는 공동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되지 않은 기초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0%
- 생산된 기초원자재 5%
- 생산된 중간재 및 자본재 10%
- 소비재 및 완제품 15%

수입부과금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특별세(Ad Valorem) 등의 수입부과금이 운영되고 있다.

관세부과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부가가치세 13%
- 특별세 30~39%

특별세는 총기류와 담배품목에 부과되며, 일부 예외품목으로 주류, 담배, 음료수 등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종량세가 부과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결과 청색신호(green light)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red light)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최저 20% 이상의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황색신호(yellow light)인 경우는 서류상의 검사만 실시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중미통합관세코드(CAUCA) 및 중미통합관세코드규정(RECAUCA)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에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국제 관행과 다른 독특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규제 상품은 거의 없으나 무기류, 화약류, 주류, 화학품, 의약품 등에 한해 수입규제가 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국가의 정치, 사회 및 경제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책자 및 선전물, 외설물, 낙태용 약제, 마약류, 화폐제조기 등이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불공정 무역규제 조약에 합의, 1995.12.12 일자로 발효되어 시행 중이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자유무역정책과이다. 현재까지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엘살바도르 관련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테스트, 등록되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및 취급상 주의사항 등

동·식물, 식품, 의약품 등은 농업부, 보건부 등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환경 관련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환경을 이유로 한 본격적인 무역규제 조치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장벽

8년 이상 사용한 승용차 및 경화물차, 15년 이상 사용한 버스 및 중화물차는 수입이 금지된다. 그밖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커피나무 및 씨, 동전 주조용 기계, 도박용 기계, 낙태 약품, 대구경

화기, 아편, 정치·경제·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책자, 인쇄물, 영상물 등이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만이 수입할 수 있는 제한적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군용비행기 및 함선, 군용방독면, 담배 제조용 종이, 수입인지, 우표 및 니켈 동전 등이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엘살바도르는 상품이 30% 이상 가치가 늘어나도록 변형되어 중미공동 시장 밖으로 수출되는 경우 상품가격의 6%를 환급해주는 drawback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가 WTO 위반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1.1월부터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엘살바도르는 또한 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동 제도 역시 WTO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2010.2월 개최된 엘살바도르에 대한 제3차 WTO 무역정책검토 회의 시 엘살바도르 정부는 동 제도를 2015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엘살바도르는 GATT 규정 제6조 및 ‘중미불공정 무역규제 조약(1995.12.12일 서명, 1996.1.12일 발효)’에 의거 불공정 무역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며, 경제부 자유무역정책과에서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엘살바도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회원국은 아니며, 정부조달은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법(2000.4월 제정)’에 의해 정부조달이 규제되고 있으며, 재무부의 ‘공공부처 조달 및 계약 규제위원회(UNAC)’가 조달관련 정책을 수립하나, 조달 자체는 각 정부기관에서 담당한다. 동 법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동법상 131,800달러 이상의 정부조달은 대외발표하고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으며, 16,600달러 이상의 조달은 대외 발표하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관련 법규는 상품·서비스·건설서비스 모두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입찰조건이 동일한 경우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엘살바도르는 WTO TRIPS에 가입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며,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권보호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 특허, 판권 및 여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센터’의 ‘지식재산권 사무소’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엘살바도르는 발명특허권에 대해 TRIPS와 동일하게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고, 의약품은 15년, 산업디자인은 5년간 보호하되 1회에 한해 5년간 재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 장벽

엘살바도르는 2007.10월 국제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국제유통, 국제화물 운송, 콜센터, 정보통신, R&D, 선박 수리, 의료, 국제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제서비스법에 따라 운영되는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및 중간재 수입에 대한 관세와 소득세 및 지방세가 면제된다.

■ 투자 장벽

투자진출 제한 분야

엘살바도르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필수적이라고 간주, 투자 제한 범위가 좁은 편이나 소규모 기업(고용원 10인 이하, 연간 판매액 68,571달러 이하) 및 전통 어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소규모 기업 투자 시에는 향후 고용원 증원 계획을 경제부의 ‘국가투자청(ONI)’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 철도, 운하 및 기타 공공사업의 경우 정부의 양허를 받아야 한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약

외국인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은 거의 없으며, TV 및 라디오(AM, FM) 방송은 외국인 소유지분이 49%를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 외국인 소유지분의 제한은 없다.

투자절차상 차별적인 조치나 제약은 없으며, 오히려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one-stop 투자서비스 기관인 ‘국가투자청(ONI)’를 설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내 신규투자 등록 시 26일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엘살바도르의 ‘국가투자청’(ONI)이 외국인 지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I는 또한 노동관련사항, 이민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가등록센터’(CNR)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설치하여 지사 및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서류를 접수, 처리하고 있다. 지사 설치 운영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1,428달러로서 스페인어 구좌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행정인력의 리스트를 상업등록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회사 내규
- 회사 정관
- 이사회 의사록

- 사업자 등록증
- 재무제표
- 위임장(지사장 및 변호사)

위의 한국어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변호사 공증을 받은 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Apostillo를 받아, 스페인어로 번역 후 엘살바도르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종업원 규제

엘살바도르의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장법’은 현지인을 최소 총 고용 인원의 90% 및 총임금의 85%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엘살바도르 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 하에서 10% 이상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하다.

국산화 의무

엘살바도르는 외국 투자기업에 국산화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및 수출시 인센티브

엘살바도르 ‘투자법’은 투자자에게 일정 생산량의 수출, 기술 이전, 일정수준의 현지 구매 등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수출인센티브 수혜자격이 있는바, 상품 및 서비스수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법’은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의 관세관할권 밖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법은 WTO 위반으로 지적되어 2015년 폐지될 예정이다.

-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기계, 장비의 수입에 대해 모든 관세 및 세금 면제
- 수출품 생산용 연료 및 윤활유(국내 생산분은 제외)에 대한 세금 면제
- 투자 회사의 자산,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 면제
- 수출관련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

※ 자유무역지대 입주 투자기업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엘살바도르 국내시장에도 판매 가능

또한 ‘수출촉진법’에 따라 투자기업은 중미공동시장 밖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동 상품 FOB 가격의 6%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 제도는 WTO 위반으로 2011.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엘살바도르는 1980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내·외국인을 불문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245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토지취득 시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 엘살바도르인에게 토지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토지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1) 과실송금 관련

국외로의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자금차입 규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며 특별한 규제는 없다. 2001년 달러 공용화 이래 저축 및 차입 이자율이 많이 하락하여, 거의 미국 수준이다. 소비재 수입을 위한 1년 미만 은행차입 이자가 약 7.7% 수준이며, 중간재 수입을 위한 은행 차입 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중앙은행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은행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이자지불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제상의 제한

세율상의 차별 여부

엘살바도르는 내·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상의 차별은 없다.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IVA) 13%, 소득세 25%, 지방세(세율은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가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서비스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쟁정책

엘살바도르 ‘경쟁법’은 가격 담합, 생산 제한, 매점, 끼워 팔기, 독점 등을 불법으로 규정,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타 장벽

장기 체류 비자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 체류가 가능하나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비자(거주권)를 취득해야 한다. 엘살바도르 ‘투자법’은 월 최저임금의 4,000배(732,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투자 등록 후 30일 이내에 거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 및 가족도 해당된다.

엘살바도르의 장기체류비자 발급제도는

- 1년 기한 체류비자(최초 입국 후 5년간 5회 연속 1년 기한 체류비자 발급)
- 5년 기한 거주권(5년간 연속해서 1년 기한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동 거주권 신청 가능)
- 임시체류비자(상기 1년 체류비자 등 기한 만료 시 3개월 유효 임시 체류비자 발급)로 구분된다.

이민국의 장기체류비자 발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발급에 오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장기체류비자 만료에 따라 출·입국 시 벌금 부과,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불가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엘살바도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필요서류는 ① 재무부 발행 조세 납부자 신분증(NIT) 원본 및 사본,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거주증,

④ 한국운전면허증 사본, ⑤ 시력 및 혈액검사증이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약 50달러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며, 거주증 취득 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별도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엘살바도르 공무원은 중미국가 중 비교적 부패정도가 덜하며 규율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 자유무역지대 내에 위치한 세관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여 관련기업과의 유착에 따른 부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기업측의 선물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항만, 공항시설 부족에 따른 화물적체 현상이 빈발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신속 통관, 세금 경감 등 혜택 제공을 빌미로 일부 관료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컨테이너에 의한 물품 수입 시 무작위 검사(세관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파란불은 통과, 빨간불은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와 세관원간의 음성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탈로그/개인소화물에 관세부과

수출업체에서 수입업체에게 송부하는 각종 카탈로그에도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물론 DHL, Fedex 등 세계적인 물류업체는 통관업무절차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무료로 송부되는 카탈로그라도 최소금액을 표기하여야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다.

우루과이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출은 2002년 우루과이의 경제위기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회복되어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9백만 미불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2008.9월 발생한 국제적 금융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한 64백만 미불로 나타났다. 對우루과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화학제품(폴리에틸렌),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입은 2002년 이후 지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루과이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주력 수출품인 신선쇠고기 수입의 금지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2009년 한국의 對우루과이 수입은 45백만 미불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에 대해 20백만 미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對우루과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목재, 낙농제품(치즈), 어류(홍어, 가오리, 메로) 등이 있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와 함께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이며, MERCOSUR 본부 사무국이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MERCOSUR 회원국 인구는 총 243백만 명에 달하며, 총 GDP는 남미 전체 GDP의 68%에 해당하는 1.95조 미불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MERCOSUR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대해 이중적인 관세정

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설탕 및 자동차를 제외한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가 부과된다. 대외공동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20% 수준으로 평균 10.3%에 이르나, 특정 신발, 설탕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3~35%, 특별 가공 복숭아에 대해서는 55%가 부과된다. 2009년 우루과이의 관세율은 평균 9.5%로 2005년 평균에 비해 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MERCOSUR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대외공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2016년까지 유효한 100개의 제외 대상 품목 및 2010.12월까지 유효한 125개의 추가 제외 대상 품목이 있으며, 대부분 화학 및 석유화학 품목이 해당된다. 산업별로는 자본재(capital goods)와 정보통신 품목이 주로 대외공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자본재는 10~14%, 특정 정보통신 품목은 10~16%의 수입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자본재에 대한 대외공동관세 제외 대상리스트는 매년 12.31일에 조정되며, 정보통신 품목의 제외 대상 리스트는 2016년까지 유효하다. 대외공동관세 면제 품목에 대한 우루과이 특별관세율은 원자재의 경우 2~6%, 중간재의 경우 8~9%, 소비재의 경우 10~20%에 달한다. 자동차, 농업 및 호텔 공급품, 수출품 재료에 대해서는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가 적용된다.

또한, 우루과이는 1980.8월 중남미 국가들 간 특혜관세 부여, 포괄 협정 및 회원국 간 양자·다자간 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중남미 공동시장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중남미통합기구(ALADI)의 회원국이며, ALADI 사무국이 몬테비데오에 위치해 있다. MERCOSUR 협정 하에서 ALADI 회원국인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쿠바 및 멕시코와 각각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는 2003.11월 멕시코와 자동차 및 석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나간다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수입부과금

외국 물품의 수입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사확인 수수료, 세관특혜용역비 및 특별세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수입품 통관금액(수입가액+관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22% 및 추가 부과세(advance payment) 10%가 부과된다. 생필품 및 의약품 등 최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부과세는 3%이다.
- 영사확인 수수료(consular fees)
 -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 수입품 가치의 2%가 부과되나, 법령(decreto) 70/002 제24조에 의해 제조업 및 농목축수산업에 한해 사용되는 수입자본재는 예외적으로 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세관특혜용역비(customs and preferential service fee)
 - CIF 기준 수입허가서 가치의 0.2%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50 미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특별세(extraordinary service fee)
 - 수입허가서에 명시된 가치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에 따라 특별세 금액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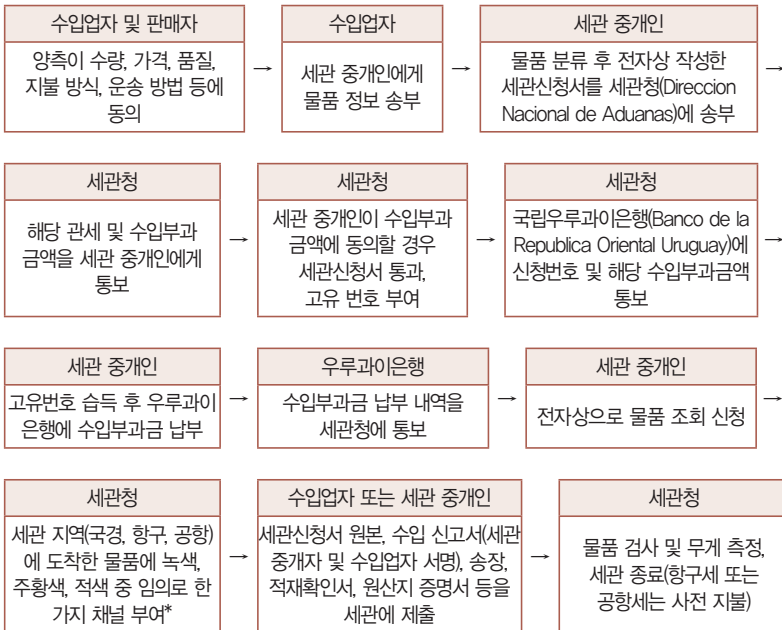
 사례 : 음식점 기기 수입시 원가 및 통관 후 가격 비

구분	비율(%)	금액(미불)
원가		1,000
관세	20	200
법인세	4.8	48
부가가치세 및 추가 부과세	32	384
영사확인 수수료	2	20
세관특혜용역비	0.2	2
특별세		12
운송비		6.3
관세 및 수입부과금 총액		672.3
통관 후 가격		1,672.3

출처 : 미국 상공부 US Commercial Service

통관절차상의 장벽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 Seguros del Estado)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자에 한해서 우루과이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 녹색 채널 : 즉시통과
 주황색 채널 : 서류심사 후 통과
 적색 채널 : 서류 및 물품 검사 후 통과

보건, 환경, 국방 등 특별한 사유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2일이며,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기준으로 관세를 제외한 소요 비용은 약 1,330미불에 달한다.

절차	소요 시간(일)	소요 비용(미불)
서류 구비	10	440
통관 및 기술적 절차	5	250
항구 및 터미널 통과	4	390

절차	소요 시간(일)	소요 비용(미불)
입국 후 운송 및 통과	3	250
합계	22	1,330

출처 : World Bank

통관시 석유, 식용유, 산업용 정제 설탕, MERCOSUR 비회원국산 섬유 제품, 신발은 반드시 적색 채널을 통과해야 하며, 위스키 및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 문서 제출 및 예치금 공탁의 추가 절차가 적용된다. 방송용 음반 및 개인적 용도로 국제우편을 통해 도착한 50 미불 이하 음반을 제외한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규정에 일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대전화의 경우 세관신청서에 명시된 일련번호 코드가 필요하다.

수입정책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 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ía) 등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의 등록은 유효 기간 제한이 없다.

농업용 화기, 화학품, 산업용 정제 설탕, 인쇄용 종이, 자동차 산업 용품, 타이어, 냉동 태아(frozen embryo), 식물, 수산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 및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행정 절차상 허가가 지연되어 수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루과이 내 수입업자들은 국영항공사인 PLUNA가 아닌 외국 항공사를 통해 물품을 들여올 경우 4%의 종가세(ad valorem tax)를 지불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

ALADI 및 MERCOSUR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국 간 특별 원산지 규정 이외에는 관련 국제법규에 위반되거나 차별적인 원산지 규정을 별도

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ALADI 규정에 의해 원자재 가치가 완제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ALADI 원산지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협정에 따라 회원국 간 거래되는 차량, 농기계, 자동차 부품 등은 역내산 부품이 완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원산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에너지광물부, 우루과이 산업회의소(Camara de Industrias del Uruguay), 상업서비스회의소(Camara Nacional de Comercio y Servicios), 국산품상공회의소(Camara Mercantil del Productos del Pais)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MERCOSUR 원산지 확인서 발급은 경제재정부(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산하 상업국(Direccion Nacional de Comercio)에서 담당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규정은 대부분 보건, 동식물위생, 안전, 국방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며, 해당 품목은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등이 있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 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 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composition of food articles)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5.8월에 제정된 법률(Ley) 17887에 의거, 안전 및 환경 보호 목적으로 중고 차량(중고 자동차, 최고 적재 용량 1500kg 운반용 차량, 버스, 트랙터, 오토바이 및 중고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산업에너지광물부 및 교통공공사업부(Ministerio de Ministerio de Transporte y Obras Públicas)의 허가를 받아 중고차량 수입이 가능하다.

-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이 불가능한 특수 차량
- 해외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기부 받은 차량
- 20년 이상된 전시 및 경주용 차량
- 운동 경기장 인력 수송용 차량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루과이는 GATT 및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을 국내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산 폴리에스터 섬유,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기름, 호주산 철판, 멕시코산 시멘트, 이탈리아산 난방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 중 실제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경우는 아르헨티나산 식용유 1건에 불과하며, 최근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알려 지지 않고 있다.

2001.1월~2002.6월 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MERCOSUR 역외산 직물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동 관세는 섬유의 경우 1kg당 1.62~4.55미불, 의류의 경우 1kg당 2.80~6.30미불에 달했다. 이밖에 2002~2004년간 특정 철봉, 걸이 및 받침대에 각각 0.041과 0.84미불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자유무역지구/자유항

현재 우루과이에는 Colonia, Nueva Palmira, Montevideo, Florida, Rivera, Río Negro, Nueva Helvecia 및 Libertad시에 위치한 12개의 자유무역지구가 있으며, 자유무역지구 내 대부분은 창고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Montevideo에 위치해 있는 Zonamerica 지구는 국제적 기업 설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Fray Bentos에 위치한 Botnia 지구는 펄프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자유무역지구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자유무역지구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들어가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된다. 한편,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무역지구로 들어오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된다.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무역지구로 들어오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 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모든 국세 면제, 상품출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 독점 산업에 관한 국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임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중 우루과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무역지구에는 MERCOSUR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우루과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이 여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출될 경우 대외공동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지구 내에서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산업지구, 자유항 및 개인 세관 예치금(private customs deposits) 지구 등 특별 수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항 및 개인 세관 예치금 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우루과이기술연구소는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며, 동식물 위

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ón Nacional de Servicios Agrí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 환경 관련 규제

우루과이 헌법 47조 및 환경보호법률 17283은 환경 보호가 보편적인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정부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업 허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법률 16906은 청정 기술(clean technology)을 이용하는 국내의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국토환경부(Ministerio de Vivienda, Ordenamiento Territorial y Medio Ambiente) 산하 국립환경국(Dirección Nacional de Medio Ambiente)에서 환경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2005.9월에 발표된 법령 349/005에 따라 주거국토환경부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분야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교통 및 운송 인프라건설
 - 국도 또는 지방 도로의 건설 및 연장
 - 철도 건설 또는 정비
 - 새로운 기반 공사가 필요한 교량 건설 및 정비
 - 공항 건설 및 활주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공항 리모델링
 - 항만 건설 및 바다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항만 정비
 - 석유 및 화학 물질 운반 터미널 건설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
 - 유해 폐기물 처리 공장 및 매장지 건설
 - 사용자 10만 명 이상 하수구 처리장 건설
 - 1헥타르 이상의 제조 공장, 유해 물질 배출 공장 등의 산업용 건설

- 에너지
 - 새로운 광산 또는 광산 입구 건설을 요구하는 광물 채취
 - 화석 연료 개발
 - 10MW 이상 전력 생산 공장 건설
 - 핵에너지 생산 및 처리 공장 건설
- 무역, 여행, 농림
 - 자유무역지구 또는 산업지구 확장 공사
 - 리조트 및 여가 시설 건설
 - 10 헥타르 이상 주택 단지 건설
 - 100 헥타르 이상 채소, 과일 및 포도주 생산지
 - 100 에이커 이상 임업장 건설

해당 건설 업체는 국립환경국에 건설업체명, 토지소유자명, 토지 특성, 연관 기술자 신상 정보, 공사 내용,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및 환경 개선방안 등을 기록한 건설환경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공사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 정도를 측정하여 A급(오염 가능성 낮음), B급(오염 가능성 중간), C급(오염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한 후 이를 국립환경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환경국은 환경 카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환경오염 가능성 정도를 승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A급 사업의 경우 허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 변경 및 추가적인 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B, C급 사업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환경영향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C급 사업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연무제(aerosol), 납 다량 함유 페인트 및 중질유, 특정 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약품, 유해 폐기물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할론 가스 등 몬트리올 협약(Montreal Protocol)에 명시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포함한 품목은 주거국토환경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품목별 장벽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MERCOSUR 대외공동관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20%, 자동차 부품 12%, 도로 장비, 버스 및 트럭 2~12%가 부과되나, 세부 차량 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원국별 관세 체계가 적용된다. 우루과이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 2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 및 내국세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총 세금을 포함하여 MERCOSUR 역외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49%, MERCOSUR 역내산 자동차의 경우 가격의 39%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승용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30% 내국세를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5%, 1000cc 이하 자동차 20%, 1000~2000cc 승용차 25%, 2000~3000cc 자동차 35%, 3000cc 이상 자동차 40%로 차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ERCOSUR 자동차산업에 관한 협정은 각 회원국이 연간 승용차 2만대 이하를 여타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로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우루과이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장려를 위해 우루과이 내에서 조립된 차량 및 우루과이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수입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수출 보조 정책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우루과이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원자재, 부품, 모터, 포장품,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으로 정의된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우루과이 정부가 직접 소유하거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있어 정부조달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법령 194/997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외국 기업들은 공개 입찰 과정을 통해 우루과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 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루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 시작일 15일 전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외국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전에 공고되기도 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품질이 동일하고 국내 기업의 입찰 가격이 외국 기업보다 10%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정 절차상 입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우루과이는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 Convention)에 가입해있는 바,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이 우루과이 내에서 우루과이 국민과 같은 저작권 보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프트웨어, 전자 창작물 및 외국산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창작물에도 해당한다. 개인 저작권은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 40년까지 보장되며,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은 4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의 경우에는 국립특허국(Dirección Nacional de la Propiedad Industrial)의 허가를 받아 10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년 단위로 무제한 재등록할 수 있다.

우루과이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협약(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가입해 있는 바, 동 협약에 가입해 있는 국가의 특허권 소유자들은 본인의 발명품이 우루과이에서 사용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우루과이 국립특허국으로 부터 취득한 산업 특허는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이후 공공 소유로 전환된다. 사용 모델에 한한 소규모 혁신 및 상품에 적용할 경우 외형을 변경시키는 산업 디자인은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 투자 장벽

개요

우루과이는 투자진출에 있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안정된 사회적·법적 체제,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정부 청렴도, △발달된 금융 기반,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인프라 발달, △교육 정책에 힘입은 풍부한 고급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외국 자본의 금융업 참여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규제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 경제는 2000~2001년 사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2년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의 영향을 선진국에 비해 적게 받아 오고 있다. 경제 산업별 농축산물 수출과 관광업이 국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IT, 금융,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구 설립 등 투자 진흥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으며,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외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법인은 우루과이에서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거나 정부로부터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외국 투자 비율 및 회사들에 대한 최소·최대 자본 금액이 법률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루과이인의 최소 주식 소유 비율 및 동업자 수, 그리고 우루과이인의 경영자 참여 등에 관한 조건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 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 활동 및 은행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 시장 및 외국환 거래 시장도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對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백만에 불과한 인구 규모 및 무역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루과이 정부는 역내외 여러 국가와 양자 차원의 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시장에 교역의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수준(우루과이 페소 기준 15% 이상), 중소기업 보조 정책의 제한, 자본 시장의 미진한 발달 등도 고려할 사항으로 포함된다.

우루과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2005년까지 GDP 3% 미만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 증대하여 2008년에는 GDP의 6%에 도달하였다.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은 11억 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축적된 투자액수(stock)는 100억 미불에 가까운 수치인 것으로 집계된다.

우루과이 FDI 유입 추세

연도	FDI 유입 금액(백만 미불)
1995-2005년 평균	289
2006	1,493
2007	1,329
2008	1,840
2009	1,139

※ 출처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한·우루과이 양국은 2009.10월 상대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현재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및 지분소유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적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공공 양허 사업(public concessions), △보험 및 은행업, △광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국가 안보 관련 산업 및 직접적인 외국 자본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독점 산업(유선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및 석유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으며, 100% 외국 소유도 허용된다. 국가 독점 산업 중 일부는 Build-Operate-Transfer(BOT) 형식으로 외국 기업과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1)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의 자기자본(equity)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최소액 또는 최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자본 및 회계장부는 우루과이 페소로 기록해야 한다. 농목축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보유한 사단법인의 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하며, 라디오 및 TV 방송국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루과이내 거주하고 있는 우루과이 국민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최종 설립에 한 달 이상 소요되나 그 이전이라도 임시 사단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① 법인 정관 및 설립자 서명 공증
- ② 감사원(Auditoria Internal de la Nacion)의 법인 부칙(bylaws) 승인
- ③ 상공등록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에 법인 부칙 등록
- ④ 관보(official gazette) 및 우루과이 신문에 부칙 요약본 게재
- ⑤ 국세청(Direccion General Impositiva) 신청서에 설립자 서명 후 공증인 인증
- ⑥ 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Banco de Prevision Social) 등록
- ⑦ 법인 이사회 정보 상공등록부 등록
- ⑧ 노동 장부(Registro Unico Laboral) 구입
- ⑨ 노동 신고서(planilla de trabajo) 구입 및 노동복지부에 임금 장부 등록
- ⑩ 우루과이보험공단(Banco del Seguros de Estado)에 산업재해 보험 신청

중남미 및 OECD 국가와의 법인 설치 과정 비교

구분	우루과이	중남미 평균	OECD 평균
절차 수	11	9.5	5.7
소요 시일	65	61.7	13.0
소요 비용(인구당 GNI 대비)	40%	36.4%	4.7%
최소자본 제한(인구당 GNI 대비)	없음	2.9%	15.5%

※ 출처 : World Bank

(2) 유한회사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동업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이 상공등록부(Registro Nacional de Comercio) 등록, 관보 및 우루과이 일간 신문에 요약본 게재 등 과정을 거친다. 총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유한회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고용시 우루과이 보험공단에도 등록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는 공증받은 계약서 및 회사 장부(상공등록부용), 공증 받은 신청서(국세청 및 사회보장공단용), 고용내역서 및 국세청·사회보장공단 등록증명서(노동복지부용)이다.

(3) 외국회사 지사 설립

외국회사의 지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된 외국 본사 규정 사본 및 외국 본사로부터 우루과이 내 지사 설립을 명시하는 문서를 상공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동 문서에는 지사명, 주소, 지사에 할당된 자본 및 대표명을 포함, 모든 내용이 스페인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공등록부 등록 후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총 소요 시간은 수개월이나 등록 시점부터 영업할 수 있다.

국세청, 사회보장공단 및 노동복지부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는 유한회사 설립과 동일하며, 지사 설립 역시 자본 최소 금액 또는 최대 금액에 있어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소득 또는 자본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법인 설립, 등록, 활동 범위, 이익 배분, 주식 발행 등을 규정하는 우루과이 법인에 관한 법률 16060에 합치할 경우 금융상의 특별한 제약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세 제도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되는 바, 개인은 일 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제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10~80%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승용차, 에너지 비효율 전자 기기, 술, 담배, 석유 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내국소비세 비율(%)
디젤 승용차	180
디젤 다용도 트럭(농업용 제외)	70
기타 승용차	40
기타 다용도 트럭	10
주류 및 음료	5~85
향수	20
담배	70
석유 및 윤활제	35(항공용은 15)
각종 연료 및 석유 파생물	5~133
설탕	4~10
행정부가 지정한 에너지 비효율 전자 기기	180

※ 출처: 우루과이 국세청

이밖에 주요 직접세로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와 재산세(wealth

tax)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및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부동산 가치의 2%) 등이 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의 25%를 부과하며, 우루과이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및 비거주자 소유 우루과이 내 영구적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상업 활동이 우루과이 내 부동산 및 보조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연소득 2만 5천 미불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달 약 70미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인 소득세는 재산 소득 및 근로 소득으로 나뉘며, 불로소득세는 비례적으로 3~12%, 근로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연간 소득의 0~25%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우루과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12%의 비거주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간 근로 소득(미불)	누진세 비율(%)
7,600 미만	0
7,600~10,800	10
10,800~16,300	15
16,300~54,300	20
54,300~108,500	22
108,500 초과	25

※ 출처 : 우루과이 수출투자진흥공사(Uruguay XXI)

재산세는 우루과이 내 위치하거나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기업의 경우 연간 1.5%, 개인의 경우 0.7~2.5%의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2%에 달한다. 기초식료품, 의약품, 호텔 서비스, 의료 서비스, 부동산의 초기 판매, 신선 과일, 꽃, 채소 등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외환, 초기 판매를 제외한 부동산, 농업 기구, 우유, 책, 잡지, 신문, 교육 도구, 정부 및 민간 유가 증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2010.1월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현재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진흥책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법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07.11월에 통과된 법령 455/007은 토지, 부동산 및 사적 차량 구매를 제외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과 산업별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 법령은 회사들의 세금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혜택 부여에 있어 내외국인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

투자 사업은 규모에 있어 소, 중, 대, 초대형으로 분류되며, 실질적 세부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에의 기여도, △GDP, 수출 및 국내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 △지방 분권화에 대한 기여도, △친환경 기술(clean technology) 사용 등을 기초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투자 혜택으로 투자 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법인세 면제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자본재 수입시 관세 및 세금 면제, △개인 소유물 및 토목에 대한 상속세 면제, △토목용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불, △연구 개발비 지불시 세금 감면 등이 있다.

투자 규모별 법인세 면제 비율

구분	투자 규모 (백만 미불)	법인세 면제 비율 (%)	최대 적용 기간
소규모	0.3 이하	51~60	5년
중간 규모 1	0.3 초과 1.2 미만	최대 70	15년
중간 규모 2	1.2 이상 6 미만	최대 80	20년
대규모 1	6 이상 12 미만	최대 90	25년
대규모 2	12 이상 43 미만	최대 90	25년
대규모 3	43 이상 605 미만	최대 100	25년
초대형	605 이상	최대 100	25년

※ 출처: Uruguay XXI

관광, 임업, 석유, 바이오연료, 소프트웨어,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제도가 있어 이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산업별로 상이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이 부여된다.

■ 경쟁정책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2007.7월에 법률 18159이 제정되었는 바, 동 법률은 기업 합병 후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경우 경제재정부에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다수 공공부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바, 전기, 유선 전화, 석유, 수도 부문은 정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철도 및 항만 운영 사업도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정 농산물 및 천연 가스를 제외하고 정부가 가격책정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한국 여권 소지자는 한·우루과이 양국 정부 간 협의에 의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우루과이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간 우루과이 내 체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원본, 면허증 번역본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확인서를 각 지방 시청의 교통 및 운송과에 제출할 경우 우루과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노동 정책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

이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월 최저임금은 4,799우루과이 페소(약 238미불)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구분	금액
사회보장	임금의 7.5%
의료보험	임금의 5%
노동구조조정기금(labor restructuring fund)	임금의 0.125%
상여금(1년에 한번 지불)	연봉의 1/12
휴가 수당	총 임금의 80%×휴가일수(20일)/30

※ 출처: US Commercial Service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 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 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2005.3~2010.2월 간 집권한 Vazquez 前 정부 하에서 노동 관련법 36개가 통과됨으로써 노동 정책에 있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피고용주가 파업권의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할 경우 고용주가 경찰을 동원해 피고용자들을 강제 해산시킬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이 다수 통과되면서 직장 점거 횟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형성이 꾸준히 증가하여, 우루과이 노동조합 연합인 PIT/CNT에는 전체 노동 인구의 28%인 32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감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가 등이 실현되었다.

분쟁 해결

우루과이의 사법제도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사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2000.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가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중재 또는 법정 해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금융시장 현황

우루과이 은행은 일반적으로 자본, 지불 능력, 유동 자산 보유율 등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낮은 국제 금리 및 자본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이익이 낮은 단점이 있다. 우루과이 내 최대 규모인 우루과이은행은 국내 총 대출 및 자본 보유금액의 4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국영 저당 은행 1개, 외국 소유 은행 12개, 국외 은행(offshore bank) 6개, 협동조합 11개, 외국 은행 지부 21개 및 다수의 금융 기관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으나, 장기 대출을 위한 절차가 엄격해서 우루과이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기 대출의 연장을 선호한다.

2002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루과이 중앙은행(Banco Central Uruguay)의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우루과이 국채는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0.9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tandard & Poor's는 우루과이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루과이 국채의 장기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투자적격 단계에 2단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향후 투자적격 판정지위를 회복할 경우 우루과이 경제에 대한 신용도 상승 및 이에 따른 해외투자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루과이는 2009.4월 OECD의 국제 금융거래 관련 Grey List에 속한 국가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들 국가는 OEC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

지만 OECD가 규정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동 리스트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및 금융에 관한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캐나다는 1998년부터 관세율 체제를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2002년 기준 최혜국 관세 적용률은 단순평균으로 4.1%이고, 공산품은 4.2%, 농산품은 3.1%이다(WTO DB 통계). 2000.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Supply management) 대상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상품의 경우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최혜국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74년부터 일반특혜관세 적용혜택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 공여기간을 1984년과 1994년에 10년 연장받았으며 2004년 다시 10년 연장되어 현재의 일반특혜관세는 201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특혜 관세율은 최혜국관세율의 1/2수준이며, 관세율이 0%인 제품도 상당하다. 그러나 다자간협정, 지역협정 및 쌍무협정에 따라 최혜국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장도가격(ex-factory price)을 기준으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일반특혜관세 수혜국에서 발생하고, 직접 캐나다로 선적하였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저율의 관세인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대상품목이 아닌 제품은 최혜국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수입규제

위조화폐, 공격용 무기, 아동포르노사진, 죄수가 제조한 상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등 캐나다의 관세율 양허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등 캐나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규제 품목도 수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 품목은 수출국의 수출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WTO의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양자 간 섬유쿼터 및 WTO 非회원국과의 양자 간 섬유쿼터를 운용하여 왔으나, 다자간 섬유협정이 WTO로 이행됨에 따라 캐나다는 1995.1월 제1단계 조치로 1990년 총 수입량 기준으로 16.4%를, 1998.1월 제2단계 조치로 18.6%를 쿼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2.1월에는 제3단계 조치로 18%를 추가 개방하고, 2005.1월부터 쿼터제를 폐지하여 전면 개방하였다.

캐나다는 GATT회원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 멕시코에 대하여는 여타국과 상이한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는 지역통합 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를 규정한 GATT 규정 XXIV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생타이어 수입금지 사례(일반 승용차용은 미국산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트럭용 등 특수타이어는 허가 필요)는 국제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캐나다는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가 현재 규제 중인 반덤핑 조치의 절반 이상은 철강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캐나다는 NAFTA 지역내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997년에 체결된 캐나다-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호간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적용배제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2000.3월 특별수입규제법이 개정되었는바, 잠정덤핑 판정시 종전에는 관세·국세부만

이 관여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도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또한, 재심사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이외에도 관세·국세부도 덤핑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4년 이후 정부조직개편으로 관세업무가 신설된 국경서비스청(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덤핑판정업무는 국경서비스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캐나다는 16개국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일국가로는 중국이 총 13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당하고 있어 최대 규제 대상국이다. 미국은 동제관연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제품 중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구조용강관과 동제관연결구류 2개 품목이다. 어망용 로프, 방수고무화, 포켓식 앨범도 규제를 받아오다가 1997년 이후 해제되었으며, 앨범시트도 2000.8월 반덤핑규제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 여파로 캐나다 철강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스텐레스 봉강이 새로이 반덤핑 판정을 받았으며, 철근도 2000년 초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99년 중후판 및 아연도 강판도 재심결과 반덤핑 조치가 연장되었다. 2001년 들어 열연코일 및 냉연강판에 대한 덤핑제소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으나, 열연코일은 8.17일 냉연강판은 10.9일 각각 무피해 판정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밖에 15년간 장기규제를 받아오던 유정용 강관이 2001.7.4일 종료재심 결과 규제조치가 철회되었다. 2003년과 2004년에 구조용 강관과 스텐레스 강선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으나 1994년 이후 규제대상이었던 중후판과 아연도 강판은 규제조치가 종료되었다. 2005년 들어 1984년 규제시작 이후 21년 만에 탄소강관이 종료재심을 통해 규제가 해제 되었으며(6.3), 철근(1.11), 스텐레스 봉강(1.18) 또한 규제가 해제되는 등 신규 제소된 사례 없이 모두 3건의 철강관련 규제가 해제되었다. 2009년에는 7.29일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종료되었다.

2006.6월에는 한국산 및 미국, 중국산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공정판정이 내려졌으나, 우리 수출기업 중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의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았다(여타기업들은 37~242%).

📌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최초규제	현 규제기간
구조용강관	2003.12	2003.12~2013.12
동제 관연결구류	2007.2	2007. 2~2012. 2

※ 자료 :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

세이프가드

2002.3월 캐나다의 철강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따라 우회적으로 철강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 9개 품목군의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 2002.7.5일 9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8.20일 3년간 관세쿼터 조치 결정을 발표하였다. 조치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및 형강 일부이나 열연 강관 등 주력 수출제품이 제외되어 우리 철강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2003.10월 캐나다 내각은 세이프 가드 조치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이프가드 유보는 미 NAFTA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을 국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WTO 규범 위배에 따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005.1월 캐나다 자전거 생산업계는 중국산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자전거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크다고 CITT에 제소하였으며, CITT는 2.19 일자로 조사를 시작하여, 9.1일 수출가격(FOB) 225 캐나다달러(소매가 400달러 상당) 이하이고 바퀴직경 38.1cm(15인치) 이상인 자전거(도색된 자전거 프레임 포함, 조립여부 불문, 접이식 자전거 등 예외품목 있음)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자전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1차년도 30%, 2차년도 25%, 3차년도 20%의 관세를 부과기로 하였으나, NAFTA 지역 및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 WTO 개도국 중 당해품목 수입점유율 3% 미만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규제대상국은 중국,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캐나다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동 조치의 적용대상국이 아니다.

이후 중국산 수입품이 각 부문에서 급증함에 따라, 2005~2006년중

중국산 야외바베큐 그릴, 가구, 섬유 의류제품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발동 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중 야외바베큐 그릴에 대하여는 2006년부터 3년간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가구의 경우는 제기대상 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섬유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캐나다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되었다.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신청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또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행위에 대해 표준신청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련 기업들이 참고토록 하였다.

한편, 온타리오주 담배원료판매위원회는 2005.10월 버지니아種 담배원료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를 신청, 같은 해 12월 국제무역재판소의 조사 개시결정을 얻었으나, 2006.2월 동 위원회가 신청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종결처리된 바 있다.

■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표준

캐나다의 표준설정 기관은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자발적 표준화(Voluntary Standardization)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 설정 기관은 공공기관인 캐나다 표준청(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민간기구인 캐나다 표준협회(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및 캐나다 가스협회(Canadian Gas Association)이다.

이중 캐나다 표준협회가 가장 주요한 표준 설정기관이며 특히 전기제품 표준설정을 관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8년 EU와 전기제품, 정보통신 및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과는 공동표준(joint standards)을 설정한 분야가 있으며, 양국 기관 간에는 상대방의 시험기관을 인정(accreditation)한 경우도 있어 단일 자료 제출로 양국의 표준을 동시에 승인 받을 수 있다.

1999.7월 우리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양국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준

비작업 일정을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2005.7월부터 개시된 한-카 FTA 협상진행을 통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라벨링, 포장

수입상품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 국내 판매제품은 영어 및 프랑스어(bilingual)로 상품명, 순증량, Dealer의 주소 등을 정해진 곳에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비식료품의 경우 수입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명의 표시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시제품(test market product)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라벨링이 면제되고 있다. 퀘벡주는 불어가 공용어이므로 모든 라벨링, 보증서, 사용방법 등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쓰여져야 한다. 다른 언어 사용 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 원산지 표시법이 2009.1.1일부터 발효되어 소비자가 물건의 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생산비용의 51%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캐나다 상품(Product of Canada)’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새 원산지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재료와 노동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은 ‘캐나다 상품’ 상표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새 법에 명시된 상표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든 재료와 노동이 100% 국내산인 상품일 경우는 ‘Product of Canada’로 표기해야 한다. ‘Made in Canada’는 국내산 재료와 수입용이 섞여 있을 경우 ‘Made in Canada from domestic and imported ingredients’로, 수입용만으로만 만들 경우 ‘Made in Canada from imported ingredients’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용인지 또는 중간도매상용인지에 따라 상이한 포장기준을 가지고 있다. 치약, 스킨 및 크림, 샴푸 등에 대해서는 표준 포장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포장지는 가능한 한 재생가능한 원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은 상품별 중량, 부피 표기를 요구하며 비스킷, 과자,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포장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캐나다 농산물 및 식품법(Canadia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ct)』은 통조림용 등 가공 과일 및 야채에 대한 포장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은 내용성분의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은 매우 엄격하여 상품명, 순중량, 배포처 주소, 성분리스트가 표시되어야 하며, 9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할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 및 야채는 담은 용기(carton)에 상품명, 무게, 원산지, 포장업체의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법이 요구하는 살충·살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육류의 경우 육류 수출국의 기준이 캐나다 농업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재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육류의 컨테이너는 캐나다 『육류 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라벨링을 하여야 한다. 육류에 대한 라벨링은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물 질병 및 보호법(Animal Disease and Protection Act)』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육류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이 있어야 한다.

해산물(Sea Food and Fish)의 경우 캐나다 해양수산부와 해산물 수출관련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국가의 해산물 통관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수출업자는 엄격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육류, 육류제품, 해산물, 식물 및 종자,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등에도 위생기준(Health Standard), 등급 등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통관 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알러지 표시 규정 도입

캐나다 보건부는 2008.7월 식품 알러지로 고생하는 캐나다인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제조업자에게 식품 알레르겐인 글루텐(gluten)과 아황산염(sulphites)이 첨가될 경우 포장제품에 이를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식품 알러지 표시를 강화했다.

식품영양 표시제 도입 추진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함유 영양소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식품 포장에 칼로리량 명기와 더불어 비타민, 칼슘, 철분 등 13개 항목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라면·과자류, 포장김치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양표시제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목재포장 규제 강화

캐나다 식품, 해충, 식물 검시 시관인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는 2009.9.1일부터 중국산 목재포장과 관련하여 캐나다 규정을 빈번히 불이행함에 따라, 중국 패키징 회사에서 자체 발급된 열처리 식물위생 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s)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목재포장은 단순열처리 증명서가 아닌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vention (IPPC) 마크를 꼭 부착해야 한다.

■ 환경관련 규제

캐나다는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가적·체계적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해 1989년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동 법의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1990.3월 환경보호 및 산업관리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환경계획(Green Plan)을 수립하여 범국민 차원에서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수차례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으며, 보수당 신정부는 2007.4월 새로운 교토의정서 대응정책인 EcoAction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방안》

- 전체배출의 51%를 차지하는 산업계에 대해 강제 감축의무 부여(단, 기준년도는 교토의정서상의 1990년 대신 2006년으로 재설정)
 - 단위시설마다 2010년까지는 매년 6%씩, 그 이후는 2%씩 감축토록 의무화(단, 신설설비는 청정 연료 이용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향후 2% 감축)
 - 의무이행 실적 산정은 배출감축을 위한 직접투자, 기후변화기술기금(신설) 출연,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CDM) 참여 등을 다양하게 인정
 - 기금출연을 통한 이행은 2010~2017년간 인정하며 톤당 15~20달러로 환산
 - 1992~2006년간 이루어진 기존의 배출감축투자도 15Mt까지 인정
- 운송분야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규제기준(Clean Auto Pact)을 미국과 함께 마련
- 2012년까지 백열전등을 퇴출시키고, 여타 가전기기 또한 에너지효율 제고방안 강구

《대기오염 개선 방안》

- 2012~2015년간 대기오염원별 배출상한치 설정(2006대비 감축율)
 - NOX 600kt(40%), SOX 840kt(55%), 황성유기화합물(VOCs) 360kt(45%), 입자물질(PM) 160kt(20%)
- 2007.6월까지 구체적인 부문별 상한치 및 이행의무 발효일 마련
-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국내 및 미국과의 배출거래체제 도입을 강구

에너지 효율 규제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에너지 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사용 제품에 관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설정, 캐나다 내에서 수입,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제반제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적용대상 품목은 건조기 등 21개 품목으로, 해당제품을 제작,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정한 품목별 해당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소정의 에너지 효율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시에는 세관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제품은 에너지 효율 인증마크를 포함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ENERGUIDE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폐기물의 수출입 규제

캐나다는 1986.11.8일부터 지정된 위험 폐기물은 바젤협약, OECD 결정 또는 『미-캐나다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정(Canada

-U.S.A. Agreemen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에 따라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관련 물질을 재활용 또는 폐기의 목적으로 수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철 및 슬래그와 같이 국제적으로 위험폐기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의 수출입은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의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규제(Export and Import Hazardous Wastes Regulations) Division B에서 정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환경마크제 실시

캐나다의 환경마크인 환경선택 프로그램(ECP: Environment Choice Program)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1988.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심의절차를 거쳐 ‘에코 로고(EcoLogo)’ 공인마크를 상품 및 서비스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제조, 수입, 소매, 서비스 업체 등 일반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나, 환경마크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짐으로써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마크 획득상품에 대해 인센티브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온타리오주, 앨버타주)는 자체적으로 조달물품 구매 시 환경마크 획득제품의 우선구매를 장려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종래 각의결정 및 가이드라인 명령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나, 1992년 환경영향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이 제정되어 1995.1월부터 동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평가대상사업은 ①연방정부가 사업제안자로 된 경우, ②연방정부가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③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토지 혹은 그 이용권의 매각, 임대 등의 경우, ④연방정부가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이다.

연방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에는 사업자에 의한 환경영향, 주민의견, 환경보전대책 등이 첨부되고, 구체적으로 개별 안전마다 주무관청이 평가범주(scoping)로 포함시켜야 할 평가내용이 제시될 있다.

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따로 3가지 유형(스크리닝, 클래스 스크리닝, 포괄적 조사형태의 환경영향평가)으로 실시되며,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위원회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스크리닝은 주무관청에 의한 비교적 간단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클래스 스크리닝은 환경 평가청이 설정한 모델보고서를 가지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스크리닝의 경우 주무관청이 필요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집하고, 포괄적 조사의 경우 환경평가청이 심사 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조정시에는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자금지원(ecoAUTO Rebate Program)

캐나다 교통부는 2007.3월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연비가 우수한 고효율 자동차의 신규구입 시 최고 2,000 캐나다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 지원프로그램을 발표,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미니밴 등 연료효율이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4,000 캐나다달러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제도(Green Levy on fuel inefficient cars)도 국세청 주관으로 함께 시행되고 있다. 동 정책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촉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들과의 사전 협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되었으며, 자금지원의 기준연비에 대한 근거도 미흡하다는 등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산 자동차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형차(compact

car) 부문의 경우, 일본산 브랜드 차량 1개 모델이 연비 상 경미한 차이의 우위로서 1천 캐나다달러 지원 대상에 유일하게 선정, 막대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어 여타 브랜드들로부터 불합리한 제도 운용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으며, 2009.3월 이후 폐지되었다.

친환경자동차 자금지원 및 부담금 구조

연 비 (리터/100km)	자금지원(캐나다달러)		부담금(캐나다달러)
	승용차	미니밴, SUV, 경트럭	승용차, 미니밴, SUV
5.5 미만	2,000	2,000	
5.6-6.0	1,500	2,000	
6.1-6.5	1,000	2,000	
6.6-7.3		2,000	
7.4-7.8		1,500	
7.9-8.3		1,000	
8.4-12.9			1,000
13.0-13.9			2,000
14.0-14.9			3,000
15.0-15.9			4,000
16.0 이상			

※ 연비 : 시내주행치 55% 및 고속도로주행치 45% 기준 비례평균치

※ 자료 : 캐나다 교통부

친환경 주택개조에 정부보조금 지원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한 주택 소유주에 대해 1회 최대 5000달러, 평생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에코에너지 개조지원 정책(eco Energy Retrofit)을 2007.4월부터 도입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천연자연부가 정한 규정과 신청절차를 따라야 한다.

온타리오 주 Green Energy Act

2009.5월, 온타리오 주는 획기적인 발전차액지원(Feed in Tariff, 이하 FIT)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 유치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처음 3년간 5만여 개 일자리 창출 예상)목표로 하는 Green Energy Act를 발효하였다. 본 법안의 에너지원별 FIT 인센티브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원별 FIT 인센티브 스케줄

Feed-in Triff Price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Ontario August 13, 2010			
Renewable Fuel	Size tranches	Contract Price ¢/kWh	Escalation Percentage ⁵
Biomass ¹²			
	≤10MW	13.8	20%
	>10MW	13.0	20%
Biogas ¹²			
On-Farm	≤100kW	19.5	20%
On-Farm	>100kW≤250kW	18.5	20%
Biogas	≤500kW	16.0	20%
Biogas	>500kW≤10MW	14.7	20%
Biogas	>10MW	10.4	20%
Waterpower ^{12,3}			
	≤10MW	13.1	20%
	>10MW≤50MW	12.2	20%
Landfill gas ¹²			
	≤10MW	11.1	20%
	>10MW	10.3	20%
Solar PV			
Rooftop	≤10kW	80.2	0%
Rooftop	>10≤250kW	71.3	0%
Rooftop	>250≤500kW	63.5	0%
Rooftop	>500kW	53.9	0%
Ground Mounted	≤10kW	64.2	0%
Ground Mounted ^{2,4}	>10kW≤10MW	44.3	0%
Wind ²			
Onshore	Any size	13.5	20%
Offshore	Any size	19.0	20%

※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2009.9월에는 Green Energy Act 조항 내 Local Contents 규정을 추가 발표하였다. Local Contents 규정은 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가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량의 온타리오 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ocal Contents 규정을 두고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 강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쪽과 온타리오 주의 새로운 친환경

제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Local Contents 규정

재생에너지 종류	2009.10.1~변동시기	변동시기 이후
소규모 (10kw 이하) 태양광 PV	40% (변동시기 : 2011.1.1)	60%
대규모 (10kw 이상) 태양광 PV	50% (변동시기 : 2011.1.1)	60%
풍력	25% (변동시기 : 2012.1.1)	50%

※ 자료원 : Ontario Power Authority

2010.8월 소규모(microFIT)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고정단가와 관련 기존 80.2센트/kWh에서 64.2센트/kWh로 축소하였다. 프로그램을 지속을 위해 다소 높게 책정된 지상설치형 태양광 발전 고정단가 축소를 주장해오던 온타리오 주정부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2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처음 주장했던 58.9센트/kWh에서 조금 증가한 64.2센트/kWh로 최종 확정하였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연방정부의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약 100여개의 연방정부 및 기관, 주요 정부투자기관을 대신하여 물품 및 용역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연방정부차원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차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1995.6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주간의 무역장벽 및 상이한 기준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정부간 『주간 교역협정(AIT: Agreement on Internal Trade)』을 체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각 주간에 무역장벽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서부지역에는 『서부지역 무역장벽 축소협정(Western Trade Barriers Reduction Agreement: Western Agreement)』이 있어 서부지역 회사 우대 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서부지역 주들도 AIT 체결 이후 Western Agreement의 적용범위

를 축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T상에는 캐나다 부가가치(Canadian Value added)분에 대한 10% 범위 내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캐나다 제품이나 캐나다 회사로 국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각 주는 동 규정을 적절히 수용하여 상이한 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 : 캐나다 부가가치분에 대한 가격우대제를 실시하고, 캐나다 회사 간 경쟁이 충분할 경우 입찰자격을 캐나다 상품이나 캐나다 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
- 퀘벡주 : 퀘벡주회사 및 캐나다회사 우대구매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점차 AIT 범위 내에서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 유일하게 주정부 조달문제를 법규(Purchasing Commission Act)로 제정,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회사에 대해 우대구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스카추완주 : 서부지역 회사를 우대하고 있다.
- 마니토바주 : Western Agreement주가 적용되나 캐나다 회사 간 자유경쟁에 의한 구매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전력 회사, Liquor Control Board)의 경우, AIT 규정내에서 별도의 구매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자국의 모든 주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부조달협정 편입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까지 주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국내산업 지원 정책

캐나다 정부는 자국 주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지원 동향을 보면, 2008년 캐나다 연방정부 및 퀘벡주정부는 비즈니스 제트기를 생산하는 캐나다 Bombardier사에 신형 제트기 모델인 C Series 개발 지원 명목으로 350백만 캐나다달러와 118백만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9년 미

국 통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개발 지원 명목으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캐나다 연방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2009.3월, 캐나다 정부는 GM 캐나다와 크라이슬러 캐나다에 각각 30억과 10억 캐나다달러의 브리지론을 제공하였으며, 양사의 지분 일부를 획득하였다.

2009.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GM 캐나다와 크라이슬러 캐나다에 대해 자동차 수리 A/S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보증하기 위한 1억8천5백만 캐나다달러 규모의 Canadian Warranty Commitmen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를 위해 미결제 대금을 보호해주는 Accounts Re-ceiveable Insurance (ARI) 프로그램도 확대하였다. 2009.5월, 캐나다 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장치의 할부와 리스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구매하기 위해 Canadian Secured Credit Facility(CSCF)에 10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아울러, 2009.6월 캐나다 정부는 펄프 및 제지 산업 보호를 위해 10억 캐나다달러(9.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 투자장벽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관련 기본법은 『Investment Canada Act』이다. 동 법은 외국인이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기업 직접 인수 시, 캐나다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 직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규모\투자자	WTO 회원국 기업	비 WTO 회원국 기업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312백만 캐나다달러 미만(2009년)	산업부에 신고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 심사요청
312백만 캐나다달러 이상(2009년)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허가심사 요청	

간접투자를 통한 캐나다기업 인수

투자자	WTO회원국기업		비WTO회원국기업	
투자자산 구 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 이하인 경우			
투자규모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50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0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신고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신고	산업부: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투자자산구성	캐나다자산 규모가 전세계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규모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5백만 캐나다달러 미만	5백만 캐나다달러 이상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신고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산업부: 신고 문화유산부: 신고	산업부: 심사요청 문화유산부: 심사요청

※ 자료: 캐나다 산업부

다만, 기존 캐나다 기업인수가 아닌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는 제한이 없이 산업부 및 문화유산부에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각 개별법은 문화, 금융, 에너지, 운송, 통신,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산업부는 2005.7월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Bill C-59)을 추진, 위성기술, 암호기술, 방위산업 등 안보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내각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캐나다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적(國籍)기업 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국내여론이 확산되자,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캐나다 산업부는 2007.7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쟁정책 검토패널'을 가동하면서 외국인투자법도 함께 검토토록 한 바, 2008.6월에 최종 권고안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문화산업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며 캐나다인 원매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 및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지분(minority position)의 공동투자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캐나다 기업 인수는 캐나다에 순이익(Net benefit)이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예: 캐나다 저서 출판 등).

정기간행물 : 캐나다 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간·배포하거나 캐나다 광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간행물사를 신설 또는 인수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허용된다. 캐나다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정기 간행물사에 대한 외국인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캐나다 광고주는 캐나다인 소유지분이 75%가 안 되거나, 캐나다 내용이 85% 이상 되지 않는 간행물에 의한 광고 게재 시 세금 감면(Tax Deduction)신청이 불가능했으나, 1999.5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 국적과 관련 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가능해졌다.

TV 및 라디오 방송 : 방송법에 의거 주식소유 및 이사회 구성 모두 캐나다인에 의한 통제가 최소한 80%(모기업의 경우 66.7%)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다(허가 갱신 포함). 또한 캐나다 방송사업은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에 의하여 규제·감독을 받는다.

영상물 배급 : 캐나다 기존업체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투자는 전매상품(propriety product)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된다.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자가 캐나다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 하에만 허용된다.

기타 분야

운송 : 캐나다 국적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25%로 제한, 연안 운항은 캐나다 선박만이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광업 : 우라늄광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50% 이상 지분허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0.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우라늄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가 산업 성장을 억제시킨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라늄 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움직임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통신 : 1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I Carriers: 전송용량 소유 및 운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직접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

도 외국인이 20% 이내이고 캐나다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동 제한은 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제한이 캐나다 통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2010. 3월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화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어업 :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 지분의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주 및 사스카추완주는 동 주 이외의 지역 인사·기관에 대해 부동산 판매 시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의무 비율 및 기술이전 조건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심사대상 투자의 경우에는 『고용, 자원 가공, 현지부품, 수출, 기술개발 및 이전』 등에 관한 투자가의 의향을 검토하고 있다. 1985년 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캐나다가 투자심사에서 투자를 거부한 경우가 없었으나 2008.4월, 미국 방산업체인 Alliant Techsystems Inc.(ATK)사가 최첨단 위성 기술과 로봇 팔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의 우주항공사인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MDA)사를 13억 캐나다 달러에 인수에 대해 처음으로 불허하였다. 최근 캐나다 기업들의 매각으로 캐나다 내 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에 개입하여 제동을 건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생산, 투자 및 국산품 사용조건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WTO 및 NAFTA 규정에 따라 1997.12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국내생산실적 등에 따른 수입관세 경감조치는 블라우스 등 6개 품목에 한하여 2004년까지 실적과 무관하게 관세 경감조치를 하였으며, 자동차 분야의 非 Auto Pact 멤버에게 주어진 실적에 따른 관세경감 조치도 폐지되었다. Auto Pact 멤버(5개사)들에 대해 국내생산 및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나, 2001.2월 동 특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TV 및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프로그램 방영의 무가 있다. 모든 방송사는 연간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캐나다 프로로 방송해야 하며,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 국영 CBC는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를 방송해야 한다.

지사·사무소 설치 제한

지사·사무소 설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연방투자법령 및 각 주의 등록 및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종전에는 외국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99.6월부터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세제상 지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타지역 발생이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관련 외국의 세법 내용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사가 독립법인이 아닌 이상, 지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나 의무행위에 대하여는 모기업이 법률상의 책임을 갖는다.

금융상의 제한

배당금, 이자소득, royalty 등에 대한 외국 송금 시 원천세가 징수되며 별도의 송금세나 송금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다만, OECD 기준인 부채/자본비율(debt/equity)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자금 차입에 관한 규제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이해당사자(Related party: 자본국 또는 제3국의 같은 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시 과소자본규제(Thin Capitalization)를 받고 있다. 과소자본규제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대여보다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세제상의 제한

1978.2월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진출 우리기업 및 직원들은 캐나다 사회보장제도 의무 가입으로 연간 6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반면, 캐나다 연금법상 귀국 시 일시금 반환제도가 없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한·캐 양국 정부 간 사회보장

면제협정이 체결되었다(1999.5.1 발효). 동 협정의 발효로 인해 캐나다에 5년 이내 단기간 파견 또는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들은 캐나다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되게 되었다.

한·캐나다 양국정부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발효(1980.12월)된 이후 변화된 양국의 경제 환경과 세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에 착수, 2006.9월 총 30개 조항 및 의정서로 구성된 개정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은 비준절차 등을 거쳐 동년 12월 발효되었다. 동 협약에서 양국 정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국의 과세권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타 남용방지 조항을 반영하였다.

■ 경쟁정책

캐나다의 『경쟁법(Competition Act)』은 자유·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사기, 가격차별, 기만광고 등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합병, 거래제한 행위 등은 비범죄 행위로 통제하고 있다.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역효과를 상쇄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우월적 지위(Dominant Position)를 이용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생산 및 배급상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불법화하고 있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적용범위, 일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2001.8월 경쟁제한 행위,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기업군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분야는 그동안 미국잡지의 캐나다판(split-run잡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 8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입잡지에 대한 우편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캐나다 잡지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동 방식이 미국의 제소에 의해 WTO협정 위반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split-run잡지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다시 반발함에 따라, 1999.5월 미국과의 최종합의하에 첫째 12%, 18개월 후 15%, 36개월 후 18%까지 캐나다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였다.

■ 기타 장벽

운전면허 취득

국제운전면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장기체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현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운전면허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온타리오주(1998.12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2000.9월), 퀘벡주(2000.10월), 알버타주(2001.1월), 마니토바주(2003.8월), 사스카추완주(2004.12월)에 이어 2007.11월에는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와 뉴펀들랜드주와도 양해각서를 맺어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되는 지역은 캐나다 전체 10개주 가운데 8개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남은 2개 지역인 노바스코샤주와 뉴브런즈윅주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퀘벡주는 프랑스어권으로 언어, 문화, 관습 등이 여타 주와 상이하다. 이에 따라 퀘벡주는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하고 있어 라벨링, 광고, 상품성분,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프랑스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

캐나다 금융산업은 『연방은행법(Bank Act)』에 의해 규제되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여러 면에서 제한하여 왔다. 과거 은행법은 은행을 Schedule I 은행과 Schedule II 은행으로 구분하여, Schedule I의 경우 어느 투자가도 10% 이상의 지분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외국인 지분은 총지분의 25% 이내), 캐나다에서 금융업을 영위코자 하는 외국은행은 반드시 현지법인 형태로 Schedule II 은행으로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WTO 금융서비스협상 결과에 따라 캐나다는 외국은행도 직접 설치를 허용토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1999.6월부터 시행중이다. 동 개정법에 따라 외국은행은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lending branch 혹은 예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는 full service branch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

으나(Schedule III 은행), 예금업무 취급지점도 15만 캐나다달러 미만의 소매예금(retail deposit) 수취는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금융서비스 개혁 작업반이 1999.6월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는 『금융서비스 개정법안(Bill C-8)』을 2001.6월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동 내용은 캐나다 은행을 자본금에 따라 소형은행(10억 캐나다달러 이하), 중형은행(10~50억 캐나다달러), 대형은행(50억 캐나다달러 이상)으로 구분하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취득제한을 철폐하고,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며, 대형은행에 대해서도 종전 10% 지분취득 상한선을 20%까지 확대토록 하였다. 또한 은행합병 심사절차를 규정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은행 간 합병에 대비토록 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2009년 기준 22개 국내은행(Domestic Bank), 26개 외국계은행 현지법인(Foreign Bank Subsidiaries), 31개 외국은행 지점(Foreign Bank Branches) 등 총 79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며, RBC 등 국내은행 상위 6개사가 은행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은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Canada, www.osfi-bsif.gc.ca)이 담당하고 있다.

▶ 캐나다 단계별 주요은행 현황

구분	개수	주요 은행
국내인가은행 (Schedule I)	22	BMO Bank of Montreal, RBC Royal Bank, TD Bank Financial Group, The Bank of Nova Scotia,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National Bank of Canada 등
외국계은행 현지법인 (Schedule II)	26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한), Citibank Canada(미), J.P. Morgan Bank Canada(미) 등
외국계 은행 지점 (Schedule III)	Full Service	23 ABN Amro Bank N.V.(네), JP Morgan Chase Bank(미), Deutsche Bank A.G.(독), Capital One Bank (미) 등
	Lending Service	8 Credit Suisse First Boston, Union Bank of California 등

※ 자료 : 캐나다 금융기관관리원(OSFI)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1970년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1981년에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토론토에 본점을 두고 토론토 및 밴쿠버에 모두 6개 지점 및 1개 출장

소를 운영하면서 총자산 668백만 캐나다달러, 당기순익 11백만 캐나다달러(2006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2007.12월 캐나다 연방재무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08.8월에 현지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 2009.3월 토론토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450만 명이다. 2009년 기준 한국-코스타리카 교역 규모는 2억5천8백만 달러이다(한국무역협회자료). 이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억2천만 달러로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한 코스타리카의 수입 급감 때문에 2008년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한편 수입액은 1억3천7백만 달러(4% 증가)를 기록, 1천7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 1~9월 기간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억4천5백만 달러, 수입액이 1억5백만 달러로 다시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에 인텔 CPU제품과 커피 등의 농산물을 수출하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제품, 인쇄회로기판(CPU 제조용 반제품) 등의 제품을 코스타리카에 수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미공동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설탕, 커피 등의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완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이외에 특별소비세 등 비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통관 세금은 높은 편이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민주 헌정이 가장 확고히 정착되어 있는 국가로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은(미주 대륙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 반면, 도로·항만 등 인프라가 취약한 점과 특히 최근 들어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코스타리카는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일원으로, 1963년 중미 5개국이 서명한 중미관세코드협정 및 중미관세분류체계(SAC)를 1994년부터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입자유화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어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법규는 없다.

관세율의 경우, 중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율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평균수입관세율은 농산품의 경우 9.4%, 공산품은 2.9%, 전체평균 3.5%(자료 : 대외무역부)로, 외견상 중미공동시장이 WTO와 협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 중미공동시장 표준관세율

품목의 종류	적용 수입관세율
중미 미생산 중간재 및 자본재	0%
중미 미생산 원자재	0%
중미 생산 원자재	5%
중미 생산 중간재 및 자본재	10%
소비재	15%

관세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정부는 관세의 1%를 사회보장재정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긴급재정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관세율이 5%일 경우, 관세는 4%, 긴급재정세는 1%로 구분하여 징수하게 된다. 관세가 0%인 품목의 경우에도 긴급재정세 1%는 부과된다.

한편,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판매세 13%만 부과되고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에서 발효 중인 무역협정으로서는 CAFTA, 캐나다, CARICOM,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파나마와 체결한 것이 있고, 중국 FTA와 싱가포르 FTA는 2010.4월, EU-중미 협력협정(AACUE)는 2010.5월에 각각 협상 타결되었다.

수입부과금

만성재정적자국인 코스타리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수입관세(DAI) 이외에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선택소비세(S.C., 특별소비세의 일종)를 부과하고 있다.

- 선택소비세(5~30%) 부과 품목(관련법 Ley 4961(1972.3.10))
2203, 2204, 2205, 2206, 2208, 2402, 2403, 3208(5%),
3209(5%), 3210(5%), 3211(5%), 3212(5%), 3214(5%), 3305, 3307,
3401, 3402, 4011, 4012, 4013, 8407, 8408, 8415, 8418, 8421,
8450, 8451, 8507, 8509, 8510, 8511, 8516, 8519, 8520, 8521,
8527, 8528, 8702, 8703, 8704, 8706, 8707, 8708, 8711, 8714,
8716, 9504

그리고 모든 제품의 수입에는 관세 이외에 판매세(IVA, 부가세와 유사) 13%가 부과된다. 한편,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산정할 때, 추정이익률제도(M/E)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중고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판매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판매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수입업자가 수입 시 관련 판매세를 미리 납부한다는 취지이다.

추정이익률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판매세를 산정함에 있어, 업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추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다.

관세 산정 기준

코스타리카의 관세 산정 기준은 쌀 등 농산물을 제외하고 종가세(CIF 기준)를 원칙으로 하여 송장에 의해 산정된다. 단, 송장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처음 수입되는 상품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 사정과에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 사정과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세관에 송부, 세관에서 이를 기준 가격으로 정한다. 기준 가격 설정 시 제시해야 하는 자료는 수출국의 현지 판매 가격, 가격구성표, 카탈로그 및 수출업자 소개자료, 수입계약서 등이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Blue Book(미국의 중고자동차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업송장에 기재된 제품가격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블루북 가격 검색: www.hacienda.go.cr/autohacienda/autovalor.aspx). 결과적으로 중고차의 경우 승용차는 79%, 승합차는 49%가 Blue Book이 산정한 가격에 과세된다.

통관절차

코스타리카에 수입된 물품은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창고료는 수입품 반입 15일 이후부터 부과되며, 반입된 지 90일 이내에 수입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품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90일의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전, 세관은 공문으로 수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한다.

세관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이 재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 부과 없이 재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간주되어 재수출 시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며 코스타리카 법령에 따른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관은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관수수료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화물가격의 0.8%정도이다. 통관 시 구비서류로는 수입신고서(Pedimento de Importación),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입허가서(수입 허가 품목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타 증명서(필요한 경우, 예: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허가서 필요) 등이 있다.

- 수입 통관 시 제출 의무서류

-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 ②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 ③ 선하증권(B/L)
- ④ 그 외 코스타리카법으로 지정된 요청서류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 단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신고 단가가 재무부 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동 인증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보고

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자체적인 가격 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입 상품 총액이 천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동 인 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수입신고서가 승인 또는 반려되지 않을 경우 제출 다음날부터 10일의 근무일이 경과하면 수입신고가 자동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나,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제부는 신고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통관 절차

통관사 선정 → 수입신고서 작성 → 제세금 납부 → 세관의 서류 검토 → 화물검사여부 결정 → 화물검사 → 화물 인수

원산지규정

모든 수입 상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미공동시장이나 다른 FTA체결국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게 된다.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이 사용되는데,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원산지 규정은, 신발, 자동차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내 생산자재가 35% 이상 사용되거나(Build-up방식), 역외생산자재를 뺀 비중이 45% 이상일 때(Build-down방식)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입규제

코스타리카는 제조업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고, 소규모 판매상까지도 직접 수입을 하고 있을 만큼 자유로워서, 자의든 타의든 코스타리카 수입관리제도의 기초는 수입자유화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자로 등록만 하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 품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고 있다.

－ 수입 금지 품목: 마리화나, 모르핀 등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 이외에는 없다.

- 수입 제한 품목: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 허가를 받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으로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수입쿼터

코스타리카는 제조업 취약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양자·다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긴급재정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의 생산 품목 보호를 위해 이들 수입국에 대해서는 간단한 수입쿼터제를 마련하고 있다.

- 수입쿼터제 대상 국가 및 쿼터량(일부)

캐나다 : 돼지고기 775.6TM, 밀가루 14,774.6TM,

식용유 1772.9TM, 설탕 6,990TM

칠레 : 천연꿀 100 TM

도미니카공화국 : 닭고기 2,070TM, 우유 2,200TM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불공정 무역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 국내시장 점유율이 25% 이상 되는 제조업체 또는 관련조합은 반덤핑제조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현재 발효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사례는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코스타리카에는 특별한 인증제도는 없으나, 휴대폰, 농산물, 의약품, 식품, 환경공해 관련품목 등을 수입할 때는 전력통신공사, 보건부, 농림수산부, 사회개발부 등 관련 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등록을 요한다. 하

지만 미국의 FDA, FCC 및 유럽 공동체 EC 인증이 있을 경우, 사전허가 및 등록이 수월하며, 판매 시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코스타리카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다른 CAFTA 가입 중미국들과 함께 공동 수입표준 작업을 진행 중이다.

■ 환경관련 규제

코스타리카는 화산, 해변, 하천, 밀림과 다양한 동식물을 바탕으로 Eco-tourism(생태관광)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 개발의 경우에도 산림 자원이나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법, 탄수화자원법, 에너지절약규정, 생물다양성법, 수자원법, 토양관리보존법, 환경기구법 등이 있으며,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는 식물채취거래협약 등이 있다.

■ 품목별 장벽

음식물의 수입 및 등록(Decreto No.26725-S)

코스타리카로 수입되는 모든 음식물은 고위험 품목과 저위험 품목으로 분류하며, 분류된 품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고위험 품목(유제품, 일부 수산제품, 육류 등 미생물 및 잔류약품 검사가 필요한 제품):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 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 특성, 생화학특성 등), 국립 공인 연구소의 화학, 생화학, 성분 분석 증명서,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허가서, 원산지에서 판매 및 일반소비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에 사용하는 증명서
- 저위험 품목: 공인된 전문연구소의 제품특성분석증명서(일반특성, 화학특성, 생화학특성 등), 코스타리카 보건국의 식품유통허가서

일단 등록된 제품은 5년간 유효하며, 추후 갱신도 가능하다. 그러나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등록자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제품은 등록자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도 수입이 가능한데, 이를

경우, 다른 수입업자는 제품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수입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 해당제품의 수입업자로만 등록하면 되나, 이 경우에도 품목당 100달러 정도의 등록비용은 납부해야 한다.

보건부 홈페이지(www.ministeriodesalud.go.cr)에서는 보건부에 등록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코스타리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법인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으나, WTO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시장 개방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미국은 CAFTA 협상을 통해, 입찰시장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경쟁, 동등대우 및 차별금지, 투명성, 공개, 효율 등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두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한편 코스타리카 정부는 조달 행정의 고질적 문제였던 장기 소요 시간 문제와 투명성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반을 둔 전자조달시스템(MER-LINK, www.mer-link.co.cr)을 2010년 8월 오픈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코스타리카 지식재산권 보호는 1949년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국립저작권등록원이 1989년에 설립되어,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파리협약, 베른협정에 가입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일반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문학, 과학, 법률, 음악, 건축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코스타리카 불법 복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용률이 2010년 50%로 집계되어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는 법적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연장불가를 조건으로 20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며, 멕시코의 특허를 소지한 자는 특허소지자가 특허품 또는 특허공정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부여받은 후 3년 이내에 특허를 이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특허소지자가 기술적 또는 재정적 이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산업부는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독점적인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불해야 할 로열티 및 다른 허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지정한다.

만약, 의무적인 허가가 부여되고 2년을 경과하고도 특허소지자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면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상표

관련법에 의거, 상표는 1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무한정으로 10년씩 연장될 수 있으나, 등록 후 최소 3년 이내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비디오 및 오디오에 대한 저작권 보호

특별히 비디오 및 오디오, 책 및 기타 지적 또는 예술적인 재산 및 제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소유자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국립저작권등록원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이들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소재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제품은 동 사실을 밝혀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용 승인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서비스 장벽

이전에는 통신, 보험서비스업은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진출이 불가능했으나, CAFTA 관련 이행법안의 통과로 이 시장도 개방되었다. 통신 사업은 인터넷 서비스 및 무선통신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부분적인 개방이, 보험서비스업은 2011년까지 완전 개방이 합의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이 현지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진입장벽은 없고, 현지에 법인등록을 하고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관광의 경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한편, 미국과의 CAFTA협정에 따르면, 미국에 소재지를 둔 기업도 코스타리카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항공사와 은행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코스타리카에 소재지를 두어야 영업이 가능하다.

■ 투자 장벽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사회 안정, 질 높은 생활여건,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고급인력 보유,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주변시장으로의 접근용이성 등을 내세워 외국 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현지가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

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초기투자 15만 달러 이상 등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대법을 1990년에 제정하여, 전통적인 농업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 및 산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WTO가 소경제 국가들의 세제감면정책을 2015년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2010.1월 코스타리카 국회는 자유무역지대 소재법인 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혁안을 승인했다.

코스타리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천 5백달러 수준으로, 여타 중미 국가와는 달리 단순 노동집약산업의 투자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90년대 중반까지 10여개 회사가 활동 중이던 한국의 봉제 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철수 내지 인근 국가로 이전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Intel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공장, Protector & Gamble, Abbott 등 다국적 제약업체 생산 공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콜센터 등이 코스타리카에 설치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스타리카는 전문 인력을 이용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비교적 앞선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對 중남미 IT산업 진출 거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현 Chinchilla 행정부는 2010~2014년 재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 90억불 유치 목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 기업 투자,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약 규정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공중보건이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제만 없다면 어떤 기술의 도입도 가능하고, 자본투자나 과실송금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고, 다만, 5만 달러가 넘어가는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투자진출 제한분야

(1) 국가독점 부문

통신, 보험, 석유수입의 3개 업종은 국가독점으로 규정되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CA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보험시장 개방요구를 수용하였으며, 2009.1월 CAFTA의 발효와 함께 동 시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해져, 석유수입 이외에는 외국기업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투자제한 부문

외국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전력생산, 관광서비스, 교통운송 부문 등이다.

코스타리카에서 전력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전체 자본금의 35%까지 외국자본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내·외국기업을 불문하고 민간부문의 전력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15%로 제한되며, 개별 민간기업의 전력생산은 20MW까지만 허용된다.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도 국내선 항공사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는 49%까지만 허용되며, 해안선(밀물 기준)에서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지분은 49%까지만 허용된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사업면허 발급에 있어 외국투자기업보다는 자국 자연인 및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해운운송면허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배제하고 있다.

법인설립, 지사 및 사무소 설치상의 제한

코스타리카의 경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이 없고, 외국인 임직원의 영주권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굳이 지사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할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지사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코스타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산화의무 또는 수출의무 부여

투자진출이 코스타리카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산화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중미시장을 목표로 하는 임가공 기업들이므로, 만약 코스타리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관련 무역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중미공동시장 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중미원산지규정이 사용되는데,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된 제품은 역내 생산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중미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원산지 규정은, 신발, 자동차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내생산자재가 35% 이상 사용되거나(Build-up방식), 역외생산자재를 뺀 비중이 45% 이상 일 때(Build-down방식)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임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한 기업이라도 면세로 들어온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완제품의 25%까지를 코스타리카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데, 이 경우에는 관련 원부자재에 대한 해당 비율의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도 여권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없다. 단, 해변의 경우에는 민간인이 구입하는 대신 국가가 민간에 사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해 주는 형태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부동산의 거래 조건은 다른 일반 부동산과는 다르고, 구역이나 점유에 있어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만조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토지가 해상구역의 경계로 설정되며, 원칙적으로 모두 정부의 소유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안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해안에서 50미터까지는 공공장소로서 그 사용이 크게 제한되며, 나머지 150미터 구역은 지방정부에 의해 특별한 조건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반드시 코스타리카 공공등기소에 판매자로 등록된 변호사나 공증사무소를 통해 발급된 공공 절차를 통해 구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소는 구매자가 선택하지만, 부동산에 대출이 있거나 모기지로 묶여있으면, 판매자가 공증사무소를 선택하게 된다.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전체 구매비용의 3~4% 정도로, 이 비용에는 법률비용, 세금과 기타 일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상의 제한

코스타리카는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으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의 외화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이익을 본국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를 철수할 때에도 회수된 투자 금액을 전액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5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코스타리카 중앙은행에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과실송금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업종별로 5~30%의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와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세제상의 제한

앞에서도 여러 번 기술하였듯이 코스타리카는 경제활동에 있어 외국인 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제상에서도 외국기업을 따로 차별하지는 않는다. 현지 투자 법인은 자유무역지대법에 의한 면세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현지 기업과 동일한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닌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코스타리카 측의 사정으로 협상이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이스라엘, 스위스, 캐나다와 협상 중이다. 한편 스페인, 독일, 루마니아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발효된 유일한 조세정보교환협정은 미국과 체결한 것이며, 2010년 아르헨티나와도 체결한바 있으나 현재 미발효 상태이다.

경쟁정책

코스타리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자격조건으로 국가경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자제한에 대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일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

로 봉쇄되거나, 외국인 지분 참여가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으며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독점 부문: 석유수입업
-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전력생산 부문, 관광서비스 부문, 교통운송 부문(세부 내역은 투자 장벽의 투자진출 제한 분야 참조)

■ 기타 장벽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회의 참석, 전시회, 기술 출장 등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관광비자만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출국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은 90일 범위 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한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스타리카로 입국할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바로 입국할 경우에는 황열병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출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취업의 경우에는 초청기업에서 발행하는 초청장과 노동계약서, 신원조회서(전과 조회), 직업 경험증빙 등을 첨부하여 노동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비자는 통상 1년 동안 유효하며,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단기 체류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관광 국가답게, 관광비자라도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는 한국 등 외국의 운전면허증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다. 장기체류일 경우에는, 비자연장을 놓치는 경우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해 놓는 것이 좋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운전면허는 도로안전위원회(CONSEVI)에서 발급하며, 신규 발급 시에는 여권, 체류비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의사검진서 및 발급비용 8달러(4,000콜론)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2년

이다. 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는 여권, 체류비자, 기존면허증, 의사검진서 등이 필요하며, 발급비용은 20달러(10,000콜론), 유효기간은 5년이다.

■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사항

주재국 금융시장 현황

금융 중개 및 보험업종은 GDP의 약 6%를 차지하며, 2008년에는 21%, 2009년에는 15%의 성장을 거두었다.

현지의 주요 은행으로는, 4개 국영은행(Banco Nacional, Banco de Costa Rica, Bancredito, Banco Popular)과 11개의 민간은행(Scotiabank, BAC San Jose, Promerica, HSBC 등)이 있는데, 국영은행은 예금보호가 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민간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예금보호가 되지 않고, 산호세 및 수도권에 점포가 집중되어 있다. 민간은행의 경우, 단기대출, 부동산대출의 비중이 높고, 높은 대출 금리와 낮은 예금 금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이후로 계좌 조회, 같은 은행 간 송금, 공과금납부 등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수도권에는 자동인출기(ATM)도 많이 보급되어 있다.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며 자유롭게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당좌계좌의 경우에는 보통 많은 서류가 요청된다.

금융기관의 주재국 진출과 관련된 장벽

금융업과 관련된 투자제한조항은 없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우수사례

2006~2007년 사이에 금융업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 코스타리카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Scotiabank(Interfin 인수), HSBC (Banex), Citibank(Banco Uno, Cuscatlan) 등이 있으며, 한편 2005년 Banc San Jose은행 지분을 매입하고 2007년 Miravalles 금융그룹을 인수했던 GE Money는 2009년 10월 지점을

닫고 BAC로 서비스를 이전했다.

■ 개선실적

자유무역지대 소재 법인 대상 법인세 부과 법안 추진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지연 전망

2007.10월에 통신시장 개방이 승인된 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2011.9월 까지 3개사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하여왔으나 입찰서 내 일부 모호한 지침 수정이 필요하여 현재 관심사들의 제안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전력 개방 추진

코스타리카는 전력용량확대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력 시장 개방 법안을 2010.8월 국회에 제출했다.

콜롬비아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콜롬비아는, 원칙적으로, 1990년대 초 이래 원칙적으로 용도별 5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 그룹별로 아래와 같이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 1그룹(0%)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 2그룹(5%) 국내 미 생산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산 동물 및 식물
- 3그룹(10%)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산 동물 및 식물 일부
- 4그룹(15%) 국내 생산되는 원, 부자재 및 자본재 일부, 야채류
- 5그룹(20%) 최종 소비재, 육류, 어류, 우유, 버스, 미니버스, 트럭

상기 5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35%, 전후 관세율)와 농산물(15~20% 전후 관세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변동관세율을 적용하는 “price-band” 수입관세를 시행한다.

한편 관세의 종류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가 있으며,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특혜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간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로서, 콜롬비아가 체결한 주요 경제협정 및 이에 따른 특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LADI 특혜관세 :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의거, ALADI(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임.

- 국가별 관세할인율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 0.88 / 볼리비아 : 0.86 / 에콰도르 : 0.72 / 파라과이 : 0.66/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우루과이 : 0.08 등

- ANDEAN 특혜관세 공동시장(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로 궁극적으로 ANDEAN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품목에 0% 관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별, 품목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적용함.
- G-3 특혜관세 : GRUPO DE LOS TRES(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로, 품목별로 특혜관세를 적용(베네수엘라 탈퇴).

콜롬비아 정부는 2008년 대통령령 3271, 3272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발과 의류에 대하여 품목별 지정가격(precio indicativo)을 각각 설정하고, 상기 지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0% 관세를 부과하나, 그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신발에 대해서는 35% 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의류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2009년 대통령령 3280, 3288에 의거 2010.2월 말까지 연장적용).

상기 조치는 콜롬비아 정부가 밀수, 돈 세탁을 제어하고 콜롬비아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도되고 있으나, 종전 중남미 일부국가들이 채택한 바 있는 최저가격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최저가격제에 관해서는 종전에 WTO 규범 저촉 여부관련 법률사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기업 또는 교민 사업가들이 관련 사안에 관한 피해 또는 시정대응조치 등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

비관세장벽

(1) 표준과 규격

콜롬비아 상공부는 민간단체인 ICONTEC으로 하여금 콜롬비아 규격을 정하게 하고 동 규격 적합성(conformity)을 가진 외국상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 규격과의 마찰은 없다.

(2) 정부조달

2003.6월 콜롬비아 정부는 Law816호를 공포하면서, 정부조달과정에서 자국업체와 자국산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상기 법령은 정부조달과정에서 콜롬비아업체에게 콜롬비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20%의 보너스점수, 외국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5~15%의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WTO 정부 조달 협정 옵서버 국가이나 당사국은 아니다. 콜롬비아는 정부 조달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멕시코와 안데안 공동체(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에만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 칠레, 중미3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과의 FTA가 발효되면, 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이들에게도 내국민 대우가 부여될 것이다.

(3) 신규트럭 구입 시 구형차량 폐차 및 관련 보증금 문제

콜롬비아 정부는 신규 트럭 구입 시 구형트럭을 폐차하든지 동 폐차를 할 때 까지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해온바, 2008.6월부터 폐차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보증금을 3배 이상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부장관령(2008년 Decreto 2450)을 발표했다(동 규정은 국내외산 트럭 모두에 적용되며 덤프트럭, 믹서트럭은 면제).

한편, 2009.3.31일 경기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10.5톤 미만 트럭은 상기 규정에서 면제조치 되었다.

수출보조금

콜롬비아는 1994.12.15일 WTO협정을 수락하면서 2003.1.1일부터 수출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2006.12.31일까지 연장 시행한 후 폐지하였다.

■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규범일반

(1) 안데안 규범

안데안 공동체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결정 486(2000년)에 합의하였다.

- 발명특허, 산업디자인, 상표권, 원산지 규정 등
- 내국민, 최혜국 대우 규정
- 저작권에 관한 안데안 결정 351(1993년)
- 식물변종 관련 안데안 결정 345(1993년)

(2) 콜롬비아 국내법

- 헌법 제61조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및 요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토록 규정
 - 산업재산권(대통령령 2592(2000년)/안데안 결정 486(2000년))
 - 저작권(법 23(1982년), 법 44(1993년))
 - 식물변종(대통령령 533(1994년))

(3) WTO 규범

-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법 170(1994년))

(4) 양자협정

- G-3 FTA 제18장(법 172(1994년) :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3국간)
- 콜롬비아-미국 FTA
 - 지식과 연구 결과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접근 허용
 - 협정상 처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전 동의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유전물질 접근 허용 및 유전자원의 사용에 의한 혜택을 공동체에 균형적으로 배분함을 규정
 - 혁신(innovacion)과 기술발전의 증진에 관한 내용을 FTA에 처음으로 규정한바, 이에 따라 양국 간 과기협력의 틀을 마련

- 저작권에 관해서는 콜롬비아 국내법 규범의 본질을 유지하되 인터넷 등 신기술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하고, 사용·용도 특허, 치료 방법특허, 동·식물 발명 특허 등은 불인정

(5)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기관

- 저작권청(DNDA : Dirreccio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 산업·무역관리청(Superind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 콜롬비아 농수산연구소(ICA : Instituto Colombiano Aprove-cuario)

특허와 상표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법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법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년간 내

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

1994.1월 Andean Community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software에 대하여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S/W의 경우 정품사용자에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백업 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기구에 등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서비스 장벽

- 시장개방이 비교적 잘 이행된 분야
 -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시장, 회계/감사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및 관광시장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상대적으로 일찍 이루어 졌음.
- 시장개방이 지체되고 있는 분야
 - 콜롬비아 법에 따라 내국 외국법무법인만 허용되고 있어서, 외국 법무법인은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로서 활동 가능
 - 정보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GATS 협정 4가지 mode 중 cross-border 서비스 불허

-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인정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내에서 지점의 설치를 금지
- 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테스트”(Economic Need Test)를 거쳐야 함.
 - 또한 회계, 기장(bookkeeping), 건축사,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의료 및 치과진료서비스는 거주자에 한하여 상업적 영업활동을 허용
 -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업체에서 일반직의 10%, 전문직의 20% 이상을 외국국적인으로 충원 불가

금융서비스

콜롬비아는 100% 외국인 출자 보험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보험업체의 국내지점 설치에 불허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해상보험 시장 진입도 불허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외국인 금융기관의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형태를 통하여 콜롬비아 금융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금융기관지사는 자본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콜롬비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2004.9월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상업금융기관이 콜롬비아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콜롬비아 내에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Decree 2951).

기간통신서비스

1989년 telecomunic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체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ic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

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콜롬비아는 WTO 협상과정에서,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시장개방의 기준이 되는 WTO reference paper를 채택했다.

그러나 상기 협상에서 callback service를 금지하고, fixed and mobile satellite system 서비스를 양허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economic needs test를 요구하면서도, Economic need test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 중 1) carrier, 2) national and long distance, 3) cellular mobile telephony 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약 70%까지 지분율을 허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까지 cellular mobile phone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시장을 3등분하여 각 market segmentation 별로 2개씩의 독점사업자를 인정하였다.

2003년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PCS 시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하고 정부는 2003.10월 Colombia Movil(Tigo)에게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간 Telefonica(Movistar)와 Comcel이 양분해온 duopoly 체제가 종료 (2009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은 Comcel 70%, Movistar 20%, Tigo 10%)

※ Colombia Movil사는 보고타시와 메데진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전화통신사인 ETB, EPM과 MILLICOM(록셈부르크)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

영화 및 방송시장

1995.1월 콜롬비아 정부는 위성 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하면서, 국내방송시장에서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송비중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Television Broadcast Law of 182/95).

동 법은 방송시간대에 따라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을 달리 규제한다.

- 19:00~20:30(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70% 이상)
- 10:00~19:00(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 20:30~자정시간대(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방영비중은 50%)

국내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기준은 모든 제작과정이 콜롬비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배우의 90% 이상이 콜롬비아 국적인이어야 한다. 모든 외국영화에는 일정액의 특별세가 부과되며, 징수된 세금은 국산영화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

콜롬비아 TV위원회(CNTV)는 2008.8.28일 유럽식 DVN Digital 방송 수신을 채택하였으며 향후 2년 내 25%의 콜롬비아 가정이 Digital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10년 내 전국 가정의 93%에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Digital 방송 사업은 약 1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1999.8월 발효된 “Electronic Commerce Law of 527”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디지털 인증서 발급 등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 2000.9월 상기 법 시행령 1747호를 공포하고, 디지털 인증서 효력 요건 및 디지털 분야 설립법인의 최소자본금 등을 규정
- 2000.5월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에 관한 합의문” 서명

보고타 상공회의소 발표에 의하면, 1997년 이래 전자상거래는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2008년도 콜롬비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119억 달러 정도이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서비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재정투융자를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콜롬비아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용카드사장단, 상원 및 하원 재정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신용카드시찰단이 2003.10. 29~11.3일간 한국 공식방문
- 재경부, 국세청, 삼성전자, LGCNS, 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사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 청취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자원·에너지 분야

(1) 자원현황

- 콜롬비아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페로 니켈, 금, 은, 에메랄드 등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광물의 종류
 - 철광물 : 금, 은, 백금(platinum), 니켈(nickel/Ni), 구리, 철, 망간(manganese/Mn), 납(lead/Pb), 아연(Zinc/Zn), 티타늄(titanium/Ti)
 - 비철광물 : 석탄(세계 제5위 수출국), 에메랄드, 염류(類), 바다소금, 사력층(砂層/gravel), 모래, 찰흙(Clay), 석회암(limestone), 유황(sulfur/S), 중정석(barite), 벤토나이트(Bentonite), 장석(長石) 활석(滑石/Talc), 인산석(phosphoric), 장식용 석재(Ornamental)

석유 확인 매장량, 생산량(백만배럴)

년도	매장량	연간생산량	연간추가발견량	매장량/연간생산량
2005	1,453	192	165	7.6
2006	1,510	193	249	7.8
2007	1,358	194	142	7.0
2008	1,688	215	524	7.8
2009	1,988	245	565	8.1

가스 확인 매장량·생산량

(단위: 109큐빅)

년도	매장량	연간생산량	연간추가발견량	매장량/연간생산량
2005	7,527	236	552	31.8
2006	7,349	248	70	29.6
2007	7,084	266	2	26.6
2008	7,277	319	512	22.8
2009	8,460	371	1,554	22.8

자원현황

항 목	확 인 매 장 량	생 산 량
석 유	14억배럴 세계 38위(중남미 6위)	618천배럴 세계 28위(중남미 5위)
천연가스	1,100억㎥ ³ 세계 50위(중남미 8위)	91억㎥ ³ 세계 47위(중남미 7위)
석 탄	681백만톤 세계 12위(중남미 2위)	4,780만톤 세계 10위(중남미 1위)
니 켈	2,700천톤 세계 9위(중남미 3위)	74.9천톤 세계 10위(중남미 3위)

콜롬비아의 석탄, 석유·가스, 전기, 새로운 에너지지원(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디젤)의 매장량, 생산량 등은 아래와 같다.

● 석탄 부문

- 확인매장량 70억 톤, 현행 생산율로 향후 약 100년간 생산 가능
- 석탄 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연 평균 8%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약 7,400만 톤 생산량을 달성한 바, 2011년경에는 1억 톤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봄(전체 광물 GDP의 55% 차지).
- 카리브해에 인접한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Guajira 주의 Barrancas 와 Cesar주의 Ibirico주는 콜롬비아 석탄 생산의 90% 차지

● 석유·가스 부문

- 석유매장량 추정치(미확인 매장량 포함)는 470억 배럴로 2009~2013년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확인 예상(2009년 확인 매장량은 1,988백만 배럴)
- 석유 연간생산량은 2009년 기준 245백만 배럴이고, 일일평균생산량(2009.1~6월 평균)은 647,000배럴임.

- 가스 확인 매장량은 2009년 기준 8,460 BCF(109큐빅피트)임.
- 2009년도 가스 생산은 일일평균 922백만 큐빅피트, 가스소비량은 일일평균 930백만 큐빅피트로 나머지는 베네수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25년간 생산 가능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 석유부문은 전체 수출의 24%(2003~2008년 기간 GDP의 3.4% 차지)
- 전기부문
 - 콜롬비아는 물이 풍부하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3개의 큰 산맥으로 인해 수력자원이 풍부함.
 - 콜롬비아의 연간 총발전량은 13,300 MW로 이중 수력발전이 67%, 석탄·가스 등에 의한 화력발전이 33%를 차지하고, 기타는 1% 미만임.
-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
 - 바이오에너지(에탄올 10% 혼용 가솔린, 바이오디젤 5% 혼용 디젤)
 - 2005년에 에탄올을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2008년 연간 일일 평균 1,050,000리터를 생산하였음. 2009.9월 기준 일일 평균 1,450,000 리터를 생산, 소비하고 있음.
 - 바이오디젤은 2008.1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현재 4개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 일일 평균 965,000리터를 생산하여 모두 소비하고 있으며, 4개의 프로젝트 추진이 완료되면 하루 700,000리터 추가 생산이 가능함.

(2) 국가기관·법규·정책

광물부문

중남미의 3대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물관련 입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률안정법(Ley de Estabilidad Juridica para el Inversionista) 등
- 광물업무는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가 관장하고 광산법(Codigo de Minas)에 의거 정책을 추진하는 바, 아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 광물청(INGEOMINAS: Instituto Colombiano de Geologia y

Mineria) : 광물자원현황 전반 및 인허가 담당

- 에너지광물기획청(UPME: La Unidad de Planeación Minero Energetica) : 광물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기획 담당
- 광물정보청(SIMCO: Sistema de Información Minero Colombiano) : 광물 정책·현황·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광물개발 인허가 문제는 광물청 이외에 Antioquia, Bolivar, Boyaca, Caldas, Cesar, Norte de Santander 등 6개주에도 위임되어 있음.

● 현행 광물법상의 양허계약 관련 주요내용 :

- 광물 양허 독점 계약(탐사·채굴)
- 내외국인 평등 원칙
- 먼저 신청자 우선 권리(primer en el tiempo, primero en derecho) 원칙
- 개천(corrientes), 하상(cauces de aguas)인 경우 50km²(5000ha) 까지 허용
- 여타 지형의 경우 100km²(10,000ha)까지 허용
- 계약기간은 30년 (탐사기간 3년, 건설·시설설치 기간 3년 포함), 1회에 걸쳐 30년까지 연장 가능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계약서에 언급된 광물이외에 합금 등에 대한 탐사권리가 있음.
- 계약서에 로열티(regalias)와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규정
- 지상광물조사는 환경허가 불요
- 광권소유자(concesionario)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로열티(regalias) 및 임차료(canon superficiario)
- 광물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로열티	생산량의 1~12%	금: 생산량의 4% (충적토(aluvión)관련 계약은 생산량의 6%) 백금: 생산량의 5% 에메랄드: 생산량의 4% 석탄: 3백만 톤 이상 채굴 경우 생산량의 10% (이하경우 생산량의 5%) 니켈: 총생산량 가치에서 총생산비용의 75%를 제한 값의 12% 기타: 생산량의 1~12% (석회암, 석고, 점토 및 자갈은 1%, 철금속은 5%, 비철금속 3%, 염류 12%, 방사성 10%)

제세·부담금	요율	세부내용
임차료	1일당 『1-3×하루치 최저법정 임금(SMLV)』	탐사단계에서 적용되며, 동 금액은 면적규모에 따라 좌우됨 20km ² (2,000 Ha)까지는 1일당 1 SMLV 20-50km ² (2,000-5,000Ha) 의 경우 1일당 2 SMLV 50-100km ² (5,000-10,000Ha) 의 경우 1일당 3 SMLV ※ 1 SMLV(496,000페소 ÷ 30일)=16,563페소(2009.9월)
추가지불		정부가 투자한 탐사구역 입찰의 경우, 정부에 대한 지불금액은 입찰공고때 제시됨

※ 출처 : INGEOMINAS, UPME

● 개정 광물법(2009년) 주요 요지

- 『법 010 및 법 042 (2007년)』
 - 광물법 『법 685(2001년)』 개혁 목적
 - 광권계약자는 3년간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추가탐사기간 필요시 2년씩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탐사 가능)
 - 채굴계약은 20년씩 계속 연장 가능
 - 불법채굴자에 대한 양허문호 기회확대
 - 탐사작업을 위한 환경허가 획득 의무화
 - 광물·석유부문 탐사개발 구획이 민간인 소유의 땅의 경우, 지상 사용에 관하여 땅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판사 참여 하에 해결 가능
- 탐사·개발권자는 용익권(servidumbres)를 근거로 권리주장 가능

석유부문

2004년까지는 콜롬비아 민간업체의 석유생산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부터 석유정책 개혁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탐사·생산(E&P)계약은 2004년부터 석유청(ANH) 주관하에 공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탐사기간 6년
- 평가기간(periodo de evaluacion : 탐사 후 매장량에 관한 상업성 평가) 2년
- 생산기간 24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 로열티(regalias : 원유생산량의 8-25%)와 광구임차료 등 부담

석유부문 제세·부담금

제세·부담금	요율
로열티	8~25%
광구임차료	100,000Ha 까지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2.29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3.06달러 100,000Ha 추가때마다 18개월 이하 또는 동일할 경우 헥타당 3.06달러 18개월 이상일 경우 헥타당 4.59달러 연안 외각지역 헥타당 0.76달러 첫 탐사 기간 12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 면제
	액체 탄화수소 : 0.1162달러/배럴 천연 가스 : 0.1162달러/1000큐빅 피트
고유가치 부담금	생산량이 5백만 배럴을 초과하고 서부텍사스유(WIT)가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계약자는 석유청(ANH)에 미국석유협회(API) 원유기준 중량에 따라 해당 추가금 액을 지불해야함.
생산량의 일정 비율 지불	계약자는 총 생산량 중 입찰 참여시 합의한 일정 비율을 석유청(ANH)에 지불해야함.

※ 출처 : ANH

전기부문

『법 142』(1994년)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광물에너지부 산하에 광물에너지기획청(UPME: Unidad de Planeacion Minero Energetica), 전기가스규제위원회(CREG: Comision de Regulacion de Energia y Gas), 공공서비스감독청(SSPD: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Publicos Domiciliarios) 등이 있다.

발전(generacion)과 판매(comercimilzacion)는 경쟁체제이고 송전(transmision)과 배분(distribucion)은 독점 또는 가격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 발전·송전·배분·판매에 모두 관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에서는 지형이 넓고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별로 서로 다른 발전, 송전, 배분, 판매업체가 관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전과 배분, 배분과 판매 등을 겸하기도 한다.
- 외국 투자자의 경우, 발전부분 참여는 비교적 용이하나, 송전과 배분에는 이미 송전망 또는 배분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 발전·송전·배분·판매업체

- 발전(Generadores) : EPM, Emgesa, Isagen, Epsa, Chivor, Gecelca, Colversiones 등 44개 업체
- 송전(Transmisores) : ISA, Transelca, EEB 등 11개 업체
- 배분(Distribuidores) : EPM, Codensa, EPSA, Emcali, Electricaribe, ESSA 등 23개 업체
- 판매(Comercializadores) : EPM, Isagen, Codensa, Emcali, Electricaribe, Emgesa, ESSA, Comercializar, Dicol 등 75개 업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부문

- 『법 697(2001년)』은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의한 온열기구(calentadores), 바이오가스 창출 태양열판(paneles solares generadores de biogás), 풍력모터(motores eólicos) 등 부문에서 영업이윤세 면제
- 『법 693(2001년)』, 『법 939(2004년)』에 의거하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디젤 개발·사용 증진

(3) 투자절차

광물부문

광물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contrato de concesion : 독점형태) 체결이 필요한 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관심지역 선정
- 양허계약서식 작성(위치지도, 기술정보 등 포함)
- 계약·자금조달 등 관련 계약 제안을 작성하여 광물청(Ingeominas) 또는 안띠오끼야(Antioguia), 볼리바르(Bolivar), 보야까(Boyaca), 칼다스(Caldas), 세싸르(Cesar), 노르페 데 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주에 제출
- 제안서가 수락되면 계약 체결
- 광물환경보험료(póliza minero ambiental)(계약기간, 연장기간 이외 추가 3년 동안 유효하여야 함.) 제출 : 보험료는 탐사기간과 건축·시설설치기간에는 연간 투자금액의 5%, 채굴기간에는 연간생산량(추정치)의 10%에 해당
- 임차료(canon superficario) 지불

- 작업계획(programa de trabajo y obras : PTO) 및 환경허가요청서(solicitud de licencia ambiental) 제출(환경허가는 건설·시설설치·채굴과정에서 필요하나, 2009년 광물법 개정안 발효 시 탐사와 정에서도 필요)
- 작업계획(PTO) 집행 및 채굴시작
- 노동자 사회보장, 광물보전 등 준수 필요

석유부문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5년전에는 연평균 12개의 석유정(pozo)을 시추하였으나, 2007년에는 72개의 석유정을 시추하고, 2008년에는 100개를 시추했다.

- 국영석유회사(Ecopetrol)는 콜롬비아 석유매장량(미확인 매장량 포함)을 47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음.

석유 탐사·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석유청(ANH)과의 탐사·생산(E&P)계약을 체결하여 구획지정(asignacion de áreas)을 받아야 한다.

- 석유청의 3가지 구획지정 방안
 - 직접계약(contratación directo) : 우선 신청자, 우선 배정 원칙
 - 공개입찰경쟁을 통한 계약(contratacion por proceso competitivo) : 동일 조건하에 다수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선정
 - 제안신청(solicitud de ofertas) : 동일한 조건하에 복수의 업체를 초청하여 선정

- 구획지정을 받는 절차
 - 관심구획에 대한 제안서(계약·법률능력, 기술능력, 운영능력, 금융 분석 등 포함) 제출
 - 석유청(ANH)의 제안서 평가 심사
 - 계약체결
 - 환경허가 신청(건설·시설설치·탐사단계)
 - 건설, 시설설치 작업 집행
 - 탐사시작

전기 부문

- 전기부문 민감참여
 - 발전(generacion) 활동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배분에는 좀 더 제한적 참여 허용, 송전에는 민간참여 제한(『법 142 및 법 143 (1994년)』)
 - 광물에너지기획청(UPME)은 발전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를 작성·배포
- 전기발전부문 참여절차(소관기관 : UPME)
 -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 제출
 - 금융·행정 계획 제안
 - 환경진단승인 요청
 - 토지구입안 통보
 - 송전망연결요청서 제출
 - 화력발전소의 경우, 에너지(combustible)구입 계획 제출
 - 디자인 제출
 - 환경허가 신청
 - 발전업체는 전기매매등록청(ASIC : Administrador del Sistema de Intercambios Comerciales)에 주요시장 에이전트로 등록
- 수력발전소 건설 참여
 - 콜롬비아 내에는 수력발전소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동 참여를 위해서는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부문

- 바이오 에너지부문

-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디젤 작물을 경작, 생산하는데에는 계약이나 허가는 별도로 필요 없음.
- 팜 경작의 경우 농림부와 국세청(Dian)에 등록하면 소득세를 면제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을 가솔린, 디젤과 섞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 투자환경

일반적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는 내국민 대우를 받고 있다. 외국인 100% 투자는 국방관련분야와 유해물질 제조 등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고 있다.

투자유치 제한 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문(콜롬비아 정부가 규정하는 공공이익 부문)

- 방위산업
- 유해물질 제조 및 유통
- 금융 및 보험
- 자원개발
- TV 중계 등

외국인 투자자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투자금액을 언제든지 재반출해갈 수 있다(2008.10월 법 제2080호로 개정).

■ 노동시장

임금수준

콜롬비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임금지수는 최저임금으로서 2009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496,500페소+교통보조금 59,300페소로 총 556,200페소(약 278.10달러 = 2,000페소)이다.

직종별, 직위별 임금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비 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50달러 수준에서 고용이 가능하나, 전문기술 보유자,

혹은 직원을 관리하는 책임자급의 경우 부문별로 월 2,000~3,000달러 수준, 그리고 중견기업의 전문 경영인의 경우 월 10,000달러 이상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정 인건비 구조

기본월급 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으로는,

- 유급휴가 : 매년 working day 15일이 주어지고 연말에 남은 휴가는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
- 퇴직금 :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연 1회 지급.
- 퇴직금 발생이자 : 퇴직금 한달 분에 대한 이자 12%를 퇴직금과 함께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지급.
- 상여금 :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지급
- 법정 사회보장세
 - 연금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6.50%로 본인이 4.125%, 고용주가 각각 12.37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또한, 연간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의 4~15배 사이인 경우 추가로 1%를 연금 공단에 의무적으로 기부하게 되어있다. 이 때에도 사용자와 본인 부담이 위와 동일.
 - 건강보험 : 납부요율은 총 표준소득월액의 12.50%로 본인부담이 4.00%, 사용자가 각각 8.50%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
 - 산재보험 :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업종별 요율(보험 사고시)에 따라 소득의 0.52222~6.96%사이에서 납부.
- 가족보조기금 : 모든 기업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보조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월 급여의 9%를 납부.

법정 근로시간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근무 시 지급률은 주, 야간, 휴일에 따라 요율이 틀리며 1일 2시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음. 또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연장 근무 시에는 고용주가 사전 또는 사후에 노동부에 연장근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평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25% 추가지급
- 평일 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지속 야간근무자 : 시간당 임금 +임금의 35% 추가지급
- 휴일 주간 : 시간당 임금 +임금의 75% 추가지급
- 작업 교대제도(work shift)
 - 고용주와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당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속적 교대작업(successive work shift)을 허용하는 고용계약 체결 가능
- 작업시간 선택제도(flexible daytime shift)
 - 상기 제도는 주당 48시간을 주당 6일에 걸쳐 최대한 작업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고용주가 1일 최소 4시간 최장 10시간 범위 내에서 주당 48시간의 작업시간을 6일에 걸쳐 배분하면, 초과작업 수당을 지급 불요

노동조합 성향

콜롬비아 헌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 의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최소 구성인원은 25인(기업의 수와는 무관)이며, 노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단위기업의 최소 종업원 수는 5인이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1) 단위 기업별 노조, 2) 직능별 노조, 3) 산업별 노조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법” 기본 원칙

- 내국민 대우 :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보편성 : 콜롬비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가 보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단, 1) 국가안보, 2) 콜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 제한을 받고 있음.
- 포괄적 허가 : 상기 국가 안보 및 핵폐기물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사전허가(prior approval) 없이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산업, 광업, 증권시장 투자 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정해진 국내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적정보상 적용 : 1999년 헌법 개정 시 “보상 없는 국가수용”을 규정한 제58조 삭제로, 모든 국가 수용 절차에 있어서 적정보상 원칙이 확립됨.
- 2005년 투자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 계약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대(3가지 유형)

- 콜롬비아 정부는 고용창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와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ingle Enterprise Free Trade Zone)를 시행하고 있는 바(법 1004/05, 대통령령 383/207 및 4051/2007),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 재화, 서비스에 대한 15% 단일 소득세
 - 해외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 해외로부터 구입되는 기초재료, 부품, 최종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외국시장에 대한 상품판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해외수출시 콜롬비아가 당사국인 무역협정 혜택 향유
 -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가공·제조 시 콜롬비아 원산지 인정 등(단, 페루는 불인정)
- ※ 현재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는 바랑끼야, 보고타, 깔리, 꾸꾸타, 라데바이다, 빨미라, 산따 마르따, 소뽐, 리오네그로(이상, 각 1개) 까르파헤나(2개)에 총 11개임.
-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지대(FTZ) 밖에 소재하는 신규 기업이 “단일 기업” 자유무역지대(SEFTZ)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유무역지대(FTZ) 체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FTZ)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콜롬비아 현지법

인 또는 외국기업지사, 테크노공원, 항구업체, 건강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며, 재생 불가한 자연자원의 탐사·활용·추출 관련 기업, 금융서비스 관련 업체, 국가양허사업, 가정용 유틸리티 관련 업체 등은 제외되는 바, 관련 자격요건은 재화의 제조·생산·가공업자, 서비스제공자, FTZ 운영업자 등에 따라 상이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창출과 투자금액은 필수 요건임.

자유무역지대 혜택 주요 자격요건

사업 분야	최소 투자금액·고용창출 요건
Agribusiness(바이오 연료)	14.9백만 달러/500명(3년내)
재화	29.8백만 달러/150명 직접 고용(3년내)
서비스	2~9.1백만 달러/500명, 9.1~18.3백만 달러/350명, 또는 18.3백만 달러/150명 이상
건강	총 고용의 50%는 신규고용 나머지 50%는 제3자에 의한 간접고용
항구	29.8백만 달러/20명 신규고용 및 50명 제 3자에 의한 간접 고용
기존 투자	29.8백만 달러이상의 기존 투자 보유/ 137.5백만 달러 신규투자

※ 상기 투자금액은 1달러=2,500페소로 산정한 것임.

(3)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 손비인정, 2) 조세감면, 3)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ncome deductible expenditures(손비인정)
 - － 국내조세 부담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
 - － 고정자산의 고속 감가상각 허용
 - － 투자자산에 대한 상각제도 허용
 - － 환경관련 설비투자의 손비 인정
- Exempt Income(조세감면)
 - － 해외로부터 기재한 원리금 상환 금액
 - － 업종별로 상이한 조세 감면 제도 시행
- Tax Discount(세액 공제)
 - － 이중과세의 조정 허용

- 조림분야 투자액의 20% 범위 내
- 기초산업 분야 중장비 수입에 따른 부가세

외국인 투자관련 인프라 현황

외국인투자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1) Bogota, 2) Medellin 지역 외국인 투자 인프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타

■ 항만시설

- 수도인 보고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Buenaventura 항으로서 보고타 서쪽 497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함.
- 카리브 연안쪽 항구로는 1,125킬로미터 떨어진 Cartagena 항, 1,008 킬로미터 떨어진 Barranquilla 항, 965 킬로미터 떨어진 Santa Marta 항 등임.

■ 육상 도로망

- 보고타는 내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주요 육상 도로망이 수도를 경유하고 있음.

■ 항공 수송망

- 보고타 시 외곽에 위치한 El Dorado 공항은 콜롬비아의 주요 국제 공항으로서 주요 외국도시를 연결하는 정기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음.

(2) 메데인

■ 항만시설

- 콜롬비아 최대 산업 도시인 Medellin은 보고타에 비해 연안에 보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 Buenaventura 항은 504킬로미터, Cartagena 항은 632킬로미터, Barranquilla 항은 749킬로미터, Santa Marta 항은 840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 육상 도로망

- 콜롬비아 제2의 도시인 Medellin은 주요 육상교통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Buenaventura 항구와는 철도로 직접 연결됨.

■ 항공 수송망

- Medellin 외곽에 Olaya Herrera 공항이 있으며, 수출자유지대가 있는 Rionegro 인근에 Jose Maria Cordoba 공항이 있음.

외국인 투자 장애 요인

(1) 국내 치안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문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대는 상업적 성격의 도시로서 치안이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2) 빈번한 투자관련 법령 수정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게릴라문제와 빈번히 개정되는 국내법령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빈번한 법령 개정에 따르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콜롬비아 내 투자와 신뢰증진법(Law that Promotes Investor's Confidence in Colombia)”를 제정하였다.

- 이 법의 핵심은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이 투자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경쟁국 진출 동향

2002.8월 Uribe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민주안보(Seguridad Democrática) 정책을 추진하면서 치안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외국인투자가 급신장하고 있다.

2009년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세계경제 위기 영향으로 2008년 10,564백만 달러 대비 약 32% 감소한 7,201백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바, 2008년도에 이어 에너지·광물 부문이 총 투자 규모의 약 79%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 반면, 석유와 통상투자 부문은 22%(24억 달러), 39%(6.4억 달러)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콜롬비아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 활발한 FTA 체결 추진, 법적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유치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총액 하락
 - 90.2억 불(07)→105.6억 불(08)→72억 불(09)
- 석유·광물 분야의 대콜롬비아 외국인투자는 06년부터 광산인수, 석유 생산·매장량 증가에 따라 동 부문에 집중되는 추세

2009년 기준 우리나라는 6.7억 달러 규모의 대콜롬비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는 5천7백만 달러로 콜롬비아에 대한 투자진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상품수출 이외의 인프라프로젝트 및 기술서비스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리 업체들이 열세한 이유는 언어, 문화적인 차이, 입찰관행과 절차에 대한 경험부족, 인적네트워크 역량 부족, 현지 법률 지식 미흡 등에 기인함.

▶ 대콜롬비아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백만 달러, 퍼센트는 전체투자대비 부문별 투자의 비율)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4분기까지)	
석유	1,124.6	11.0%	1,995.0	30.0%	3,333	36.8%	3,409	32.2%	1,523.9	31.1%
광물	2,157.2	21.0%	1,782.5	26.8%	1,100	12.2%	1,938	18.3%	1,716.2	35.0%
금융	246.5	2.4%	464.2	7.0%	1,319	14.6%	1,095	10.3%	287.1	5.9%
제조업	5,513.0	53.8%	803.0	12.1%	1,867	20.6%	1,748	16.5%	758.1	15.5%
요식업	304.8	3.0%	523.2	7.9%	803	8.9%	1,049	9.9%	171.3	3.5%
수송, 창고	1,020.5	10.0%	1,060.6	15.9%	414	4.6%	853	8.0%	254.8	5.2%
건설	146.3	1.4%	156.3	2.3%	210	2.3%	380	3.6%	126.5	2.6%
기타	-261.0	-2.5%	-128.8	-1.9%	1.7	0.0%	128.8	1.2%	58.6	1.2%
합계	10,252	100%	6,656	100%	9,049	100%	10,600	100%	4,897	100%

※ 출처 : Proexport, 중앙은행

콜롬비아 최근 국별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전체투자대비 국별 투자의 비율)

순위/국가		2006		2007		2008	
1	미국	1,524.1	22.9%	1,389.1	15.4%	1,799.8	17.0%
2	영국	17.5	0.3%	34.9	0.4%	199.7	1.9%
3	스페인	492.0	7.4%	289.0	3.2%	563.8	5.3%
4	안달라	—	0.0%	1,019.9	11.3%	1,184.5	11.2%
5	멕시코	31.4	0.5%	340.4	3.8%	411.8	3.9%
6	파나마	239.7	3.6%	477.2	5.3%	759.6	7.2%
7	버진아일랜드	349.2	5.2%	69.6	0.8%	8.7	0.1%
8	버뮤다	7.6	0.1%	12.4	0.1%	31.4	0.3%
9	브라질	19.5	0.3%	529.0	5.8%	125.1	1.2%
10	케이만제도	158.7	2.4%	131.2	1.4%	—	0.0%
11	프랑스	3.8	0.1%	139.3	1.5%	70.3	0.7%
12	캐나다	18.5	0.3%	8.0	0.1%	51.9	0.5%
13	스위스	16.6	0.2%	43.1	0.5%	56.7	0.5%
14	룩셈부르크	109.1	1.6%	11.0	0.1%	2.5	0.0%
15	베네수엘라	59.4	0.9%	33.8	0.4%	0.7	0.0%
16	칠레	2.2	0.0%	45.7	0.5%	44.8	0.4%
17	바하마	7.3	0.1%	5.7	0.1%	8.8	0.1%
18	독일	1.6	0.0%	4.4	0.0%	52.1	0.5%
19	우루과이	9.4	0.1%	16.5	0.2%	12.0	0.1%
20	호주	0.6	0.0%	7.1	0.1%	3.9	0.0%
21	일본	0.6	0.0%	9.2	0.1%	13.0	0.1%
22	아일랜드	38.1	0.6%	4.5	0.0%	1.9	0.0%
23	페루	2.0	0.0%	13.2	0.1%	16.0	0.2%
24	네덜란드령 안달라	—	0.0%	0.5	0.0%	32.9	0.3%
25	이탈리아	8.8	0.1%	10.6	0.1%	11.2	0.1%
26	스웨덴	0.4	0.0%	0.7	0.0%	0.5	0.0%
27	대한민국	4.5	0.1%	36.3	0.4%	0.3	0.0%
28	아르헨티나	3.0	0.0%	3.9	0.0%	4.3	0.0%
29	아루바	0.1	0.0%	15.5	0.2%	1.2	0.0%
30	코스타리카	4.1	0.1%	2.2	0.0%	10.0	0.1%
31	기타	44.6	0.7%	-808.9	-8.9%	-348.6	-3.3%
Total		6,656.0	100%	9,048.7	100%	10,600.2	100%

※ 석유부문투자액, 이익금 재투자액은 제외

※ 출처 : Proexport

■ 분쟁해결

콜롬비아의 사법제도는 프랑스식을 따르고 있는바,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는 상공감독원(Superintendent's Office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소관하며, 파산·부채조정절차 등은 회사감독원 Superintendent's Office of Companies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타, 메데진 상공회의소는 콜롬비아와 외국인간의 분쟁에 경험 있는 중재인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절차와 요율을 가지고 있다. 중재판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

콜롬비아는 외국판정의 집행에 관한 UN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상호주의와 아래를 조건으로 외국 판결과 결정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 소송 제기 시 콜롬비아 부동산권리와 관계되지 않아야 함.
- 공공정책 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외국 적용법규에 따라 상소될 수 없는 판결·결정이어야 함.
- 콜롬비아 법원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어서는 안 됨.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관세율 체계는 HS체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를 사용하고 있으며 트리니다드토바고는 Caribbean Community(CARICOM)의 일원으로서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외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한다. 대외공통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트리니다드토바고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물품세(excise duties)가 1998.7월부터 0~40%에서 0~20%로 감소되었다. 또한 과세품의 운임, 보험료 포함(CIF: Cost, Insurance & Freight) 가치의 15%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주요품목별 관세율

- 원재료 : 승인된 산업용 원재료는 일반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됨
- 기계류 : 설비 및 기계류는 무관세이거나 2.5퍼센트의 관세 부과

수입부가금 등

■ 물품세

주류에 대해 물품세가 붙으며 이는 리터당 20 TT센트에서 148.95 TT 달러까지 다양하다.(1미불 = 6.22TT 달러) 담배에도 역시 물품세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

수입품 및 상품·서비스 공급 가치의 15%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된다. 트리니다드토바고로 수입되는 상품의 총가치는 상품의 운임, 보험료(CIF: Cost, Insurance & Freight) 및 기타 관세, 세금, 수입품 통관 관련

요금을 포함하여 책정, 사업자들은 내국세 세입국의 부가가치세 행정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1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연간 200,000TT달러 이상의 사업 활동을 하거나 상품 공급을 하는 개입사업자, 기업, 합자회사, 합작투자사업, 비법인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의 활동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수의사를 제외한 의료, 치과, 병원, 안과, 준의료 서비스
- 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서의 훈련 및 교육
- 특정 버스 및 택시 서비스
- 부동산 중개업
- 공공우편서비스
- 주거지 임대
- 도박업 및 복권 관련 사업

부가가치세를 위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행정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VAT 1 및 VAT 2)를 작성해야 한다. VAT 1은 상품 공급과 관련된 정보 및 내국세 수입국 신고번호를 필요로 하며, VAT 2는 이름, 주소, 이사진 서명, 회사 구성원 등의 장부가 필요함. 이와 함께 동봉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증명서 원본 또는 등록증명서 원본
- 법인과 관련된 서류 원본

이와 함께 회사 이사진이 서명한 1년간의 자금수지계획(cash flow projection) 및 사업 착수시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증명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등록 번호가 나와 있으며 모든 발행된 부가가치세 관련 송장에 동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수입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이 요구된다.

- 송장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
- 보험 증명서(필요한 경우)
- 보건 또는 위생 증명서(농업부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
- 수입 면허(통상산업부 요청으로 적용되는 경우)

만약 상업용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중개인(Customs Broker)을 고용해서 필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상업적 및 비상업적 수입업자 모두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세관신고서(C82) 4장 작성
- 세관신고서(C82)를 아래 리스트에 있는 서류들과 함께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세관 직원이 세관신고서(C82)에 서명을 하고 관세와 세금이 얼마인지 평가서를 주며 그 외 다른 모든 서류들도 돌려줌.
- 세관신고서(C82) 및 평가서를 가지고 세관 출납원에 가서 모든 명시된 세금 및 관세를 지불함. 서류들은 확인 및 통계 정보 추출, 관세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ASYCUDA(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에 스캔됨.
- 출납원이 주는 영수증 및 모든 서류들을 갖고 물품이 수입되고 세관 검사가 시행되는 수입/수출소(Import/Export Station)로 감.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세관 검사가 통관항에서 시행됨.

※ 상품 수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

1. CARICOM 지역 송장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CARICOM 지역으로 들어가는 어떤 상품에도 이것이 필요함)
2. 공급업자 송장
3.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4. 수입 면허 (수입 제한품목에 나와 있는 아이템들을 수입하는 경우)
5. 수입업자가 서명한 C75 또는 C76 서류 신고 (수입업자와 공급업자간 진행중인 수요-공급관계가 있는 경우)
6. 원산지 증명서 (공급업자가 제공)

수입 규제

(1) 수입 금지

관세법(Section 45 of the Customs Act 78:01)에 따라 특정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적절한 수입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한되며 무기류, 꿀, 장난감 총, 음란물 등은 압수.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은 경찰 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2) 수입 허가

트리니다드토바고로 들어오기 위해 수입 면허를 필요로 하는 몇가지 품목들이 있다. 면허가 필요한 상품 수입을 원하는 수입업자들은 통상산업부 및 관광부로부터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품 선적에 앞서 면허 신청이 선행되는 것이 좋으며 만약의 경우 면허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수입 면허가 필요한 품목들은 수시로 갱신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통상산업부 또는 관광부 면허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수입 면허를 필요로 했던 거의 모든 비석유 제품 및 대부분의 농산품이 현재 수입 제한 리스트에서 빠졌다. 가금류 및 설탕은 수입 시 추가요금 이 부과되며 수입승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들이 필요하다.

-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 공급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입 상품 설명 및 비용
- 원산지 및 선적지
- 수입 상품의 최종 사용 목적
- 서명

특히 무역을 위한 수입의 경우, 신청자는 내국세 수입국 증명서(Board of Inland Revenue Certificate)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고용인(employee), 개인사업자, 합자회사 및 기업들은 세금 지불 및 신고를 위해 법적으로 내국세 수입국(Board of Inland Revenue)에 등록하고 신고 번호(file number)를 받는다.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들과 함께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 및 합자회사의 경우 P11 양식을, 개인사업자는 P10 양식을 사용한다.

- 기업의 경우
 - 법인/등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이사진 성명 및 신고 번호
 - 이사진 공지문 원본 및 사본
 - 주소 공지문 원본 및 사본
 - 수익률 (필요한 경우)
-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등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필요한 경우)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수익률 (필요한 경우)
- 고용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고용 관계 및 봉급 일자가 명시된 고용인(employer) 레터
 - 종전 고용연수에 대한 고용인의 증명
 - 수익률 (필요한 경우)
- 합자회사
 - 합자회사 각각의 이름 및 주소
 - 합자회사 각각의 내국세 수입국 신고번호 증명: 등록증명서 및 합자 동의에 대한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수익률 (필요한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덤핑 또는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된 상품 가격과 경쟁할 수가 없어 트리니다드토바고 지역 생산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산업부가 설립한 반덤핑 당국이 이를 조사한다. 만약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정되면, 반덤핑 당국은 우선 조치로 수출업자에 30일내에 이와 관련된 수출을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만약 30일 이후에도 수출이 계속되는 경우 일정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이때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는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필수적 정도로만 부과된다.

■ 표준, 검사, labeling 인증 관련 장벽

표준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중량 및 도량법에 있어 미터법 또는 영국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표준국(Trinidad and Tobago Bureau of Standards)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업업체들에 표준을 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labeling

라벨은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복에 표시되는 라벨에는 사이즈, 섬유함유량,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또는 등록상표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판매전 사전 포장된 제품의 라벨은 유통기한, 성분 리스트, 순함유량, 방부제, 색소, 첨가제, 향료, 상표 또는 상표명,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규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주요 산업 또는 개발 활동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 환경 승인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환경관리국(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에서 발급하는 환경무해증명서가 필요하다. 환경무해증명서를 적절한 시간내에 획득하는 것이 개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생소한 절차도 과정을 터무니없이 지연되게 만들 수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트리니다드토바고 다수의 정부 기관들은 세계은행조달지침(World Bank procurement guidelines)에 따라 자신들의 조달 모델을 만들어 왔다. 정부 조달 관련 입찰은 대부분 중앙입찰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입찰위원회는 입찰서류를 수령, 검토하고 입찰자가 중앙입찰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입찰 정부 부서로부터 받은 모든 서류들이 검토되어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지면, 중앙입

찰위원회는 공개적 또는 선택적으로 입찰을 모집하며, 입찰 고객이 되는 정부 부서는 수요 평가를 수행하고 동 수요에 대한 적절한 자금 조달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중앙입찰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하단에 나와 있는 각 부문 입찰 평가에 대한 다음의 기본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회사의 일반 요건 및 조직
 - 유용한 인력 및 설비 자원
 - 회사 경력 유사성 / 이전 성과 / 실적
 - 자금력
- 상품 공급 관련 입찰
 - 회사 조직 형태 및 구조
 - 이전 성과 / 실적 / 신뢰도
 - 규격 적합성
 - 조달기간 / 완료기간
 - 인력 훈련 능력
 - 가격 / 할인 가능 가격
 - 제조 및 모델
 - 예비 부품 유용성
 - 보증 제공 및 유지 서비스 여부
- 건설 관련 입찰
 - 회사 조직 구조
 - 주요 업무 능력 /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경험
 - 건축 능력 / 기술 능력
 - 회사의 작업량
 - 회사가 이전에 수행한 최대 가치의 계약
 - 계획 방법 / 실행 프로그램
 - 자금력 / 회사의 연간 매출
 - 조직 형태
 - 이전 성과 / 실적

- 인력 훈련 능력
- 규격 적합성
- 보증 제공 및 애프터서비스
- 조달기간 / 완료기간
- 지불 조건
- 비용

■ 지식재산권 보호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외국계 기업의 자국 비즈니스 참여에 많이 개방화되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무역 및 투자 환경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로서 1997년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을 현대화하였으며 현재 트리니다드토바고내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에서 담당한다. WTO는 트리니다드토바고를 2006.6월의 TRIPs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참여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다음의 권한들을 보호한다.

- 상표
- 특허
- 저작권
- 산업디자인
- 집적회로
- 지리적 표시
- 신제품

■ 투자 장벽

외국인투자 유지정책 기본방향

트리니다드토바고는 1992년 이래로 대부분의 투자 장벽들이 제거되어 투자에 개방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한국과 경제기술협

력협정, 비자면제협정, 투자보장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국과 이중과세협정, 양자투자협정 및 지적재산권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 5년간 트리니다드토바고에 들어간 전체 외국 투자액은 약 60억 미불 정도이다.

현재 통상산업부가 언급하고 있는 투자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원자재, 기계류, 승인된 산업 프로젝트용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양허
- 이윤 송금 및 본국 송환금 세금 면제
- 이윤에 대한 법인세 및 이익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회계인센티브 법 및 관광개발법 적용)
- 낮은 대손상각 규정
-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한 훈련 보조금
- 산업단지 및 개발산업수용지에 대한 규정
- 수출 신용 보험
- 이중 조세 감면
- 생산의 80퍼센트를 수출하는 기업의 자본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투자우대조치

● 수입세양허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지역·해외투자자 및 지역 생산업자들에게 수입세를 양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관법 56조에 수입세양허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개발을 독려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생산업자들은 생산비용감소와 관련해서 수입세양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세양허 신청에 관심이 있는 당사자는 “투자프로젝트 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an Investment Project)”를 통상산업부를 통해 획득,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하단에 있는 서류 원본 및 사본 1통을 신청서와 동봉하여 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 법인증명서 / 등록증명서
- 조합 정관
- 이사진 인적사항에 대한 등록증명서

- 타당성 기술보고서 / 사업제안서
- 향후 5년간의 재무계획
- 도시 및 농촌 계획법의 승인

신청자의 서류를 수령한 후, 통상산업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빠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수입세양허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내에 통상산업부는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 신청자 회사 방문
- 제출 서류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설명 요청
- 시장 조사 실시
- 신청에 대한 평가보고서 준비

수입세양허를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는 부적절성의 이유가 명시된 서한을 통해 공지된다. 수입세양허를 받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에게는 통상산업부 승인 후 2일내에 서한이 통지되며, 수입세양허를 받는 당사자는 수입을 원하는 품목 리스트 및 품목의 양과 관세 번호가 명시된 수입면허신청서를 통상산업부 통상면허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품목리스트에는 승인된 생산품으로 허가된 품목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세금 혜택

트리니다드토바고 재무인센티브법(Fiscal Incentives Act)은 다음의 조건으로 허가된 기업들이 승인된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최대 10년의 세금양허 혜택을 제공한다.

- 5천만 TT달러(8백 3십만 미불)을 초과하는 투자를 하는 자본집약적기업
- 상품을 오직 수출을 위해서만 생산하는 수출집중기업
- 상당부분 지역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

세금양허 혜택은 자유재량에 의한 것이며 통상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조건으로 허가된 기업(지역 법인화 되어있어야 함)의 경우 승인된 프로젝트 건설 관련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으며, 세금 면제는 이익 배당금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경쟁정책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반경쟁법(Anti-Competition Laws)을 제정하여 불공정 사업 사례로부터 무역 및 상업을 보호하고 있다. 2006년 제안된 공정무역법안(Fair Trading Act)은 13조(No. 13)에서 공정무역위원회(Fair Trading Commission)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의 공정 경쟁을 추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안 3부(Part III)는 특정 합병, 반경쟁협정, 독과점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나, 아직까지 법적 효력이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파나마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제도

(1) 개황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 국가들과는 1970년대 쌍무협정에 의거해 일부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와의 특혜무역협정 내용은 협정 당사국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한다.

파나마가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다. 이들 국가와는 교역가능 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특혜무역협정의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 경제 블록에 속해 있는 특정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관세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와는 2002.3.6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이뤄졌으며, 2003.4.11일 발효되었다. 대만과도 2003.8.21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4.1.1일부로 발효되었다. 싱가포르와는 2006.3.1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2006.7월에 발효되었으며, 칠레와는 2006.6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8.3월에 발효되었다. 캐나다와는 2009.8.11일 FTA협상을 완료하였고 2010.5.14일 서명하고 의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EU와는 SIECA 소속국가로서 중미-EU간 FTA 협상을 종료하여 2010.5.18일 서명하였으며, 콜롬비아와는 양자간 FTA 협상을 진행중이다. 페루와는 협상을 2010.11월부터 시작한다. 한편, 파나마는 EU 일반특혜관세제도 우대조

치인 “GSP 플러스” 적용을 위한 자격 갱신에 실패하여 2009년부터 동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부분관세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는 쌍무 특혜관세협정이 적용된다.

(2) 관세율 체계 및 관세율 수준

파나마는 1994.12.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수입관세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의 관세분류를 위한 상품 분류는 21부, 97류, 1,241 Partida, 5,019개 Sub-Partida, 8,298개 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1999년 WTO 가입에 따라 1998.1.1일부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파나마의 관세율 수준은 쌀, 우유제품, 자동차 3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을 15%로 하는 5단계 증가세 관세율(0, 3, 5, 10, 15%)로 단순화되어 있다. 먼저, 무관세 품목은 비료 등 농화학제품 및 농기계 등이며 농민보호를 위해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화장품, 기념품 등 관광객 대상 판매 품목은 관세율이 5%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10% 또는 15%가 적용된다. 즉, 종전에 5.1~14.9%의 관세율이 적용 되던 공산품은 10% 단일관세로, 종전에 15% 이상 고관세율이 적용되었던 품목들은 15% 단일 관세로 인하는 조정되었다.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 후 양허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9년 정권 교체 이후 현재까지도 제조업 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오히려 2000년도에는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對파나마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등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파나마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ad valor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관세 이외에 모든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ITBM: Impuesto de Transferencia de Bienes Muebles) 7%를 부과한다. 2010.7.1일부터 파나마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5%에서 7%로 인상하였다.

(3) FTA 등에 따른 특별조치

엘살바도르, 대만,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 발효국의 공산품 등에 대해서는 각 협정의 양허표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수입규제 제도

파나마는 식료품, 의류 및 건축자재 생산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대부분 품목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국민보건 및 위생, 미풍양속 보존 및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품목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며 외환통제가 없고 콜론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중계 무역이 발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남미 여타국가에 비해 수출입, 입국 관련 수속이 신속히 이루어진다.

파나마는 1997년 WTO에 가입한 후 양허 관세 수준을 15%로 정했다.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12%인 경우도 있으나 중남미 전 지역을 걸쳐 평균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파나마는 사실상 경제를 더욱 넓게 개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업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제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1) 수입허가

파나마에서는 수입허가가 필요 없다. 단,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발부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입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거절당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기타 품목의 경우 회사로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든 상품 수입을 할 수 있다.

(2) 수입금지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 (파나마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시가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 (팝플렛,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 원주민의 전통의상, 악기, 공예품의 위조품

(3) 수입제한품목

파나마정부는 주로 자국민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용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및 기타 마약의 알칼로이드(보건부의 사전 수입 승인 필요)
- 전투용이 아닌 경기용, 수렵용 및 호신용 도검류, 총기, 탄약류와 가스총, 스프레이, 전자봉 등 호신장비류(법무부 사전수입승인 필요)
- 다이ना마이트, 화약, 니트로글리세린 및 기타 폭발성 물질(파나마 안전기구인 Oficina de Seguridad의 사전수입승인 필요)

(4) 비관세 장벽

파나마는 농축산물, 식품류, 약품류, 화장품류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였다.

(5) 수입쿼터

파나마는 1996.12.26일 행정령 제47호로 수입쿼터,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제한 등 일체의 수량 규제를 철폐한 바 있다.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동식물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수입관리제도는 보유하고 있다.

기타 인증제도

(1) 농·축산물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역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 파나마 보건 등록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 제품 및 하위 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 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2)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식품국에 수입을 위한 사전제품 등록이 필요한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주한 파나마영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 생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ormular Preparation Method
 - The Analysis Method
 - Duration of the Products
 - The Products Code

-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하고 주한파나마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샘플 및 기타서류
 -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

수의학 관련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수입물품 도착 후 역시 품질 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파나마는 라벨링 및 인증 등과 관련 특별한 규제가 없다. 라벨은 생산자의 성명 및 주소, 유통기한, 주성분, 함량 등 기본적인 정보만 명기하면 되며, 영어로 표기하여도 무방하나 의약품, 가정용품 및 음식 류는 사용법을 반드시 스페인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수출을 위해 파나마를 경유만 하는 제품들은 'Panama in Transit'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적전 검사제도

파나마의 경우 선적전 검사제도가 수출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상품포장

파나마에는 상품포장 방법 및 포장상의 명기 사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장박스에 명기되어야 한다.

- Shipping Mark, 목적항, 상품명, 수량, 중량, 원산지국 등
- 화학약품 및 의약품의 경우 함유성분 등
- 품목에 따라 필요한 경고문구(깨지기 쉬움, 위험, 유독물질 등)

지식재산권 보호

파나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제네바음반보호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브뤼셀 위성관련협약(Brussels Satellite Convention), 국제만곡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베른저작권협약(Ber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식물다양성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에 가입하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들이 파나마 정부의 부적절한 저작권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 USTR은 1998.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파나마를 기타 감시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미국 USTR은 파나마 콜론자유 무역지대의 위조 상품 거래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나마 정부 1998.3월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을 설립한 바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1994.8월 발효된 지적 소유권법(Law 15) 및 1996. 11월 신공업소유권 보호법(Law 35)이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파나마는 1996년 초에 반독점법을 입법하여 동법에 의거 독점과 함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심리할 4개 특별법원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파나마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 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자유무역지대 지식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

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서는 위조 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권

파나마 공업소유권법에 의거 특허권은 20년간,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15년간 보호되며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은 파나마 국민의 소유권이 최소 30% 이상인 파나마 등록 법인이 특허권 소유자를 경우에는 10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동 법 발효 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특허종류에 따라 외국인은 5~15년, 파나마인의 경우 5~20년간 보호되었다. 파나마의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발효된다.

상표권

파나마의 상표권도 공업소유권법에 의해 10년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파나마는 199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제시한 모델에 따라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으로 파나마 저작권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동법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 개념에서 보호된다.

■ 통관제도

수입자는 통관사에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정하여 세관 총국(Dirección General de Aduana)의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Declaración de Liquidación)’에 기입, 이를 세관총국에 제출한다. 세관 총국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 날인해서 통관사에 돌려준다. 수입품이 파나마의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검사원이 승선하여 하역장소 또는 환적장소를 지정한다.

통관사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포장명세서, 수

입업자 납세 증명서 및 세관 총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을 제출하면 세관원은 동 양식서상의 산정 관세액을 참고로 실제 수입품과 대조하여 실제 관세부과액을 결정, 이를 통관사에 통보한다.

관세 부과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나마 국영은행인 Caja de Ahorro, Banco Nacional de Panama 또는 세관총국 수납계에 관세를 납부하며 '관세 납부 증명서(Boleta de Pago)'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관에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통관한다. 참고로 관세납부액이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관세액의 10%, 10일 경과 이후 납부 시는 2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통관업무 흐름도

수입물품 도착(항구, 공항) → 세관검사원 승선 → 하역 또는 환적 장소 지시 → 세관창고 입고 → 세관원 물품도착 확인 → 수입자에 수입품도착 통보 → 통관사 지정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 작성 및 세관총국에 제출 → 관세총국의 확인날인 후 통관사에 반환 → 관할세관에 수입관련 서류 제출 → 무작위 추출 수입품 검사실시(세관원) → 관세산정 및 관세 부과액 결정 및 통보 → 관세 납부 → 관세납부증명서 세관 제출 → 세관창고로부터 수입품 반출

소요기간 및 세관 업무시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4~5일 정도이다. 세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점심시간 12:00~13:00)이다. 한편 관세총국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30~16:30까지 점심시간에 관계없이 정상근무 한다. 일반 수입통관에서는 아무 통관대행사에게나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의 경우에는 공식통관대행업체인 Auturoy Aurauz, S.A.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다.

통관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Declaración Jurada)
- 관세산정 및 신고양식(Formulario de Liquidación) : 통관사가 작성, 관세총국에 제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적지에서 B/L 발급 및 선적 후 근무일 기준 8일 이내에 주한파나마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인보이스금액의 1%(최소10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사 확인료는 단계별로 다르나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100달러 이하이면 무료이고 100,000달러 이상은 75달러이다.

- Invoi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판매자의 주소
 - 파나마내의 바이어와 수탁자
 - 운송선박명, 선적항구, 하역항구, 목적지
 - 쉬핑 마크 및 번호, 포장형태 및 수량, Net Legal 및 Gross 중량
 - 부피, 제품명세, 단위가격 및 총 금액
 - 가격조건인 'CIF PANAMA'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에 관한 내용

수입업자 납세증명서(Paz y Salvo Certificado)

수입업자의 체납세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통관 시 유의사항

세관신고서류 작성(통관대행사) 시 실제 수입품목과 서류상의 신고품목이 일치하도록 하며, 수입수량을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수입품검사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원칙대로 통관절차를 밟고 통관사의 선정에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며 아울러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수입 물품이 도착하여 파나마 세관창고에 입고된지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5일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창고료가 가산된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창고료가 수입품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매처분 된다. 수입상이 조세 창고가 없는 경우 수입품은 파나마 세관창고에 보관되는데 이 경우 최대 허용기간은 6개월이며 동 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않거나 창고료를 지불치 않는 경우는 수입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품이 도착하면 통관사는 선적서류, 상업송장, 수입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서를 수입품 도착 통보접

수 후 세관에 제출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선하증권, 상업 송장 등을 제때 제출할 수 없을 경우는 세관의 수입관세 산정 추정 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수입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동 보증금은 추후 90일 이내에 선하 증권 및 상업송장을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 한편, 세관이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통관 관련 단체

- 파나마 통관대행사 전국연맹
 - P.O. : Box 5358 Panama 5 Republi of Panama
 - Tel : 507-393-6080
 - Fax : 507-393-6090
 - Email : uncap@uncap.org.pa
 - Mr. Gilberto Arauz / President

통관대행법인

- Bullen & Bullen, S.A.
 - P.O. : Box 1060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507-229-7565
 - Fax : 507-229-1922
 - Mrs. Carolina Bullen / General Manager
- Agentes Aduaneros Autorizados, S.A.
 - P.O. : Box 2653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507-260-2498
 - Fax : 507-260-2625
 - Mr. Oscar Hernandez / General Manager
- Servicios Aduaneros Gardellini, S.A.
 - P.O. : Box 7319 Panama 5 Republic of Panama
 - Tel : 507-229-4315 / 229-4210
 - Fax : 507-261-1281
 - Mr. Alberto Gardellini / General Manager

- Hugo Arjona y Cia., S.A.
 - P.O. : Box 55-1004 Paitilla Republic of Panama
 - Tel : 507-260-7557
 - Fax : 507-260-2986
 - Mr. Hugo Arjona / General Manager
- Arturo Arauz, S.A.
 - P.O. : Box 214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507-264-6575 / 264-2210
 - Fax : 507-263-5989
 - Mr. Arturo Arauz / General Manager
 - * 파나마 박람회(Expocomer) 공식 지정 통관업체
- De La Rosa y De La Rosa, S.A.
 - P.O. : Box 2046 Panama 9a Republic of Panama
 - Tel / Fax : 279-1183
 - Mr. Edgardo De La Rosa / General Manager

■ 투자환경 및 투자관련 제도

투자환경

미주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파나마 운하 및 콜론자유무역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이 파나마 지사를 중남미 지역 본부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분야는 물류 기지, 콜센터, 관광 인프라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파나마는 중남미의 물류 및 유통중심지이며 중계무역지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연관 산업 투자는 적극 검토할 만하다. 비교적 간단한 조립 산업, 포장 및 물류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파나마는 1999년 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운하의 완전 인수를 계기로 운하반환지역에 수출산업가공단지, 항만시설 및 항구운영, 생태관광산업, 지식의 도시 건설 계획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구하워드 공군 기지를 개조한 태평양 경제

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 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 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나마는 그 지리적 이점과 함께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 산업 육성에 치중해 왔으며,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미국의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환율 급변동의 위험도 없다. 현재 파나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역시 미국 기업들로 Texaco,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Constellation Power, AES, Enron, Coastal Power, Bell South, Northville Industries, Chicago Bridge, Iron, Mobil, Continental Airlines 등이 있다.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한 관광 산업, 부동산 건설업과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를 둘러싼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최근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06년에는 총 2,56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에도 2,710백만 달러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금융 및 서비스, 건설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투자 금액 규모 면에서 외국기업 상위 5개사를 살펴보면 Panama

Ports Company(홍콩/항만), Cable & Wireless(영국/인터넷통신), Telefonica Movistar(스페인/무선통신), Cemex(멕시코/시멘트), Ica(멕시코/건설) 등이 있다.

우리기업 투자동향

투자업체 중에는 동원수산, 서진해운, 한국특수선과 같은 해운업체, 삼성전자, LG전자, 한창, 유풍실업과 같은 제조업체가 투자진출(통계상 투자기업 수: 약 30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는 기업등록이 자유로운 파나마의 기업법을 활용하여 실제 투자와는 관계없이 업무 편의상 파나마에 기업을 등록해 놓은 데 불과하며 실제로는 파나마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투자 진출은 전무한 실정으로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지사, 현지투자 판매법인 및 교민업체가 진출해 있는 정도이다.

(1) 현지 법인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금호타이어 등이 있으며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경우, 중남미 본부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주재원이 있다.

(2) 주요 지사 / 지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외환은행,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삼성SDS, 현대중공업, 한국통신 등이 있다. 외환 은행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한국 선박들의 운하 통과 수수료 납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한 LG전자, 삼성 전자 등의 법인운영 자금 등을 관리하고 있다.그 외에도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진출해 있다.

주요 투자법 내용

(1) 투자유치정책 개황 및 주요법규

파나마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정부는 제조업 중 식료품 및 음료수, 운반용구, 자동차부품, 통신 기자재, 목재산업용구, 건축자재, 의약품, 살충제, 농기구,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 금융, 서비스산업 등의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1998.8월 그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PRO-PANAMA (외무부 자문기구 형태의 투자유치진흥기구)와 상공부 산하 무역진흥기관(IPCE: Instituto Panameño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합하여 대외무역차관실(VICOMEX: 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를 신설한 바 있다.

최근에는 엘살바도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는 미의회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는 등 FTA를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파나마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특별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파나마의 투자 유치 관련 법규는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한편,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 제54호(1998.7.22 제정)를 공포하여 동법에 정하고 있는 각종 투자분야에 대해 10년간 법적 안정성,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안정성, 관세제도의 안정성, 노동제도의 안정성 등 5가지 카테고리 외 국인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과 상호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보장에 관한 법 제54호의 제정으로 파나마에 대한 투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파나마에서 적용되는 각종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투자관련 주요 법규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1998.7.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1995. 6.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2.11.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1997.7.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1996.2.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1995.8.26 제정)

-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치 시 우대 사항을 규정(법률 26호; 2009년 제정)

(3) 투자관련 제도

파나마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다.

- 콜론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재산세 10년간 면제
 - 수출입세, 관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산업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 제25호 (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동 지역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예: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수입통관 등)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특정 분야

이밖에 파나마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광산업 등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도박, 수도·전기·전화·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보험·재보험, 주식·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현지인 고용 의무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 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일 경우 전체 인원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전문직, 기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종업원 수의 15%까지 고용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40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하다. 섬을 소유코자 할 경우에는 국가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다.

금융상의 제한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 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서비스 장벽

파나마는 서비스 분야가 GDP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분야의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도 법률상 외국인 소유가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애없이 부동산 구입을 비롯, 회사 설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이동전화 부문을 비롯하여 통신, 항만, 도로 등 대부분을 외국 업체에게 민영화한 상태이다. 교육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대학교는 파나마 국립대총장의 승인을 얻어 파나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현재 상당수의 외국계 교육기관 분교들이 진출해 있다.

파나마 지역 주요 항구는 대부분 외국기업으로 인해 민영화된 상태이며, 외국 선박의 파나마 국적 등록비가 저렴하고 등록절차도 용이하여 현재 13,000대 이상의 외국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 부문도 제도적 장애 요인은 없으며, 시설자재 관세 면제, 토지 장기 임차 등 관광부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1994년도 법률에 의거, 관광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자허가

(1) 투자형태의 결정

파나마에서는 소매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이 용이한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일반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증권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지분이 없는 기업 설립된 기업 주식 매입을 통한 투자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참여 등 대기업 지분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2)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파나마는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산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금지 업종인지 사전심사 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투자금지 또는 사전심사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파나마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나 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외 무역 차관실 생산/투자 진흥국 등을 통해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지역 및 업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파트너의 선정

파나마에서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검토사항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실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현 정부와의 관계

파나마는 인구 3백만 명의 소규모 국가이며 부의 상속이 상례화한 사회여서 현지 유력인사의 경우에는 인적 사항과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파나마에서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는 유태계, 레바논계, 인도계 및 중국계이며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인 그룹을 형성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8.26) 및 행정부령 제35호(1996.5.24)에 의거 상공부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운하반환지역 관리청(ARI)과 개

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 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생산·투자 진흥국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사항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업체 경영인의 국적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숙련 기술자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 1998년에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외국인 투자 시 자본금 규모, 과실송금, 이윤 배당 등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투자한 후 10년 동안 투자 시의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세제도

(1) 세제 개황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정 서비스세, Franchise Tax, 교육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검토 중이며, 동 제도 도입 시 과세기준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세

● 법인소득세

파나마에서는 법인 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경우 30%,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34%의 법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동 법인의 소득 결정시에는 감각 상각이 공제되는데 주요 자산의 감가 상각율은 다음과 같다.

- 건물(연 2.5%), 기계설비(연 5~15%), 사무기기·가구(연 7~10%), 도구 및 소규모 장비(연 10~50%)

●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소득에 대해 일정액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05.10.27일 개정된 것이며 3,000달러부터 적용된 소득세가 9,000달러로 완화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과세기준(US\$)	기초세액(US\$)	초과분에 대한 세율(%)
~9,000	0	0.0
9,000~10,000	0	2.0
10,000~15,000	730	16.5
15,000~20,000	1,555	19.5
20,000~30,000	2,505	22.0
30,000 이상	4,705	27.0

● 판매세

파나마에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시에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판매업체는 판매세 징수 및 납부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업체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부가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7%의 판매세가 부과되며 주류 및 담배의 수입, 도소매시에는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판매세는 특정품목은 면세되는데 판매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식품 및 의약품 판매
- 재화의 수출 또는 재수출
-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파나마운하관리위원회에 납품하는 경우
- 1990년 법령 7호에 의한 리스계약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판매업체는 자신이 받은 판매세에서 지불한 판매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판매세를 재정경제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되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원래 제품 가격이 고시되며 동 가격에 판매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특정서비스세

1991년 조세개혁법으로 케이블 TV, 경호수송서비스, 안전금고 임차에 대해서는 5%의 특정 서비스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매월 12일까지 재정경제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영업세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한 파나마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유주의 재산가치 즉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영업세를 Franchise Tax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자본금과 전년도 영업수익으로 증액된 순 자본금 증가액을 합산하여 1%가 부과되는데 납세 최고 상한선은 2만억 달러이며 최저액은 10달러이다.

● 교육세

모든 고용주 및 근로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1.25%를 교육세로 원천 공제하고 근로자 급여의 1.50%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2.7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영 사업자는 연간 수입의 2.75%를 납부한다. 동 세금은 소득세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고용주는 동 금액을 매월 사회보장세와 함께 사회보장부에 납부한다.

● 재산세

파나마에 있는 2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30일, 831일, 12.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2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2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동산 거래세

파나마에서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정부 과세표준 가격 중 큰 금액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과세표준가격이란 재정경제부 고시가격에 개축한 비용 및 보유연도에 매년 5%의 가치 상승분을 더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세가 면세된다.

● 양도세

파나마의 양도세는 4~33.75%의 누진세로 부과되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관계 및 양도물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파나마에는 상속세는 없으며 유산 상속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물품소비세

의료용 및 재수출용, 향수제조용 등을 제외한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은 내국세가 부과되며 담배에도 소매가의 32.5%에 상당하는 물품 소비세가 부과된다.

● 인지세

파나마정부 공식문서는 페이지당 4달러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인지세가 납부된 문서는 증빙서 및 공증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약속어음, B/L 등 상업용 서류에도 정부의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 인지세는 문건의 표시 가격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및 청구서의 경우 표시 가격 100달러 당 10센트로서 인지를 구입하거나 스탬프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스탬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월, 2개월, 3개월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 은행 영업세

국영은행을 제외한 파나마 모든 은행들은 매년 은행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은행 영업세는 일반 상업은행은 2만5천 달러, 역외금융은행은 1만5천 달러, 환전소는 600달러이다.

● 보험료세

파나마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2%를 보험료세로 부과하고 있다.

동 2%의 기본 보험료세외에 화재보험, 개인 및 단체 생명보험, 농업 및 가축 관련 보험을 제외하고는 5%의 추가 보험료세가 부과된다. 동 보험료세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부과하여 재정경제부에 납부토록 되어 있다.

● 기타 조세

이 밖에도 호텔투숙세, 유류소비세, 시장영업세, 카지노세, 항공권구입세 등의 조세제도가 있다.

지방세

지방정부는 자동차 라이선스, 빌딩 개축, 시유지 및 건물 사용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파나마의 지방세는 사업의 가치 및 영업활동 내용에 따라 20~500달러까지 부과되며 자동차 라이선스세는 차종마다 상이하나 평균 30달러 정도이다.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제8조 국가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에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아 이른 바 ‘tax haven’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기도 하며, 2009.4월
OECD로부터 조세피난처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파나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회색국가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0.10.21 현재 한국을 포함 총 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
으며, 기타 3개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는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비옥하고 저렴한 토지, 자연재해 없는 온화한 기후환경, 풍부한 전력자원, 평평한 국토 등 농업·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 주요 기간산업은 농업 및 축산 등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기반은 아직 미미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심장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 산업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정부 인센티브 미흡, 작은 내수시장,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산업기반 미비,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등 요인으로 발전이 더디며, 이러한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외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파라과이 수출실적은 2009년 8,7천만 불을 기록한 반면, 수입은 690만 불로 양국 간 교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으로 역외지역 일반 수입대상국에 대해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WTO 규범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설탕, 원유 등 특정 품목을 제외, 최고 20%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

으며,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평균 20%의 대외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에는 상호 민감한 일부 품목을 제외, 무관세로 통관제도를 공유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산업기반이 미미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자유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내·외국인 공히 수출입업자 등록자이면 법인이나 개인 자격으로 자유로이 수입활동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

수입품목에 따른 관세율 이외, CIF 기준으로 세관감정세(Servicio de Valoración Aduanera),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NDI(국립토착민기구 보조세), 통관서류 영사확인 수수료(Arancel Consular) 등이 수입부과금명목으로 부과된다.

음료, 원유, 담배, 생수, 향수 등 특소세 적용품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소비세(Impuesto Selectivo al Consumo)를 부과하고 있다.

※ 주요 상품 특소세율

- 담배 8%, 위스키 10%, 휘발유 34%, 디젤유 14%,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 1% 등

통관절차상의 장벽

파라과이는 수입상품의 검역, 검사 및 통관절차에 있어, WTO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특별한 통관규정은 없다.

단, 파라과이 정부가 공인하는 통관사를 통해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이고 낙후된 행정으로 인해 통관시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우리업체에게만 차별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으며, WTO 등 국제관행에 배치되는 원산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규제

파라과이 정부는 국내 산업보호 및 언더벨류 통관 방지를 위해 수입산 의류 및 닭고기에 한하여, 특별수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10%)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관세율(최고 20%)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003호를 2009.10월 공포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파라과이는 동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수입산 의류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2~8%의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1.5%만을 수입관세로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특정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 등 일부 규제품목들을 제외한 일반 수입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입량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파라과이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반덤핑법 또는 상계관세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류, 시멘트 등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을 통해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 수입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국영시멘트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멘트 사업의 경우, 브라질산 시멘트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파라과이 관세청은 의류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의류 250여 개 품목, 특히 아시아 국가(중국)산 의류에 대해 표준관세율을 최소 200~500%까지 대폭 상향조치한 바 있다.

■ 표준검사, Labeling 인증관련 장벽

표준검사

파라과이는 기술표준과 관련, 국내 표준 및 ISO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표준원(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y Normalización)이 관련 상품에 대한 표기 및 기술표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라벨링

파라과이 산업통상부가 상표, 특허 등 제반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외 상품에 모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식품 등의 경우 내용물, 성분, 중량, 유효기간 등의 상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상품정보 표기는 반드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경관련 규제

파라과이는 생태계, 수질, 공기오염 등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제조업 조성지, 농장, 목장 등 포함)에 대해 환경청(SEAM)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Evaluación de Impacto Ambiental)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293/93).

■ 품목별 장벽

파라과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IT 및 가전제품,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료기기 등 공업상품으로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국가 수입품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산 공업상품들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통상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파라과이 시장에 수입되

고 있고, 특히, 중국산 상품들이 저가공세로 파라과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파라과이 시장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어 의료기기, IT상품 등 첨단제품 및 자동차, 농기구, 건설장비 등의 수출전망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파라과이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수출지향형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업체들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Industria y Comercio)를 통해 투자계획서를 승인받으면 파라과이 정부가 투자사업 형태에 따라, 60/90호 수출진흥법, 마킬라 보세가공무역법(Ley de Maquila),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제도 등을 통해 부여하는 각종 면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파라과이 정부조달시장관련 일반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 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공공계약통합시스템(SICP, Sistema Intergrado de Contrataciones Públicas)을

운영(www.contratacionesparaguay.gov.py)하여 모든 입찰 정보는 해당기관 및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등재를 의무화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

- 입찰 발주 기관과 참가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조달청에서 관여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조달 계약 방식은 국내·국제공개입찰(Licitación Pública Nacional e Internacional, 최저임금 일급 10,000배 이상 금액), 가격경쟁입찰(Licitación por Concurso de Ofertas, 최저임금 일급 2,000~10,000배 이상 금액), 수의계약(Contratación Directa, 최저임금 일급 2,000배 이하 금액) 방식 등이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IBRD)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정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주로 송·배전사업, 컨설팅 및 감리 사업, 통신장비 구축, 병원장비 및 의약품 구매사업, 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등이 많음.

파라과이는 우리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tied up)'이 있는 차관 공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은 편이며, 해외 차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정부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야 정치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파라과이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최근 프로젝트 입찰방식을 낙찰자가 금융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에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사용하다가 정부에 운영권을 양허하는 BOT 방식의 국제 입찰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 실례로, 파라과이 Fernando Lugo 대통령은 2010.10.14일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 참석, 긴급사안 성격으로 파라과이 3대 국제공항 종합현대화 사업 비준요청안을 상정하면서, 세계적인 민간분야 참여 확대 추세, 정부 예산의 한계 등을 명분으로 BOT 방식으

로 동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특히, 파라과이 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입찰사업을 발주하는 건설 교통부(MOPC) 및 국영전력공사(ANDE)는 각기 최근 추진 중인 신규 도로망 구축사업, 송·배전망 확충 사업 등을 BOT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업체 입찰 참여제한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국산품에 대해서 10% 정도의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업체가 국내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분야에서는(일례로, 송·전선 건설사업),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토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대리점 또는 법인을 통해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파라과이 정부조달 시장 진출 시 참고사항

국제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찰안내 자료도 모두 스페인어로만 작성되어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입찰 참가에 애로사항이 산재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입찰 서류제출상의 사소한 오류(서류제출 양식, 서류 작성 양식 등)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업체는 자격미달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과이는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항상 현지 법정대리인 명의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對파라과이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우수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 지식재산권 보호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저작권조약, 저자인접권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업무는 산업통상부내 지식재산권담당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2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를 정비하는 등 나름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단속하는 법적 집행능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되고 있다.

또한,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 지식재산권 보호 단속 업무는 검찰청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검사 및 통상산업부 산하 지식재산권 단속 특별부서(Unidad Tecnica Especializada)에서 담당
- 파라과이 Ciudad del Este는 불법 복제품을 주변국으로 유통시키고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
 - 전자제품, CDs/DVDs, 의류, 명품 악세서리, 신발 등을 수입해오거나 현지에서 제조하여 주변국으로 재수출

미국 USTR은 파라과이를 불법복제 우선관리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1988.11월에는 파라과이-미국 간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파라과이를 미국의 통상법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서비스 장벽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으나 파라과이(내륙국가)강을 운항하는 바지선은 파라과이 국적

선(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 여타 전문 직종은 아순시온 국립대학에서 취득학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인증을 받아, 해당 협회 등록과 승인 절차를 밟도록 요구
- 교육 분야는 외국인도 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학교장은 파라과이인으로 제한

파라과이 정부는 국가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근 전력송전망, 주요 고속도로 및 아순시온 공항 운영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송전망 운영 문제에 관해서는 파라과이전력공사(ANDE)가 독점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Mercosur 역내에 서비스 부문을 완전히 개방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 전문직(법률가,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은 각 협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투자환경

투자 장벽

파라과이는 내·외국인 투자(광산, 농목축업, 통신, 전력 등)에 대해 매우 개방되어 있어 형식적인 제한 없으며, 내·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법령 117/91에 의거)를 보장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도 자연인(Persona Física) 또는 법인(Persona Jurídica) 명의로 특별한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나, 2005년도 이후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의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인들에 한하여, 자국과 인접한 국경지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산화 의무 부가 및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파라과이는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으며, 파라과이산 완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여타 Mercosur 회원국에 무관세 수출할 수 있도록 60:40 역내산 비율을 충족시키길 권장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대단히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지사·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를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 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과 주한 파라과이대사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의 제한, 세제상 제한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

파라과이는 금융 및 환율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과실 송금관련, 송금 및 재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없다.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나,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파라과이 금융기관은 외국인의 경우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에 한하여 외환구좌를 개설해주며, 10,000불 이상을 예탁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국 및 제 3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역시 특별한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

- 단, 본사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송금 시에는 다소 고율의 세금 부과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데는 시중 이자율이 높고 은행권이 대체로 단기 대출만 허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조금은 전무하다.

파라과이는 Mercosur 국가 중 조세부담이 가장 적은 국가로 투자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 장려를 위해서 60/90호 투자진흥법령에 의한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회사설립 및 등록비, 회사채 발행 및 양도시 소요되는 각종 제세를 면제해주며, 투자 계획서상에 포함된 자본재, 중간재등 원자재 수입 시에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5백만불 이상 투자 시에는 배당소득 및 이익금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 단, 5백만불 이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당금 및 이익금의 송금 시 15% 세금 부과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 유치, 수출증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보세가공 무역제도 ‘마길라 제도(www.maquila.gov.py, Régimen de maquila, 법령 1067/97)’를 운영하고 있다.

- 동 제도를 통해 수입하는 자본재, 원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재수출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생산된 제품 중 10% 범위 내에서 국내시장 판매(관련 관세 및 세금 납부 후)도 허용한다.

보세가공무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에 ‘마길라 투자진흥국’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파라과이는 자동차, 트랙터, 기타 육상 운송기구 조립 및 부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조립제도(Régimen Automotor Nacional)를 운영하고 있고, 동 제도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원자재는 면세 조치(CIF 기준 5,000불 이상 시)를 취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 운영

파라과이는 Ciudad del Este에 2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 Zona Franca Global del Paraguay
- Zona Franca Internacional

또한, 내륙 국가인 파라과이는 주변국 해안 항구에 자유무역지대와 물류보관창고를 갖고 있어 물품 입고, 보관, 매각, 환적 등이 가능하다.

-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Buenos Aires, Rosario), 브라질(Parana-gua, Santos, Rio Grande do Sul), 칠레(Antofagasta, Meji-lloes), 우루과이(Montevideo, Nueva Palmira)에 자유무역지대 및 물류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 운송 물품의 대략 3/4는 바지선으로 파라과이강을 거쳐 아르헨티나 또는 우루과이 항구를 이용하여 수출하고 있다.

투자 허가 지연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

파라과이는 투자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창업 및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에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운영하고 있어, 비자 업무, 세금 납부 등을 포함하여 단시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행정서비스망 낙후 및 관료주의로 인해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기가 어려우며,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들(최하급 공무원 포함)이 많아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고,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역시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 파라과이는 UN 부패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에 서명국이나, OECD 뇌물수수금지협약(Covention on Comb-ation Bribery)에는 미 가입

여타 외국인 투자가 더딘 원인 : 치안 악화 및 현정부 좌파 성향 정책, 사법 정의 부재

무토지 농민들이 대지주들의 농장을 기습 점거하고 대지주들이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안 확보 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투자 진출에도 장애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루고 행정부가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소 애매모호한 좌파 정책 성향을 견지하고 있어 내외국인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 및 사법정의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어, 분쟁 발생 시 부패한 사법부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재 시장 협소, 밀수 성행, 숙련된 노동력 부족, SOC 미발달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파라과이 중앙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9년 대파라과이 외국인 직접투자(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총액은 138백만 불 수준이다.

지역별 투자규모에서 남미공동시장 역내 회원국들의 투자규모는 33백만 달러(23%)를 기록한 반면, 역외지역 국가는 105백만 달러 규모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투자규모에서는 미국의 투자가 가장 많고(87백만 달러), 이어서 일본(73백만 달러), 네덜란드(33백만 달러) 순이다.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금융(576만 달러), 건설(513만 달러), 통신(388만 달러)분야이다.

파라과이는 아래 국가들과 양자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Argentina, Brazil, France, South Africa, Taiwan, United kingdom, Uruguay, Austria, Benelux,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ermany, Hungary, Korea, Netherlands, Peru,

USA, Rumania, Spain, Switzerland, Venezuela

파라과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정식 회원국이므로 만약 외국 투자가와 파라과이 정부간 분쟁 발생 시에는 국제적 분쟁조정 요구가 가능하다.

현지 법인설립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도는 투자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적인 구비조건만 갖추면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단, 현지에 연고(영주권 소지 등)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를 주주로 영입해야 한다. 설립절차 및 비용은 법인의 형태, 설립자본 규모 등에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반 절차는 간소한 편이다.

법인설립 인·허가 절차

공증인을 통해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률기관에 법인등록절차를 밟는다.

해당 법률기관으로부터 정관이 승인되면, 사법부 산하 고문서 등록청(Registro Público)에 동 정관을 등록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료된다.

- 정관 작성부터 법인설립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2달이며, 공증인 수임료(설립 자본에 따라 0.75~2%를 지불토록 법으로 규정) 및 법인등록 관련 일련의 소액 세금만 지불

법인설립 완료 후 사업 활동 개시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무부와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 사업자 등록증(Patente Comercial)을 신청해야 한다.

- 현지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파라과이내 소재지가 있어야 함.

파라과이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법인등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창업절차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s, SUAE)’ 제도를 마련,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법인설립부터 회사개업까지 이전의 17단계를 6단계로 간소화 하고, 소요기간도 74일에서 25~30일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노동시장

파라과이의 노동법은 고용주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 수의 종업원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이 없으며, 고용자들의 해고도 비교적 자유로운 등 상당히 유연한 편이다.

임금수준

현 최저임금은 1,507,484파라니 (약 310미 달러, 2010.10월 기준)로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 대졸자 초임 : 1,507,484파라니 (최저임금)
- 단순 노무직·일반 서비스 직종 (의류·가전·식료품 상종사자 임금 수준 : 70~100만 파라니 수준 (약 140~200달러)

※ 중·대농들의 경우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체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일급, 주급 등 형태로 급여를 지불

근로시간

노동법에 근로시간은 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이 정한 근무시간 초과 시 시간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50%
- 야간노동자 : 일급+일급의 30%
- 공휴일 노동 : 일급+일급의 100%

고용계약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허용한다.

- 숙련직 또는 견습노동자 : 60일
- 비숙련직 또는 가사노동자 : 30일

수습기간 중 노동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사노동(운전기사, 가정부, 유모, 정원사 등)로 분류되는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정식 고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외 매년 12.31일 이전까지 1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상여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고용자 해고시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해야 하며, 1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에 대해서는 연 15일치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근연한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해고통지 기간 :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전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전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90일전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전

사전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처리되는 경우 상기 보상금 이외에도 상근연한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불금액 :

- 1년 이상 상근자 : 30일치 일급
- 1년 이상 5년 미만 상근자 : 45일치 일급
- 5년 이상 10년 미만 상근자 : 60일치 일급
- 10년 이상 상근자 : 90일치 일급

유급휴가

- 1년 이상 ~ 5년 미만 상근자 : 12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상근자 : 18일
- 10년 이상 상근자 : 30일
- ※ 출산휴가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90일까지 부여

사회보장제도

파라과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주가 국가의료보험 및 연금 보장기관인 사회보장청(IPS)에 의무적으로 고용자들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율로 고용자 임금의 25.5%의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 명목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고용주·고용자간 보험료 납부 부담비율 :

- 고용주는 고용자 월 임금의 16.5%
- 고용자는 월 임금의 9%

그러나 실제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총인구(620만명)의 8%(50만명)에 불과한 바, 공공기관, 규모 있는 민간 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서는 대체로 사회보장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파라과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사회보장기구 보험료 지불을 꺼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건의료 및 연금체제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Lugo 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장기간 양허(Concession)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 1994년도에 4개의 공공회사가 민영화 조치: 항공회사, 주류회사, 선박회사, 철강회사
- 2002년도에 통신회사와 전력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되다 정치권의 반대로 중단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 파라과이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Itaipú 수력발전소의 경우, 생산전력의 45% 정도를 브라질에 헐값에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력공사의 투자 미비로 인한 송배전설비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히 발생, 산업 발전에 크게 지장 초래
- 철근 및 시멘트 회사의 경우 역시, 원자재는 풍부한 편이나 생산설비 노후 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재 품귀 현상이 빈번히 발생

■ 기타 장벽

입국사증

파라과이는 2006.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시에는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 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현지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 파라과이 영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영주권

파라과이에는 장기체류 비자제도가 없으므로, 상사주재 등 장기 간 파견업무 수행시에는 현지에서 임시거주권(Carnet de Admisión Temporal) 또는 영주권 (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을 취득하여야 한다.

영주권 관련 업무는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es)에서 관장하고 있다.

-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여권 및 파라과이 입국사증 사본, 신원증명, 건강증명, 호적초본, 출생증명, 혼인증명 등이 필요하며, 이민청에서 지정한 파라과이 국내 금융기관(국립저축은행: Banco Nacional de Fomento)에 3개월간 미화 5천 달러를 예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 시 90일기간의 접수증(Contraseña)을 발급하며, 90일 이후까지 발급이 안 되었을 경우 이민청을 방문해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도장을 받아야 한다.
- 예치한 금액은 영주권 취득 후 환불을 받는다.

외교관을 제외,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체류자는 주택임대, 차량구입, 은행구좌 개설 등 현지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 체류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위한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면허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나, 입국일자부터 90일간 운전이 가능하며, 운행 시 여권과 국제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Carnet de Admisión Permanente) 및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Cédula de Identidad)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는 소재지 관할지역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라과이 주민등록증 사본, 혈액검사서, 시력·청력검사서를 주요 구비서류로 제출한다.

외국인의 경우 초기 신청 시에는 본국 운전면허 기 소지자라 하여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수도 아순시온 시청의 경우 한국어로도 필기시험 가능

페루

주요 거시경제 지표

품 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GDP(10억 달러)	93.3	109	128	127
GDP성장률(%)	7.6	9.0	9.8	0.9
1인당 GDP(달러)	3,388	3,918	3,990	4,365
인플레이션(%)	1.1	3.93	6.65	0.25
실업률	7.3	7.2	8.1	8.90
재정적자(GDP대비%)	2.1	3.1	2.1	-1.9
수출(FOB, 백만 달러)	23,800	27,965	31,529	26,885
수입(CIF, 백만 달러)	14,866	19,599	28,439	21,011
무역수지(백만 달러)	8,934	8,356	3,090	5,873
경상수지(백만 달러)	2,456	1,516	-4,180	247
외채총액(백만 달러)	28,332	31,361	30,352	35,629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17,275	27,689	31,196	33,135
연말 평균 환율(1 달러당)	3.27	3.13	2.93	3,012
최저임금(월, Sol)	500	530	550	550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재정경제부

수입정책상의 장벽

페루는 후지모리 정부가 집권한 1990.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 철폐,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가속화를 위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다.

2006년 재집권한 Alan Garcia 대통령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르시아 정부는 과거 대통령 1차 집권시기인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시하여 온 수입규제정책에서 탈피, 경제개방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두 차례에 걸친 수입관세를 조정으로, 현재 수입관세율이 법령 No. 038-2008-EF에 의거 3가지(0%, 9%, 17%)로 인하되었

다. 정부는 수입세 개편에 따른 관세인하효과로 물가안정 및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기대한 바, 2009년 평균수입관세율이 5%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 페루수입 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07년 수입액 (CIF기준, 백만 달러)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3,960	53.8	15,840.6	72.5
9%	2,608	35.4	5,275.6	24.1
17%	792	10.8	740.9	3.4
계	7,360	100.0	21,857.0	100.0
명목평균관세율(%)			5.0	
관세율평균편차(%)			5.9	
실행평균관세율(%)			2.1	

※ 자료: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관세 장벽

페루는 시장개방정책에 의한 관세율 조정을 취해, 2010년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이 2.8%로 하락하였다. 관세인하 품목 및 관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페루는 현재 CAN(안데스공동체 :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회원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 0%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및 멕시코, 칠레, 쿠바와도 경제보완협정(ACE: Acuerdo Complementacion Economía)을 체결하여 관세혜택을 주고 있다.

▶ 관세인하 품목

기존 관세율	변경후 관세율	대상 품목수	주요 품목
20%	17%	1,052	육류 및 그 가공제품,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커피,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재봉기 등
20%	9%	40	밀, 정미, 유제품 중 일부, 설탕 등
20%	0%	1	가구 중 일부

기존 관세율	변경후 관세율	대상 품목수	주 요 품 목
12%	9%	2,678	살아있는 동물, 화훼류, 씨라기(부서진 쌀알), 옥수수, 식용유, 생선통조림, 설탕, 카카오, 술, 담배, 광물, 화학제품, 튜브, 피혁제품, 목재, 종이, 실, 금속시트, 귀금속, 가정용가구, 차량, 장난감 등
12%	0%	364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 원부자재, 연료, 의류산업 원부자재, 책 등

※ 자료 : 페루 재경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미국과의 FTA는 2009.2.1일부터 발효하였으며, 멕시코 및 칠레와는 既 체결한 경제보완협정을 FTA로 변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과 2010.3.5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2010.8월 협상을 타결하고, 금년 11월 가서명 후 2011년 상반기부터 협정 발효를 추진 중에 있다.

▶ 페루의 경제보완협정(ACE) 체결 현황

경제 블록 또는 국가	체결년도(협상종료)	비고
CAN	1997년 (ACE#59)	전 품목 무관세 적용
MERCOSUR	2003년 (ACE#58)	일부품목 특혜관세 적용
멕시코	1987년 (ACE#8)	일부품목 특혜관세 적용 최근 FTA로 전환위한 협상 진행중
칠레	1998년 (ACE#38)	FTA로 전환

페루는 Mercosur와 2003.8월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여 최장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비관세장벽을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칠레와 체결한 경제보완협정(ACE)을 FTA로 변환하였고,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통합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를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수입부과금

수입물품의 통관 시 전품목에 대해 19%의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부과 기준액은 수입가격(CIF기준)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9%로 표현되고 있으나 엄밀히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7%이며 나머지 2%는 지방세이다. 다음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나타낸다.

■ CIF가격이 1,000달러, 관세를 9%인 제품에 징수되는 세금

A	CIF 가격	US\$	1,000
B	관세	9%	$A \times 9\% = 90$
C	부가가치세	19%	$(A+B) \times 19\% = 207.1$
D	세관서비스료	US\$22	US\$ 22
E	세관수수료	3.5%	$(A+B+C+D) \times 3.5\% = 46.2$
TOTAL			$B+C+D+E = 365.3$

통관절차상의 장벽

최근 관세업무 전산화를 통해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반면, 밀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통관 시도에 대응한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 전 검사증명서(수입금액이 5천 달러 초과 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제반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금납부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 등을 첨부하여 세관창구에 통관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통상 통관 소요기간은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검사대상 여부를 명시한 세금고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면,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관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고, 통관신청자는 관세 납부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통관권자는 통관사, 하주 및 수취인 등이 될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 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 물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제재를 받는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UIT(조세부와 단위:

2010년 기준 약 1,150달러)로 책정된 벌금 부과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탈세기도 금액의 5배 벌금부과
- 원산지를 안데안 회원국 등 관세면제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포탈 기도 시 정상 부과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 상품의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국 상품 수입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안데안 역내 무관세 교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역내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며, 동 원산지 증명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완전 역내국산 원료로 생산된 제품
- 역외국산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경우 동 수입원료가 제조 과정에서 물리·화학적 변형으로 HS CODE가 변형된 경우
-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 조립된 제품의 경우, 수입부품이 CIF 가격 대비, 제조된 수출품 FOB 가격이 50% 미만일 것

수입규제

1980년대까지 페루는 고율의 관세적용 외에도 수입허가제 실시, 수입제한 품목유지, 영사확인 요구 등 비관세장벽이 산재했으나, 1990.8월부터 페루 정부는 전 품목에 대하여 수입자유화 조치를 시행중이며, 별다른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정식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상품 및 비 전통상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다. 단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염소 화학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 전기통신 장비 : 수입 시 교통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 전쟁 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 수입시 내무부 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동·식물 원료의 완제품 및 반제품 : 수입 시 환경부에 신고 필요
- 농약 및 유사 제품 : 수입 시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 수입 시 환경부에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 일자, 수입 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 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페루에서 反덤핑 및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한국의 무역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특허청 등 기능보유) 산하의 ‘덤핑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이다. 재정부장관이 지명한 5명의 위원이 업계의 제소를 심의한다.

동 위원회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는 페루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 제소와 함께 개시되며 이 경우 제소자는 덤핑상품의 국내산업 피해 및 위협을 다음 항목에 맞춰 입증해야 한다.

- 일정기간 중 덤핑혐의 상품의 수입물량 및 자국 생산물량과의 비교
-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가동률, 시장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상품의 피해 분석
-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동 위원회는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1개월 이내에 덤핑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혐의를 발견하여 조사개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조사개시를 관보(El Peruano)에 공고하며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조사개시 이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종료가 되기 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되면 동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최종 조사 결과 판정은 재정경제부 차관에 의해 내려지며 관보에 게재된다.

최근 저가수입상품의 범람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조사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9.12월 기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집행중인 품목은 없다.

■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관할기관은 INDECOPI 및 정부 각 부처이다. INDECOPI에서 석유 및 관련 제품, 폭발물 등 일부 품목에 한해 품질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유통을 위한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기타 안전·위험 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의 모양, 색상, 규격,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여타 품목의 경우는 모든 규격에 대해 수입 및 판매가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규격(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규격)이 자연스럽게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4.2월 INDECOPI 산하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은 2000년 ISO 9001 인증서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allao 항구와 Jorge Chavez 국제공항 또한 상기 인증서에 준

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환경관련 규제

페루는 일부 위해환경 품목에 대한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 제613호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환경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원을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당국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광을 희망하는 광업 회사의 경우 폐광계획서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복구, 재생 및 폐광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환경보증(environmental guaranty)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목별 장벽

페루 상법이 규정하는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 및 비전통 제품의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가안전,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및 제한을 하고 있다.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염소 화학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 전기통신 장비 : 수입 시 교통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 전쟁 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동·식물 원료의 완제품 및 반제품 : 수입 시 환경부에 신고 필요
- 농약 및 유사 제품 : 수입 시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 수입 시 환경부에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 일자, 수입 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 품질보증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 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수입금지 품목

- 5년 이상 수령의 중고 승용차, 8년 이상 수령의 3톤 이상 트럭 및 중고 자동차 부품
-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및 신발류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염소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수입제한 품목

- 식음료 제품 : 위생청의 사전허가 필요
- 무선통신 장비 : 교통통신부의 사전허가 필요
-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 내무부의 사전허가 필요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질산암모늄 비료 : 생산부의 사전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 외교부의 사전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 수산물검사소(CERPER)의 위생적합증명서 필요
- 식물 또는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반제품,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 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일자, 수입 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계 보건 기구 품질 보증협정에 가

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 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 필요

■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정책

페루는 특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장려를 위해
관세환급제도(Drawback)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 및 수출
하였을 경우, 생산 및 수출업자는 최소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의 환급이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조달 참여의 제약

페루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대형 구매 시 국제입찰이 일반화되어 있
으며, 민간기업도 대량구매 수단으로서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공개입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페루는 다음 4가지 정부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공개경쟁입찰(Licitacion Publica) : 건설 및 상품조달
- 지명 공개경쟁입찰(Concurso Publico) : 서비스 및 자문용역
- 직접 구매(Adjudicacion Directa)
- 소량 직접구매(Adquisicion Directa de Menor Cantidad)

페루는 정부조달업무 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조달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2009년 “국가계약감
독청(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아래 자료 참조)으로 바꾸었으며, 모든 정부기관(중앙 및 지방
정부)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 기관명 : 국가계약감독기구(OSCE)
 -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 성격
 - 공공입찰 및 국가계약 감독 및 적법성 지도
 - 공급자명부(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RNP) 유지
- 전화 : (51-1) 613-5555
- 주소 : Av. Gregorio Escobedo cdra. 7 s/n, Jesus Maria, Lima 11 - Peru
- 이메일 : fkundmuller@osce.gob.pe

공급자명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칭 : 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RNP
- 전화 : (51-1) 613-5555
- 성격
 - 국가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명부 등록이 필요함.
 - 국가계약감독기구(OSCE)가 관장함.
- 등록 범위
 - 재화의 공급
 - 서비스 공급
 - 공공사업 컨설팅 서비스의 공급
 - 공공사업 시행서비스의 공급

재화나 용역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공급자 등록(RNP: 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비용은 업체 연간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

대상자	등록비(누에보솔)
개인	163.30솔
법인	326.60솔
연간 총매출액 또는 수입이 최소 16,720달러인 공급업자	35.50솔

※ 자료원 : 국가계약감독기구(OSCE)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입찰은 SEACE(Sistema Electronico de Adquisiciones y Contrataciones del Estado)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고, 'El Peruano' 관보(官報)에 선택적으로 게재된다.

정부의 대다수 프로젝트가 공급자 Financing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공사 참여 업체(낙찰자)가 자체 금융을 조달, 시공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양허 받아 운영하여 이익을 챙긴 후 페루정부에 동 운영권을 반환하는 개발 운영권 이양 방식(BOT: Building - Own· Operation - Transfer)으로 입찰을 시행한다.

따라서 가격 및 품질 조건이외에 양호한 금융조달능력도 낙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의 재원 부족에 따른 BOT방식의 입찰 실시 결과 우리 건설업체 등의 주요입찰 참여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페루정부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제도를 운영하여 매년 다수의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요 PPP 프로젝트(진행)

-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s Residuales Taboada(US\$ 213백만)
- Aeropuertos del Sur(US\$ 300백만)
- Eje vial IIRSA Norte(US\$ 220백만)
- Corredor vial IIRSA Sur(US\$ 1092백만)
- Aeropuertos Regionales(US\$ 257백만)
- Tren Urbano de Lima(US\$ 150백만)
- Banda C de telecomunicaciones(US\$ 150백만)

주요 PPP 프로젝트(예정)

- Terminal Portuario San Juan de Marcona(US\$ 149백만)
- Aeropuerto Internacional de Chinchero, en Cuzco(US\$ 380백만)
- Muelle Norte del Puerto del Callao(US\$ 1300백만이상)
- Ferrovía Transcontinental “Brasil-Peru” Atlantico Pacifico(미정)
- Autopista del Sol Piura - Tumbes(US\$ 443백만)
- Línea de Transmisión en 500 Kv. Trujillo-Chiclayo(US\$ 110백만)

2008.5월 PPP에 관한 일반법률(Legislative Decree 1012)이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 세부 규칙 부재한 상황이다. PPP에 관한 법률은 정부 보조 투자금액이 GDP의 7%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관 합작 투자의 경우 투자진흥청(ProInversion)에 프로젝트 제안을 거쳐야 한다.

조달시장 진출 참고사항

페루의 주요 조달 입찰정보는 페루관보(El Peruano) 및 전국 주요 일간지에 공고되는 입찰광고를 통해 조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또한 주요 조달 발주기관인 건설주택부, 교통통신부, 에너지 광업부, 리마수도공사(SEDAPAL) 등을 방문하여 향후 조달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대부분 구매입찰의 경우 신문 등에 공고하나, 페루 내 입찰 에이전트에 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어 이들이 응찰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입찰 에이전트의 확보가 입찰참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관료주의가 심해 입찰 참여업체가 최상의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서류 작성상의 오류로 참가 무자격업체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꼼꼼히 챙겨 입찰에 참가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가격요인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바,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페루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 초기에는 우선 우수한 페루 국내업체들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출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페루는 WIPO, WCT, WPPT 등의 회원국으로서, 1996년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안을 도입한 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의 적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페루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6년 Special 301 Watch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결정 우려 및 실제 법집행 여부에 대한 의문도 병존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페루·미국정부간 체결 및 만료에 대비, 페루 정부는 저작권, 상표 및 특허의 효과적 보호와 함께 불법 복제 및 위조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INDECOPI이며, 3개의 부서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Office of Distintive Symbols
 - 상표, 상호, 의장권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Inventions and New Technologies
 - 발명품, 신기술의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Copyright
 -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발생시 INCECOPI내의 Court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 and Intelctual Property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로 발효된다.

INDECOPI

- 주소 : Calle de la Prosa 138, San Borja, Lima, Peru
- 전화 : (51-1) 224-7800 (내선 1715)
- 팩스 : (51-1) 224-0348
- Home Page : www.indecopi.gob.pe
- 근무시간 : 월~금, 09:00~13:00, 15:00~17:00

불법복제문제 심각한 수준

페루는 2009년 8천만개의空CD를 대만(83%), 중국(13%)에서 수입하였는데, 이런 CD들은 바로 不法複製와 직결되고 있다.

원판과 불법복제판 가격비교

	원 판	불법복제판
Compact Disc	\$20,00	\$1,00
DVD	\$25,00	\$1,00

※ 자료원 : 페루 민간기업협회

서비스 장벽

페루는 모든 경제부문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투자 장벽

페루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으며, 모든 투자에 있어 내외국인 투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페루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의 기본법령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민간투자진흥법, 민간투자보장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상기 법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내·외국인 투자 동등 권리부여
-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반 규제 철폐
- 외국인 재산권 보장
- 투자허용 범위 : 직접투자, 합작투자, 페루내 상품, 동산, 부동산등 실물투자, Portfolio 투자
-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된 권리 : 국내 투자지분 취득권,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100% 허용, 자본의 반출 자유, 국내 신용금융 이용 가능, 기술 및 로열티 계약체결 가능, 기타 해외투자 보험계약 체결 및 페루와 외국인 투자자간 투자 안정협정 체결 적극 도모

외국인 투자업체가 페루 투자진흥청(Proinversion)과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간 조세안정화법에 의거 소득세율이 인

상되더라도 협정체결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단, 투자 자본이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나, 투자자본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2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가져오거나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최소 2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할 경우만 수혜 대상이 된다.

한편, 페루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해안지역에 보세, 상업 및 개발 특구 건설이 가능한 6개(Ilo, Matarani, Chimbote, Trujillo, Pisco, Paita) 자유무역공단을 설립하여, 15년간 국내 제반세금 면제,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공단 내 노조활동 규제 등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페루는 세계은행의 다국 간 투자보장기구인 MIGA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 영국, 프랑스, 스위스, 체코,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과 양자 간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외국인투자진출 제한 분야

페루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1999.11월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방송매체의 경우 페루인이 과반의 지분을 소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분야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유해한 동식물, 국민 보건 위생에 위해를 야기하는 산업 분야
- 용역 및 경비 분야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분야
- 운송업 분야
- 은행 및 국방관련 산업 분야

지사·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 기업의 페루 내 지사 설립의 경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페루 내 주소, 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지사의 법적 대리인 지명, 지사의 영업 형태 등이 필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기업 본사 소재국 주재 페루영사 확인서, 제3국가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 및 페루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본사측의 결정문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행 법률은 외국인 고용원이 현지회사(소유주의 내외국인 여부 불문)의 총고용원 인원의 20% 이상 또는 총 급여 수령 임원의 30% 점유가 불가하나, 신규설립회사, 다국적 서비스공급회사, 은행 및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페루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조건으로 수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페루는 아직도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의 유혹 등으로 인해 관공서의 업무가 비교적 느리고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회사설립에 대한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내국인에 한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설립절차가 도입되어 72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행정 간소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의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특별 허가를 받을 경우 동 지역 내 경제활동은 가능하다. 그 외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특별 제한 사항이 없다.

금융상의 제한

현재 페루 거주 내·외국인은 자유롭게 국내 및 해외 외화 예금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외화송금 및 해외반출 용도와 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시장환율에 의해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10%의 주식배당세가 부과된다. 투자진홍청(Proinversion)에 등록된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되며, 로열티에는 28%의 로열티세가 원천 징수된다. 도입차관의 원리금 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환율로 이루어진다. 투자원금의 본국회수도 Proinversion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투자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된다.

세제상의 제한

현재 페루와 우리나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주재국 진출 우리 기업은 페루 정부에 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을 통한 동 협정의 조속 체결이 요망된다.

■ 경쟁정책

페루는 1991년 자유경쟁법 및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 경쟁정책 집행을 위한 정부기관인 INDECOPI가 설치되어 활동 중이다.

■ 기타 장벽

비자 취득

페루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3개월간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 비즈니스 목적 입국의 경우 상용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0일 이내 단기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는 상용 비자 취득 입국 시 출국할 때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 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

페루는 아직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호 운전면허 인정 약정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통한 운전은 허용되고 있다. 주의할 사항은 국제운전면허와 여권, 한국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개선실적

2005.10.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으며, 민감 농산품에 추가로 부과하던 추가관세 제도도 폐지하였다. 추가관세는 2002년부터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를 부과하던 것이었는데,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다.

동 조치에 포함된 458개 품목 중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일률적으로 4%로,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12%로 인하했으며, 이들 중 관세의 특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5%)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2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8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34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77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 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347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재중 맥주, 포도주, 위스키 등 22개 품목에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며, 농업원자재 중 설탕과 맥아(맥주 양조용), 포도즙 등에 5%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었다. 또한 종이와 상자류(2겹)의 경우는 수입 관세가 8%를 인하하여 4%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천연칼슘 인산염과 관개용 밸브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4%로 인하되었으며, 가축과 산업용 밸브, 브레이크 등 기계 부품, 섬유 산업용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화이버, 나일론 인조사와 같은 품목의 수

입관세가 4%로 조정되었다.

화강암과 같은 111개의 건축용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됐으며, 대리석, 판석, 플라스틱 튜브 및 기타 건축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었다. 또한, 컴퓨터 및 부품의 경우, 수입관세가 7%에서 4%로 인하되었으며 원심펌프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었다. 특히, 수송용 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의 경우도 타이어를 포함해 27개 품목에 관세 인하 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되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로 조정되었다.